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68호 2025. 11. 27.(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148호)
-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149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151호)

공 고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1566호)
- 예천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1579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북도청이전신도시(1단계) 내 도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예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전체조서 [별첨2] 참고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교통시설(도로) 외 변경없음
- 1) 교통시설
 - 가) 도로
 - (1)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기정	85	19,444	475,300.3	41	5,434	82,505.1	22	7,903	261,174.0	22	6,107	131,621.2	
	변경	85	19,444	476,757.2	41	5,434	83,315.3	22	7,903	261,174.0	22	6,107	132,267.9	
일반 도로	계	기정	58	17,680	455,620.2	26	4,381	71,957.5	18	7,362	253,058.3	14	5,937	130,604.4
		변경	58	17,680	457,077.1	26	4,381	72,767.7	18	7,362	253,058.3	14	5,937	131,251.1
	광로		1	2,766	143,588.7	-	-	-	1	2,766	143,588.7	-	-	-
	대로	기정	9	6,232	181,744.6	-	-	-	3	2,413	73,722.40	6	3,819	108,022.2
		변경	9	6,232	182,391.3	-	-	-	3	2,413	73,722.4	6	3,819	108,668.9
	중로	기정	23	6,111	106,694.4	8	2,288	50,545.0	10	2,131	35,314.7	5	1,692	20,834.7
		변경	23	6,111	107,504.6	8	2,288	51,355.2	10	2,131	35,314.7	5	1,692	20,834.7
	소로		25	2,571	23,592.5	18	2,093	21,412.5	4	52	432.5	3	426	1,747.5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보행자 도로	계	27	1,764	19,680.1	15	1,053	10,547.6	4	541	8,115.7	8	170	1,016.8
	중로	4	541	8,115.7	-	-	-	4	541	8,115.7	-	-	-
	소로	23	1,223	11,564.4	15	1,053	10,547.6	-	-	-	8	170	1,016.8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	28	집산도로	1,518	대로 2-1(예)	대로 3-3(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변경	대로	3	2	28	집산도로	1,518	대로 2-1(예)	대로 3-3(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선형 변경
기정	대로	3	3	28	집산도로	892	광로 2-1(예)	광로 2-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변경	대로	3	3	28	집산도로	892	광로 2-1(예)	광로 2-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선형 변경
기정	중로	1	4	21	집산도로	306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변경	중로	1	4	21	집산도로	306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선형 변경
기정	중로	1	5	21	집산도로	296	대로 3-2(예)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21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변경	중로	1	5	21	집산도로	296	대로 3-2(예)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21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선형 변경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2호선	대로3-2호선	• 선형 변경 B = 28m, L = 1,518m A = 43,243.6 → 43,734.3㎡ (증 490.7㎡)	• 공동주택 진출입부 현황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경미한 변경)
대로3-3호선	대로3-3호선	• 선형 변경 B = 28m, L = 892m A = 26,493.7 → 26,649.7㎡ (증 156.0㎡)	• 공동주택 진출입부 현황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경미한 변경)
중로1-4호선	중로1-4호선	• 선형 변경 B = 21m, L = 306m A = 6,799.9 → 7,050.8㎡ (증 250.9㎡)	• 공동주택 진출입부 현황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경미한 변경)
중로1-5호선	중로1-5호선	• 선형 변경 B = 21m, L = 296m A = 6,441.5 → 7,000.8㎡ (증 559.3㎡)	• 공동주택 진출입부 현황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공동주택용지 외 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기정	481,865.2	12필지	기정	481,865.2		
		변경	480,408.3		변경	480,408.3		
B-1	-	기정	82,137.3	1	38,905.1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 인접한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지정된 주택의 유형에 따른 세대수는 합산하도록 하고, 용적률은 면적비례로 합산한 평균 수치로 한다. - 획지분할 불허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은 제외한다.
		변경	81,810.7	3	기정	31,232.2		
					변경	30,905.6		
				4	12,000.0			
B-2	-	기정	88,447.7	1	기정	46,020.2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변경	87,979.6		2	기정		
				변경		42,192.1		
				B-3	-	기정		
변경	79,121.6	변경	79,121.6					
B-4	-	기정	59,903.4	1	기정	34,252.6		
		변경	59,747.4		2	변경	34,096.6	
				25,650.8				
				B-5	-	26,535.5		
B-6	-	55,901.2		1	55,901.2			
B-8	-	기정	89,567.6	1	기정	48,917.3		
		변경	89,312.3		2	변경	48,662.0	
				40,650.3				

마.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 별첨1 참고

- 제 II 편 제4장 제4조 제8항 담장 높이 관련 내용 변경

- 제 IV 편 제5장 제4조 제1항 가로형 간판 설치위치 관련 내용 변경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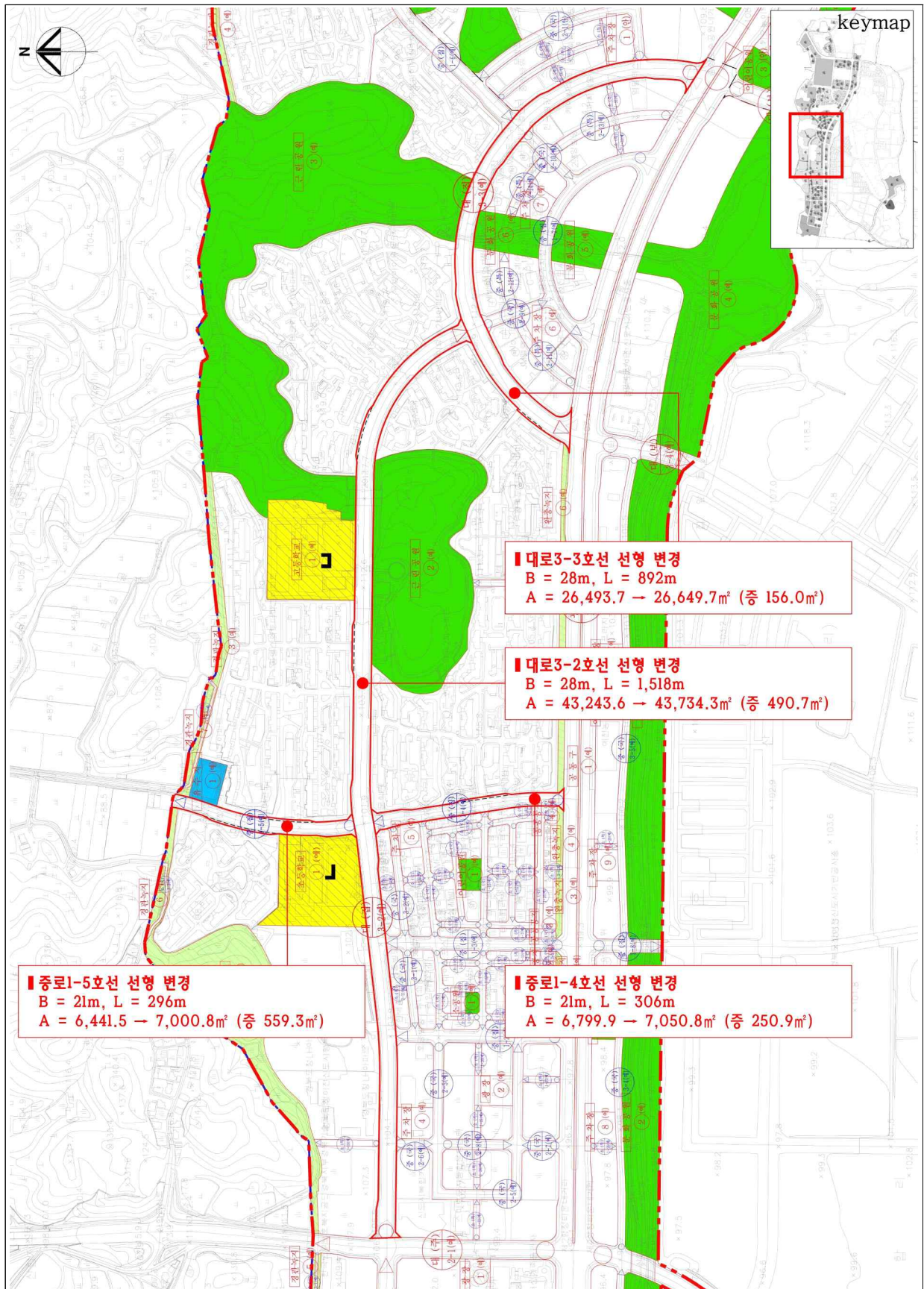
※ 아래 결정도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에서 열람가능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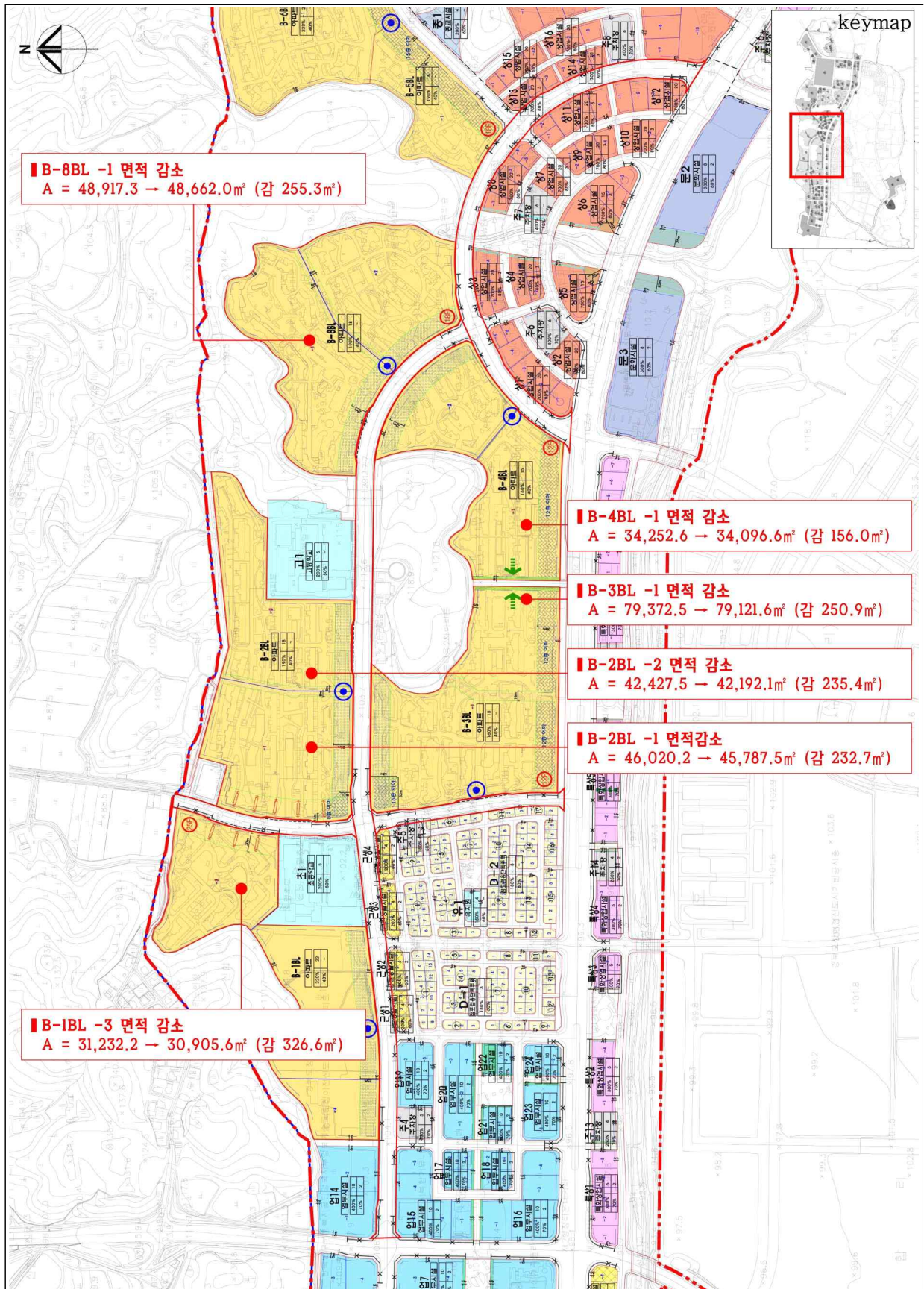
[별첨1] 경북도청이전신도시(1단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기 정	변 경
제Ⅱ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4장 상업업무용지 제4조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① ~ ⑦ (생 략) ⑧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u>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 및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5조’의 ‘한국적 전통 디자인’을 포함하는 구조물(예>꽃담) 등의 사용을 권장하며, 시각적 개방감(투시율 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 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u> ⑨ (생 략)	제Ⅱ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4장 상업업무용지 제4조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u>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m (경관녹지와 접한 블록은 1.2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 및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5조’의 ‘한국적 전통 디자인’을 포함하는 구조물(예>꽃담) 등의 사용을 권장하며, 시각적 개방감(투시율 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 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u> ⑨ (현행과 같음)
제Ⅳ편 경관계획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5장 옥외광고물 제4조 (가로형 간판) ① 설치위치 1. <u>일반상업지역은 3층 이하, 기타지역은 2층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u> 2. 3. (생 략) ② ③ (생 략)	제Ⅳ편 경관계획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5장 옥외광고물 제4조 (가로형 간판) ① 설치위치 1. <u>일반상업지역은 5층 이하, 기타지역은 2층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u>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도]



[별첨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예천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예천군 호명읍 일원	2,082,054.8	-	2,082,054.8	

II.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082,054.8	-	2,082,054.8	100.00	
주거 지역	소 계	1,189,686.6	-	1,189,686.6	57.14	
	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일반주거지역	721,143.9	-	721,143.9	34.64	
	제1종일반주거지역	101,124.7	-	101,124.7	4.86	
	제2종일반주거지역	246,131.3	-	246,131.3	11.82	
	제3종일반주거지역	373,887.9	-	373,887.9	17.96	
	준주거지역	468,542.7	-	468,542.7	22.5	
	소계	276,764.2	-	276,764.2	13.29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176,097.6	-	176,097.6	8.46	
	근린상업지역	100,666.6	-	100,666.6	4.83	
녹지 지역	소계	615,604.0	-	615,604.0	29.57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615,604.0	-	615,604.0	29.57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개소	-	-	636,865.2	-	-		
기정	1	경북도청이전신도시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예천군 호명읍 일원	636,865.2	-	-	경고14-96 (2014.3.17)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기정	85	19,444	475,300.3	41	5,434	82,505.1	22	7,903	261,174.0	22	6,107	131,621.2
		변경	85	19,444	476,757.2	41	5,434	83,315.3	22	7,903	261,174.0	22	6,107	132,267.9
일반 도로	계	기정	58	17,680	455,620.2	26	4,381	71,957.5	18	7,362	253,058.3	14	5,937	130,604.4
		변경	58	17,680	457,077.1	26	4,381	72,767.7	18	7,362	253,058.3	14	5,937	131,251.1
	광로		1	2,766	143,588.7	-	-	-	1	2,766	143,588.7	-	-	-
	대로	기정	9	6,232	181,744.6	-	-	-	3	2,413	73,722.40	6	3,819	108,022.2
		변경	9	6,232	182,391.3	-	-	-	3	2,413	73,722.4	6	3,819	108,668.9
	중로	기정	23	6,111	106,694.4	8	2,288	50,545.0	10	2,131	35,314.7	5	1,692	20,834.7
		변경	23	6,111	107,504.6	8	2,288	51,355.2	10	2,131	35,314.7	5	1,692	20,834.7
	소로		25	2,571	23,592.5	18	2,093	21,412.5	4	52	432.5	3	426	1,747.5
	보행자 도로	계	27	1,764	19,680.1	15	1,053	10,547.6	4	541	8,115.7	8	170	1,016.8
중로		4	541	8,115.7	-	-	-	4	541	8,115.7	-	-	-	
소로		23	1,223	11,564.4	15	1,053	10,547.6	-	-	-	8	170	1,016.8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	50-55	주간선도로	2,766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01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88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2	1	30	주간선도로	388	광로 2-1(예)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13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2	2	30	주간선도로	1,263	광로 2-1(예)	대로 3-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2	3	30	주간선도로	762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21	대로 2-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3	1	28	집산도로	843	광로 2-1(예)	대로 2-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3	2	28	집산도로	1,518	대로 2-1(예)	대로 3-3(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변경	대로	3	2	28	집산도로	1,518	대로 2-1(예)	대로 3-3(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선형 변경
기정	대로	3	3	28	집산도로	892	광로 2-1(예)	광로 2-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변경	대로	3	3	28	집산도로	892	광로 2-1(예)	광로 2-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선형 변경
기정	대로	3	4	28	보조간선도로	145	광로 2-1(예)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12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3	5	25	주간선도로	352	대로 2-2(예)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804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3	9	28	집산도로	69	광로2-1(예)	대로3-8	일반도로		예고24-137 (2024.11.7.)	
기정	중로	1	1	21	집산도로	298	광로 2-1(예)	대로 3-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2	21	집산도로	263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3	21	집산도로	281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4	21	집산도로	306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변경	중로	1	4	21	집산도로	306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선형 변경
기정	중로	1	5	21	집산도로	296	대로 3-2(예)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21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변경	중로	1	5	21	집산도로	296	대로 3-2(예)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21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선형 변경
기정	중로	1	6	24	집산도로	334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02	대로 3-3(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7	20	집산도로	401	광로 2-1(예)	광로 2-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8	21	집산도로	109	광로 2-1(예)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11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1	16	국지도로	199	대로 3-1(예)	중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2	16	국지도로	690	중로 1-1(예)	중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3	16	국지도로	56	대로 3-1(예)	중로 2-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4	16	국지도로	135	중로 2-2(예)	중로 2-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5	16	국지도로	610	중로 1-2(예)	중로 1-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6	16	국지도로	58	대로 3-2(예)	중로 2-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7	16	국지도로	60	광로 2-1(예)	중로 2-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8	16	국지도로	110	중로 2-5(예)	중로 2-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9	16	국지도로	107	대로 3-3(예)	중로 1-7(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10	16	국지도로	106	대로 3-3(예)	중로 1-7(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11	15	특수도로	143	광로 2-1(예)	중로 2-9(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중로	2	12	15	특수도로	90	중로 2-9(예)	수변공원 9 (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중로	2	13	15	특수도로	203	광로 2-1(예)	중로 2-10(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중로	2	14	15	특수도로	105	중로 2-10(예)	수변공원 9 (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중로	3	1	13	국지도로	127	중로 1-3(예)	중로 1-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3	2	13	국지도로	176	중로 1-4(예)	중로 1-3(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147	광로 2-1(예)	대로 2-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473	대로 2-2(예)	중로 1-8(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769	대로 3-4(예)	중로 1-8(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27	중로 1-3(예)	중로 1-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35	소로 1-17(예)	소로 1-16(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59	소로 1-6(예)	소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59	소로 1-6(예)	소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62	소로 1-6(예)	소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27	중로 1-3(예)	중로 1-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254	소로 1-6(예)	소로 1-6(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76	소로 1-7(예)	소로 1-7(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185	중로 1-3(예)	중로 1-4(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36	중로 3-2(예)	소로 1-9(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70	소로 1-15(예)	소로 1-9(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2	10	국지도로	36	소로 1-14(예)	소로 1-9(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3	10	국지도로	89	소로 1-15(예)	소로 1-9(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4	10	국지도로	143	소로 1-13(예)	소로 1-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5	10	국지도로	201	중로 1-3(예)	중로 1-4(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6	10	국지도로	341	소로 1-15(예)	소로 1-1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7	10	국지도로	158	소로 1-16(예)	소로 1-16(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8	10	국지도로	35	소로 1-17(예)	소로 1-1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9	10	특수도로	101	대로 3-2(예)	경관녹지 2 (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0	10	특수도로	144	중로 1-1(예)	중로 2-4(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1	10	특수도로	100	중로 2-2(예)	중로 2-4(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2	10	특수도로	50	광로 2-1(예)	중로 2-2(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3	10	특수도로	65	대로 2-1(예)	중로 2-5(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4	10	특수도로	64	중로 2-8(예)	중로 2-5(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5	10	특수도로	55	중로 2-8(예)	광장 2(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6	10	특수도로	52	중로 1-2(예)	광장 2(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7	10	특수도로	60	광로 2-1(예)	중로 2-5(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8	10	특수도로	41	광로 2-1(예)	중로 3-4(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9	10	특수도로	37	광로 2-1(예)	중로 3-5(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30	10	특수도로	36	광로 2-1(예)	중로 3-5(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31	10	특수도로	148	광로 2-1(예)	근린공원 2 (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32	10	특수도로	112	중로 1-6(예)	소로 1-49(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소로	1	33	10	특수도로	48	중로 2-13(예)	중로 1-7(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3	소로 1-7(예)	공공공지 1 (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3	소로 1-7(예)	공공공지 2 (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3	소로 1-16(예)	공공공지 3 (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3	소로 1-16(예)	공공공지 4 (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100	대로 2-1(예)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38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135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12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12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191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0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0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25	중로 3-2(예)	대로 3-2(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5	6	특수도로	28	광로 2-1(예)	소로 1-7(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31	광로 2-1(예)	소로 1-16(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7	6	특수도로	15	중로 1-3(예)	소로 1-16(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15	중로 1-4(예)	소로 1-16(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16	중로 1-2(예)	소로 1-7(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10	6	특수도로	15	중로 1-3(예)	소로 1-7(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11	6	특수도로	25	중로 3-1(예)	대로 3-2(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 대로3-9호선 : 1-문화공원(1,395㎡), 2-유수지(582㎡)와 중복결정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2호선	대로3-2호선	• 선형 변경 B = 28m, L = 1,518m A = 43,243.6 → 43,734.3㎡ (증 490.7㎡)	• 공동주택 진출입부 현황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경미한 변경)
대로3-3호선	대로3-3호선	• 선형 변경 B = 28m, L = 892m A = 26,493.7 → 26,649.7㎡ (증 156.0㎡)	• 공동주택 진출입부 현황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경미한 변경)
중로1-4호선	중로1-4호선	• 선형 변경 B = 21m, L = 306m A = 6,799.9 → 7,050.8㎡ (증 250.9㎡)	• 공동주택 진출입부 현황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경미한 변경)
중로1-5호선	중로1-5호선	• 선형 변경 B = 21m, L = 296m A = 6,441.5 → 7,000.8㎡ (증 559.3㎡)	• 공동주택 진출입부 현황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2) 주차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553.5	-	22,553.5		
기정	1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44	2,540.8	-	2,540.8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51	2,171.8	-	2,171.8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77	2,000.6	-	2,000.6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28	2,868.6	-	2,868.6	경고12-230 (2012.7.31)	
기정	5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277	1,396.7	-	1,396.7	경고12-230 (2012.7.31)	
기정	6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11	3,248.5	-	3,248.5	경고12-230 (2012.7.31)	
기정	7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25	2,396.4	-	2,396.4	경고12-230 (2012.7.31)	
기정	8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65	1,947.4	-	1,947.4	경고12-230 (2012.7.31)	
기정	9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76	1,876.1	-	1,876.1	경고12-230 (2012.7.31)	
기정	10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86	2,106.6	-	2,106.6	경고12-230 (2012.7.31)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1) 광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457.3	-	5,457.3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74	2,581.5	-	2,581.5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광장	일반광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48	2,875.8	-	2,875.8	경고12-230 (2012.7.31)	

2)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06,851.7	-	406,851.7		
소 계					184,887.2	-	184,887.2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84	56,640.3	-	56,640.3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6	128,246.9	-	128,246.9	경고12-230 (2012.7.31)	
소 계					750.9	-	750.9		
기정	1	공원	소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96	750.9	-	750.9	경고12-230 (2012.7.31)	
소 계					7,890.1	-	7,890.1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02	1,669.3	-	1,669.3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70	3,145.6	-	3,145.6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85	3,075.2	-	3,075.2	경고12-230 (2012.7.31)	
소 계					13,165.3	-	13,165.3		
기정	1	공원	체육공원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47	13,165.3	-	13,165.3	예천군고시 제2022-68호 (2022.7.18.)	
소 계					200,158.2	-	200,158.2		
기정	1	공원	문화공원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800 일원	46,241.2	-	46,241.2	-	도로 중복
기정	2	공원	문화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08 일원	28,317.0	-	28,317.0	-	도로 중복
기정	3	공원	문화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07 일원	46,522.7	-	46,522.7	-	도로 중복
기정	4	공원	문화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00 일원	67,533.2	-	67,533.2	-	
기정	5	공원	문화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49	5,238.4	-	5,238.4	-	
기정	6	공원	문화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48	6,305.7	-	6,305.7	-	

※ 지구내 면적 중 문화공원1,2,3은 도로(3,224.6㎡) 포함

3)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4,758.5	-	114,758.5		
소 계					14,925.6	-	14,925.6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233	439.2	-	439.2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241	571.2	-	571.2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76	1,073.4	-	1,073.4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78	927.9	-	927.9	경고12-230 (2012.7.31)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86	3,254.4	-	3,254.4	경고12-230 (2012.7.31)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87	1,900.1	-	1,900.1	경고12-230 (2012.7.31)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18	2,741.9	-	2,741.9	경고12-230 (2012.7.31)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20	4,017.5	-	4,017.5	경고12-230 (2012.7.31)	
소 계					99,832.9	-	99,832.9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36 일원	46,959.0	-	46,959.0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11	35,605.0	-	35,605.0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1	5,091.6	-	5,091.6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9	7,280.7	-	7,280.7	경고12-230 (2012.7.31)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37	555.4	-	555.4	경고14-96 (2014.3.17)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13	1,262.6	-	1,262.6	경고14-96 (2014.3.17)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89	1,551.6	-	1,551.6	경고14-96 (2014.3.17)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805	1,527.0	-	1,527.0	경고14-96 (2014.3.17)	

4)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7.4	-	257.4		
기정	1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232	64.2	-	64.2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240	64.4	-	64.4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75	64.0	-	64.0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79	64.8	-	64.8	경고12-230 (2012.7.31)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1) 전기공급설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4.0	-	144.0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케이블헤드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806	144.0	-	144.0	경고14-96 (2014.3.17)	

2) 공동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공동구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01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01	-	1.9	6,459.7	경고14-96 (2014.3.17)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1) 학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0,858.5	-	40,858.5		
소 계					19,748.0	-	19,748.0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19	19,748.0	-	19,748.0	경고12-230 (2012.7.31)	
소 계					21,110.5	-	21,110.5		
기정	1	학교	고등학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5	21,110.5	-	21,110.5	경고12-230 (2012.7.31)	

마. 방제시설 (변경없음)

1) 하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7	하천	지방 하천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800 일원	예천군 지보면 수월리 855-28번지선 내성천(국가)합류점	7.262 (0.02)	25~110 (38)	435,240 (902.9)	경고09-483 (2009.11.5)	송평천

※ ()는 사업지구내 포함부분임

2) 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6,493.5	-	16,493.5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2	3,102.8	-	3,102.8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802	13,390.7	-	13,390.7	경고12-230 (2012.7.31)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37.9	-	2,537.9		
기정	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90	2,537.9	-	2,537.9	경고12-230 (2012.7.31)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48,897.2	160필지	48,897.2	
소 계		18,970.7	61필지	18,970.7	
D-1	1	4,151.6	1	299.3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에도 당초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2	298.6	
			3	294.2	
			4	291.0	
			5	300.2	
			6	300.5	
			7	298.9	
			8	298.2	
			9	295.9	
			10	294.1	
			11	288.2	
			12	297.5	
			13	297.5	
			14	297.5	
	2	904.3	1	302.5	
			2	299.5	
			3	302.3	
	3	1,229.5	1	308.0	
			2	306.1	
			3	308.6	
			4	306.8	
	4	1,872.8	1	313.6	
			2	312.7	
			3	311.4	
			4	312.8	
			5	311.4	
			6	310.9	
5	928.4	1	309.4		
		2	310.1		
		3	308.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D-1	6	973.8	1	324.2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2	324.1	
			3	325.5	
	7	2,598.9	1	326.0	
			2	325.4	
			3	325.3	
			4	324.1	
			5	325.6	
			6	324.8	
			7	324.5	
			8	323.2	
	8	922.7	1	307.2	
			2	307.2	
			3	308.3	
	9	657.3	1	328.6	
			2	328.7	
	10	2,594.3	1	325.1	
			2	324.8	
			3	325.2	
			4	321.8	
			5	325.2	
			6	324.6	
			7	324.7	
			8	322.9	
	11	623.9	1	311.9	
			2	312.0	
	12	598.6	1	300.6	
			2	298.0	
	13	914.6	1	306.4	
			2	305.4	
			3	302.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소 계		29,926.5	99필지	29,926.5	
D-2	1	3,118.6	1	310.2	- 연결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2	309.8	
			3	310.0	
			4	309.7	
			5	309.6	
			6	314.7	
			7	313.8	
			8	313.7	
			9	313.6	
			10	313.5	
	2	1,606.5	1	269.5	
			2	267.2	
			3	267.1	
			4	268.8	
			5	267.2	
			6	266.7	
	3	994.0	1	334.6	
			2	329.1	
			3	330.3	
	4	2,424.1	1	299.7	
			2	298.2	
			3	298.3	
			4	297.6	
			5	307.8	
			6	307.5	
			7	307.8	
			8	307.2	
	5	2,172.5	1	272.7	
			2	270.9	
			3	271.6	
			4	271.5	
			5	272.3	
			6	270.8	
			7	271.5	
			8	271.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D-2	6	1,338.2	1	267.7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2	267.7	
			3	267.9	
			4	268.1	
			5	266.8	
	7	1,795.6	1	302.1	
			2	301.6	
			3	296.0	
			4	300.2	
			5	300.8	
			6	294.9	
	8	920.0	1	306.1	
			2	306.0	
			3	307.9	
	9	2,596.5	1	325.9	
			2	324.2	
			3	324.5	
			4	325.5	
			5	325.2	
			6	323.4	
			7	323.4	
			8	324.4	
	10	2,345.6	1	289.6	
			2	287.3	
			3	287.2	
			4	287.3	
			5	300.3	
			6	298.2	
			7	298.3	
			8	297.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D-2	11	933.3	1	312.2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2	311.6	
			3	309.5	
	12	621.1	1	311.3	
			2	309.8	
	13	2,596.4	1	326.1	
			2	324.3	
			3	324.4	
			4	325.4	
			5	324.7	
			6	323.3	
			7	323.5	
			8	324.7	
	14	2,564.5	1	319.1	
			2	317.4	
			3	317.4	
			4	317.5	
			5	324.4	
			6	323.1	
			7	322.6	
			8	323.0	
	15	1,787.4	1	298.0	
			2	297.4	
			3	298.0	
			4	298.2	
			5	298.5	
			6	297.3	
	16	1,488.0	1	298.9	
			2	298.1	
			3	298.3	
			4	298.3	
			5	294.4	
	17	624.2	1	311.6	
			2	312.6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기정	481,865.2	12필지	기정	481,865.2	
		변경	480,408.3		변경	480,408.3	
B-1	-	기정	82,137.3	1	38,905.1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변경	81,810.7	3	기정	31,232.2	
					변경	30,905.6	
				4	12,000.0		
B-2	-	기정	88,447.7	1	기정	46,020.2	
		변경	87,979.6	2	변경	45,787.5	
					기정	42,427.5	
				변경	42,192.1		
B-3	-	기정	79,372.5	1	기정	79,372.5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변경	79,121.6		변경	79,121.6	
B-4	-	기정	59,903.4	1	기정	34,252.6	
		변경	59,747.4		변경	34,096.6	
				2	25,650.8		
B-5	-	26,535.5		1	26,535.5		
B-6	-	55,901.2		1	55,901.2		
B-8	-	기정	89,567.6	1	기정	48,917.3	
		변경	89,312.3		변경	48,662.0	
				2	40,650.3		

- 인접한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지정된 주택의 유형에 따른 세대수는 합산하도록 하고, 용적률은 면적비례로 합산한 평균 수치로 한다.

- 획지분할 불허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주택(행복주택)은 제외한다.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1,002.8	18필지	11,002.8	
근생1	-	1,521.5	1	485.8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획지분할 불허
			2	534.3	
			3	501.4	
근생2	-	1,442.0	1	494.5	
			2	493.0	
			3	454.5	
근생3	-	2,062.2	1	492.2	
			2	523.9	
			3	523.8	
			4	522.3	
근생4	-	1,837.8	1	527.3	
			2	480.9	
			3	465.0	
			4	364.6	
근생9	-	4,139.3	1	1,010.3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획지분할 불허. 단, 근생10은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분할허용
			2	1,071.8	
			3	1,064.3	
			4	992.9	

라.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

1)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56,950.9	42필지	56,950.9	
상1	-	8,255.9	1	1,899.1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 상1(1, 2획지), 상5, 상6은 공동개발 권장
			2	1,724.7	
			3	1,724.1	
			4	1,514.5	
			5	697.0	
			6	696.5	
상2	-	2,156.7	1	2,156.7	
상3	-	4,539.5	1	749.2	
			2	756.1	
			3	1,517.0	
			4	1,517.2	
상4	-	3,549.7	1	1,268.0	
			2	507.6	
			3	508.3	
			4	1,265.8	
상5	-	4,861.4	1	2,014.0	
			2	2,847.4	
상6	-	7,832.8	1	4,138.7	
			2	2,486.0	
			3	1,208.1	
상7	-	1,688.4	1	844.2	
			2	844.2	
상8	-	5,097.1	1	1,267.0	
			2	1,266.4	
			3	1,265.1	
			4	649.1	
			5	649.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상9	-	4,236.3	1	706.1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 상10, 상12(3, 4획지)는 공동개발 권장
			2	708.8	
			3	1,412.8	
			4	1,408.6	
상10	-	3,045.6	1	1,526.3	
			2	1,519.3	
상11	-	6,190.4	1	777.2	
			2	772.8	
			3	1,546.3	
			4	1,547.4	
			5	1,546.7	
상12	-	5,497.1	1	1,375.3	
			2	1,373.9	
			3	1,373.8	
			4	1,374.1	

2) 특화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35,157.0	31필지	35,157.0	
특상1	-	6,290.9	1	1,231.8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연접한 2개획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1,277.6	
			3	1,269.1	
			4	1,244.3	
			5	1,268.1	
특상2	-	4,248.9	1	1,091.9	
			2	1,050.5	
			3	1,037.1	
			4	1,069.4	
특상3	-	2,344.7	1	1,189.9	
			2	1,154.8	
특상4	-	3,765.7	1	1,318.4	
			2	1,284.4	
			3	1,162.9	
특상5	-	7,624.8	1	1,025.1	
			2	1,007.4	
			3	1,038.5	
			4	1,078.6	
			5	1,118.5	
			6	1,158.7	
			7	1,198.0	
특상6	-	3,453.6	1	1,197.6	
			2	1,150.7	
			3	1,105.3	
특상7	-	7,428.4	1	1,030.1	
			2	1,020.7	
			3	1,021.3	
			4	1,034.0	
			5	1,110.5	
			6	1,165.0	
			7	1,046.8	

3) 업무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319,032.4	69필지	319,032.4	
업1	-	113,042.8	1	87,705.9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단, 업1은 필요시 3회, 업2는 5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2	25,336.9	
업2	-	28,855.6	1	10,000.0	
			2	18,855.6	
업3	-	4,431.4	1	2,230.6	
			2	2,200.8	
업4	-	5,742.5	1	2,352.5	
			2	3,390.0	
업5	-	24,560.4	1	11,692.0	
			2	6,810.6	
			3	2,878.4	
			4	3,179.4	
업6	-	5,252.3	1	2,651.7	
			2	2,600.6	
업7	-	13,188.0	1	3,037.9	
			2	3,069.5	
			3	4,294.4	
			4	2,786.2	
업8	-	10,876.1	1	4,158.2	
			2	4,048.7	
			3	1,337.1	
			4	1,332.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업9	-	9,978.3	1	4,005.8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2	3,748.9	
			3	1,099.7	
			4	1,123.9	
업10	-	5,780.7	1	1,175.3	
			2	1,108.3	
			3	3,497.1	
업11	-	5,929.8	1	1,152.9	
			2	1,126.7	
			3	3,650.2	
업12	-	6,543.9	1	2,163.2	
			2	2,202.8	
			3	2,177.9	
업13	-	12,494.7	1	12,494.7	
업14	-	13,465.0	1	6,727.5	
			2	6,737.5	
업15	-	12,418.2	1	2,274.5	
			2	2,000.2	
			3	3,518.9	
			4	2,332.3	
			5	2,292.3	
업16	-	12,599.1	1	3,285.2	
			2	4,611.7	
			3	2,369.9	
			4	2,332.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업17	-	3,182.5	1	784.6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2	792.9	
			3	793.4	
			4	811.6	
업18	-	3,180.5	1	815.2	
			2	793.7	
			3	792.6	
			4	779.0	
업19	-	6,025.1	1	2,948.3	
			2	1,542.5	
			3	1,534.3	
업20	-	7,698.2	1	2,706.2	
			2	2,385.8	
			3	1,285.0	
			4	1,321.2	
업21	-	2,712.8	1	2,712.8	
업22	-	2,589.2	1	1,286.8	
			2	1,302.4	
업23	-	5,435.6	1	2,724.8	
			2	2,710.8	
업24	-	3,049.7	1	1,513.7	
			2	1,536.0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1) 교육시설

가) 유치원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3,271.5	2필지	3,271.5	
유1	-	1,345.5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01	1,345.5	
유9	-	1,926.0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49	1,926.0	

나) 초등학교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19,748.0	1필지	19,748.0	
초1	-	19,748.0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19	19,748.0	

다) 고등학교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21,110.5	1필지	21,110.5	
고1	-	21,110.5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5	21,110.5	

2) 문화시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42,646.1	2필지	42,646.1	
문2	-	20,249.3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99	20,249.3	
문3	-	22,396.8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98	22,396.8	

3) 주차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2,553.5	10필지	22,553.5	
주1	-	2,540.8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44	2,540.8	
주2	-	2,171.8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51	2,171.8	
주3	-	2,000.6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77	2,000.6	
주4	-	2,868.6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28	2,868.6	
주5	-	1,396.7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277	1,396.7	
주6	-	3,248.5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11	3,248.5	
주7	-	2,396.4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25	2,396.4	
주13	-	1,947.4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65	1,947.4	
주14	-	1,876.1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76	1,876.1	
주15	-	2,106.6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86	2,106.6	

4) 주유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317.8	1필지	2,317.8	
주유1	-	2,317.8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89	2,317.8	

5) 오수중계펌프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537.9	1필지	2,537.9	
오1	-	2,537.9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90	2,537.9	

6) 전기공급설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44.0	1필지	144.0	
전1	-	144.0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806	144.0	케이블헤드

2.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 ~ D-2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점포겸용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내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3층 이하(최고높이 : 13m이하)
		허용 가구수	5가구 이하(근린생활시설 계획시 4가구 이하)
		기타 용도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지하층 층별 용도는 다음과 같다. - 지하1층 : 주거 또는 교육용도 외 허용되는 모든 시설. (단, 욕실 및 취사시설이 없는 취미실, 서재 등의 설치는 허용) - 지하2층 이하 : 기계실 및 주차용도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획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하층 전체를 기계실 및 주차용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타용도의 설치를 금지한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 지상1층 및 지하1층에 한해 허용하되, 교육용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를 불허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 등을 이유로 조성된 1층부 필로티는 타용도로 일체 전환할 수 없다. - 지하층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한다.
		높이	건축물의 1층 전체를 높이 2.5m 이하의 필로티 구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로 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용적률 및 최고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 건축물 배치시 주방향은 채광, 통풍, 일조권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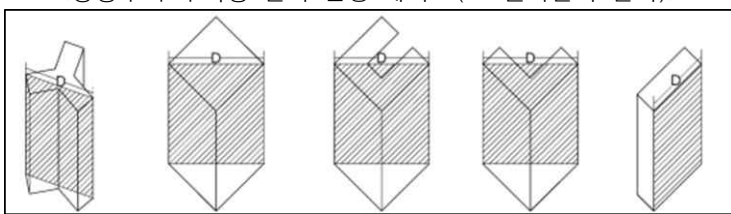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 ~ D-2	형태 및 외관	• 도청사와 인접한 부분 단독주택의 경우,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지양하며, 이에 부합하는 입지와 건축물 및 경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역사가 살아 있는 자연친화적 명품도시로서의 디자인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도청사와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나 외관의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 한옥주택의 모든 건축물은 형태 및 외관에 관해 상단에 규정된 사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6항에 의한 한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주요 테마인 역사도시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 할 수 있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거용 건축물의 내·외장재는 환경친화적 자재 및 천연자연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도로 또는 공원변에 면한 점포겸용 단독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단,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에서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 ~ D-2	형태 및 외관	- 지붕의 형태 및 높이 -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여,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파라펫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경사지붕에는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물탱크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경사지붕으로 계획 시 전체 지붕면적의 1/8 이내에서 평지붕을 설치할 수 있다. 평지붕 구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하되 지붕형태의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옥외계단 및 옥상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로 조성하여야 한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서는 박공형식의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단, 경관적으로 주변의 경사지붕과 조화되고 개성적인 디자인의 지붕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할 수 있다. - 한옥주택의 경우,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한식지붕에는 전통경관형성 및 지붕틀의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물탱크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붕 및 옥상층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단,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는 제외) - 담장, 대문, 계단 - 대문 설치시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공원에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한옥 주택의 경우 한국전통디자인을 포함하는 담장으로 조성 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지상 1층 상단 정면에 한하여 가로형간판 또는 소형돌출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지하층을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하층 출입구 상단에 설치할 수 있다. - 도청사 주변의 단독주택 용지는 자연재료 사용 및 주상호 한글 표기를 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 ~ D-2	대지내 공지	- 결정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청사 전면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공공청사와의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신축 시 개발주체가 이를 조성한다.
		교통처리	- 대지 내 차량 진·출입 - 차량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 진·출입구는 획지 당 1개소만 허용하며, 그 폭원은 10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예외로 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 - 주거용도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필지 당 2대 이상’과 관련 시·군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 주거이외의 용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관련 시·군 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 해당용도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으로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는 「주차장법」 및 관련 시·군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며, 이 경우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m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필지 경계부는 담장설치를 불허한다. 단, 필지의 구분을 위한 경계석의 표시는 가능하다. -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기타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B1~B6, B8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종교집회장 및 종교 시설, 제조업소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단, B1-1-4에 한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별표 3-나-2>에 따른다.
		용적률	
		높 이	
		주택규모 및 세대수	- 각 획지별 주택규모는 <별표 3-나-2>를 따른다. - 각 획지별 세대수는 <별표 3-나-2>를 초과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0조 제3항’의 지침을 따른다. 단,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 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연도형 건축물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0조 제4항’의 지침을 따른다. “층수제한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0조 제5항’의 지침을 따른다. “포인트주거동 배치”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0조 제6항’의 지침을 따른다. “통경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5조 제1항’의 지침을 따른다. “차경축”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5조 제2항’의 지침을 따른다. -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각 획지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 상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한다. - “연도형 건축물 배치구간” 또는 “어귀마당”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공공보행통로나 단지 내 보행로의 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B1~B6, B8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공동주택에 한하며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 옹벽과 마주보는 주거동 최저층 세대의 실내바닥높이가 옹벽 상단부 높이보다 높게 하여 옹벽에 의해 최저층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단, 옹벽과 주거동의 이격거리가 옹벽높이의 2배 이상이며 옹벽전면부에 식재 또는 벽면녹화 등의 경관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단위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옹벽 인접 주거동 조성 예시〉  - 채광창(개구부)이 없는 건축물(측벽)과 건축물(측벽)사이에는 6미터 이상 이격거리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상 2층 이하에 필로티를 설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주거동의 길이는 건축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이하 '건축물의 길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 ㄷ, Y, 타워형으로 된 경우 또는 절곡형의 건축물로서 여러 방향에서 수평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그 건축물의 길이로 한다. 〈공동주택 주거동 길이 산정 예시도(D=건축물의 길이)〉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 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각 1개 층의 호수 및 주거동 길이를 제한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0층 이하 부분 : 6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11층 이상 : 4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60m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0층 이하 부분 : 8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100m 이하 11층 이상 : 6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주거동 길이제한〉  〈주거동 길이 적용 예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B1-B6, B8	형태 및 외관	•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대형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단지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며,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한다. - 주거동은 옥상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이내), 중앙부(옥상부와 저층부를 제외한 부분), 저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이내)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옥상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 같은 층수의 연속된 호수가 4호(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단지는 8호)를 초과할 경우 동일 주거동내에서의 층수변화는 3개층 이상으로 한다. - 인접한 동간(각 동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m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위의 규정을 따른다. • 지붕의 형태 및 높이 - 구릉지형을 활용한 근린공원 등 공원녹지에 직접 면한 공동주택 단지의 건축물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탑상형 아파트인 경우와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여야 한다. -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구배-세로 : 가로 의 비율 = 1:2.5 범위) - 최상층은 다락방 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담장, 대문, 계단 - 공동주택 단지의 경계는 식재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되, 담장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1.2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자연재료를 사용하거나 투시형 담장과 생울타리를 혼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권장하며,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결정도상에 지정된 어귀마당의 진입부 및 연도형 배치구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야간경관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6장’의 지침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B1~B6, B8	대지내 공지	• 공동주택용지 내 거주환경보호와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건축한계선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돌출 또는 배치할 수 없다. 단,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단지내 주요 오픈스페이스와 주변 공원녹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결정도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차경축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녹지와 자유로운 연계를 위하여 결정도의 차경축의 선형을 참고하여 시점부와 종점부가 서로 연결되도록 조성한다. • 결정도에 별도의 차경축이 지정되지 않은 블록 내 획지의 경우에는 단지와 단지 및 공원녹지와의 소통을 위하여 “어귀마당”, “단지 내 보행출입구” 및 인접 공원녹지를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를 1개 이상 조성한다. • 공공보행 통로는 단차가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 혹은 도로와 접하거나 연결대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한다. • 대지 내 통로의 포장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야간 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 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어귀마당”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2 조 제5항’의 지침을 따른다.
		교통체계	• 대지 내 차량 진 · 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 진 ·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한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B1~B6, B8	교통체계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설치기준 및 다음 기준을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2/3이상 지하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지상 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설치하여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 지하 주차장 설치비용을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수준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차량 및 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지상 주차장은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네트워크	“차경축”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5조 제2항’의 지침을 따른다. “단지내 보행출입구”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1장 제1편 제14조 제5항’의 지침을 따른다.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기타	- 공동주택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아파트 : 40% 이상 (임대주택은 30% 이상)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은 제외한다.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 공동주택은 연속적인 층수변화를 통하여 지형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수변으로의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별표 3-나-2〉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층수 (변경)

필지 번호	구분	획지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 주택규모 (㎡)	평균 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기정			548,550.5	9,803					
	변경			547,093.6	9,803					
A-1	기정	1	60㎡이하	22,279.9	499	82	18	40	190	임대 (최고층수)
B-1	기정	1	60㎡~85㎡이하	38,905.1	764	112	22	40	220	임대
		3	60㎡~85㎡이하	31,232.2	613	112	22	40	220	
		4	60㎡이하	12,000.0	500	65	22	40	220	공공주택 (행복주택)
	변경	1	60㎡~85㎡이하	38,905.1	764	112	22	40	220	임대
		3	60㎡~85㎡이하	30,905.6	613	112	22	40	220	
		4	60㎡이하	12,000.0	500	65	22	40	220	공공주택 (행복주택)
B-2	기정	1	60㎡~85㎡이하	46,020.2	780	112	18	40	190	
		2	60㎡~85㎡이하	42,427.5	719	112	18	40	190	
	변경	1	60㎡~85㎡이하	45,787.5	780	112	18	40	190	
		2	60㎡~85㎡이하	42,192.1	719	112	18	40	190	
B-3	기정	1	60㎡~85㎡이하	79,372.5	1,133	112	15	40	160	
	변경	1	60㎡~85㎡이하	79,121.6	1,133	112	15	40	160	
B-4	기정	1	60㎡~85㎡이하	34,252.6	489	112	15	40	160	
		2	60㎡~85㎡이하	25,650.8	366	112	15	40	160	
	변경	1	60㎡~85㎡이하	34,096.6	489	112	15	40	160	
		2	60㎡~85㎡이하	25,650.8	366	112	15	40	160	
B-5	기정	1	60㎡~85㎡이하	26,535.5	450	112	18	40	190	
B-6	기정	1	60㎡~85㎡이하	55,901.2	1,098	112	22	40	220	
B-7	기정	1	60㎡~85㎡이하	44,405.4	873	112	22	40	220	임대
B-8	기정	1	60㎡~85㎡이하	48,917.3	830	112	18	40	190	
		2	60㎡~85㎡이하	40,650.3	689	112	18	40	190	
	변경	1	60㎡~85㎡이하	48,662.0	830	112	18	40	190	
		2	60㎡~85㎡이하	40,650.3	689	112	18	40	190	

주1)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 생활 시설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1종 전용주거 지역)	근생1~4, 근생9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 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마권장 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 시설 중 상점(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8m 이 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 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 수시설로서의 장례식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 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 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마권장 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 시설 중 상점(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8m 이 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 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 수시설로서의 장례식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 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 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200% 이하	
		높 이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4층 이하 (최고높이 : 20m 이하)	4층 이하(최고높이 : 20m 이하)	
			1층의 바닥면적의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해당블록	근생 1~8	근생 9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 생활 시설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1종 전용주거 지역)	근생1~4, 근생9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도청사와 인접한 부분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지양하며, 이에 부합하는 입지와 건축물 및 경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역사가 살아 있는 자연친화적 명품도시로서의 디자인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도청사와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나 외관의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 한옥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근생11~13)의 모든 건축물은 형태 및 외관에 관해 상단에 규정된 사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6항에 의한 한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주요 테마인 역사도시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외벽의 재료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 할 수 있다. • 지붕 및 옥탑 - 경사지붕 설치 시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고,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파라펫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의 설치 시 지붕의 형태 및 색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한다. • 담장, 계단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할 수 있다.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의 지침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 생활 시설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1종 전용주거 지역)	근생1~4, 근생9	대지내 공지	- 결정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청사 전면에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공청사와의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내에 수목을 활용한 차폐를 고려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과 특수성이 있는 포장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 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연접한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하여야 한다.
		교통처리	- 대지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필지는 지정된 곳으로 차량진출입을 할 수 없다. - 차량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 진·출입구는 필지 당 1개소만 허용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기타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라. 상업업무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시설 (일반상업 지역)	상1~12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 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의 경우 건축물 부속용도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블록	• 상1~4, 상7~12	• 상5~6
		건폐율	• 80% 이하	• 80% 이하
		용적률	• 700% 이하	• 7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20층 이하 (최고높이 : 85m 이하)	• 최고층수 15층 이하 (최고높이 : 65m 이하)
			• 최저층수 3층 이상 • 상업지 중앙부 녹지축방향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 자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할 것을 권장함	
특화상업 시설 (근린상업 지역)	특상1~ 특상7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 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권장	• 1층부 보행친화형용도(카페·베이커리 등 식음시설, 서적·기념품·의류 등 소매점)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5층 이하(최고높이 : 22m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일반업무 시설 (준주거 지역)	업2-2, 업3, 업4-1, 업6~12, 업14, 업15-4~5, 업16~24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시·군 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 단, 도매시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 업무시설
		해당블록	• 업2-2, 업3, 업4-1, 업6~12, 업14, 업15-4~5, 업16~24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10층 이하 - (최고높이 : 45m 이하)
		기 타	• 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업2-2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외)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업무 시설 (준주거 지역)	업1, 업2-1, 업4-2, 업5, 업13, 업15-1~3	허용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시·군 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 단, 도매시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내지 마목, 바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인력개발센터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이전 기관의 업무시설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업무시설 • 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내지 아목 • 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권장	• 공공업무시설
		기타	• 공공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속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한다.
		해당블록	• 업1, 업2-1, 업4-2, 업5, 업13, 업15-1~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10층 이하 - (최고높이 : 45m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시설	상1~상12 업1~업24 특상1~ 특상7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가로활성화를 위해 상업업무시설용지에 벽면지정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에서 지정한 벽면지정선은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주전면은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전면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권장한다. 단, 차폐되어 가로변에서 인식할 수 없거나, 특별한 디자인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20m 이상 도로에 면한 외벽면(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 -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공지에 면한 외벽면
업무시설 특화 상업시설 (일반상업 지역, 근린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		형태 및 외관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벽면지정선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상 부득이하여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지붕의 형태 및 높이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과 불쾌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 - 담장, 대문, 계단 - 담장 설치의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소재 및 ‘한국적 전통 디자인’을 포함하는 구조물(예>꽃담) 등의 사용을 권장하며, 시각적 개방감(투시율 30%이상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 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의 지침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시설 업무시설 특화 상업시설 (일반상업 지역, 근린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	상1~상12 업1~업24 특상1~ 특상7	대지내 공지	결정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교통처리	- 대지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른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장 설치에 ‘주차장법’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의 조경은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위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보행 네트워크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기타	- 상업시설용지 중 상1(1, 2획지), 상5, 상6, 상10, 상12(3, 4획지)는 광로변 전면성을 고려한 배치 및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 업무용지2 내 포함되어 있는 임상양호지는 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업업무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일반·공공업무시설 : 20% 이상 [단, 제2행정타운(업1~업24) 내 업무시설은 30% 이상으로 하고, 업무용지2 내에 임상양호지를 존치하여 생태면적률에 포함]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1) 교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치원 (제1종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유1, 9	용도	허용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기타	보육시설 및 학원은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 범위에 한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 4층 이하
학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초· 고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초, 중, 고등학교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제2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40%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0%, 자연녹지지역 : 100% 이하
		높 이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 : 5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 4층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치원 (제1종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 학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유1, 9 / 초, 고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유치원은 현란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학교시설은 다양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긴 외관을 보완하기 위해 시각적 분절을 도입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의 지침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 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는 통학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운동장은 인근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 배치하여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주민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보행 네트워크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 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대지 내 보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로 설치한다.
		기타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 교육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학교 및 유치원 : 30% 이상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2) 문화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시설 (일반 상업지역)	문2-3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건축물 1층부는 공공지원기능 및 라운자카페 등 시민에게 개방된 보행친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함
			• 문화 및 집회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8층 이하(최고높이 : 40m이하)

3)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근린 상업 지역)	주1~7, 주13~15	용도	허용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가능.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이하에 한함. -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불허	- 종교시설 - 운수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원, 장의사, 안마미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고시원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군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해당블록	주 6~7 (일반상업지역)	주 5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70% 이하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180% 이하
		높 이	6층 이하 (최고높이:27m이하)	3층 이하 (최고높이:15m이하)
		용도	허용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가능.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이하에 한함. -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불허	- 종교시설 - 운수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원, 장의사, 안마미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고시원 - 운동시설 중 옥외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군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해당블록	주 1~4 (준주거지역)	주 13~15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250% 이하
		높 이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5층 이하 (최고높이:23m이하)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4층 이하 (최고높이:19m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근린 상업 지역)	주1~7, 주13~15	배치 및 건축선	• 주차장용지의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 및 사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강화된 규정으로 설치기준을 따른다. •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지상1~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한다. 단,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 형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변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예외로 한다.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4) 주유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소 (자연녹지 지역)	주유1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부대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고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5) 기타시설용지

가) 오수중계펌프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오수중계펌프장 (제2종 일반주거지 역)	오1	용도	허용	오수중계펌프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나) 전기공급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전기공급 시설 (자연녹지 지역)	전기1	용도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보행출입구에 관한 계획

구분	조성기준
공공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결정도에서 지정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폭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폭원은 6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호에 의해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지 내 보행 출입구	“단지 내 보행출입구”라 함은 보행자가 단지 내외부로 직접 출입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보행출입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 유효폭원은 4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주출입구로 조성될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위치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서 양측으로 각각 10m 폭의 범위 내에서 이동가능하다.

나. 보행자우선구조에 관한 계획

구분	조성기준
보행자 우선구조	“보행자우선구조”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4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해당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에 관한 계획

구분	조성기준
전면공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 포함)과 전면도로 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학교시설은 결정도에 별도 표시)를 말하며,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면공지는 연결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다. - 차량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전면공지로의 차량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를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우미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 공개공지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이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공공조경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소음 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 등(이하 “부대복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cm 이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은풍면 송월리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신설 등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예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 참고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아래 결정도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에서
열람가능 합니다.

[별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15	6. 은풍 7. 송월지구	8. 은풍면 송월리 9. 91번지 일원	43,400	-	43,400	예고 2007-591 (2007.11.26.)	10.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은풍 송월지구	- 구역명 변경 - 하리 송월지구 → 은풍 송월지구	2016년 하리면이 은풍면으로 개칭됨에 따라 현재 행정구역명으로 구역명 변경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변경)

(1)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9	980	6,565	-	-	-	1	120	960	8	860	5,605
소로	9	980	6,565	-	-	-	1	120	960	8	860	5,605

주) 상기 도로 면적은 도로 가각면적이 포함된 수치임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 계		9개 노선					980					
기정	소로	2	1	8	집산 도로	120	송월리 109-1	송월리 669-7	일반 도로	-	예고 2007-591 (2007.11.26.)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40	송월리 92-25	송월리 92-16	일반 도로	-	예고 2007-591 (2007.11.26.)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140	송월리 92-13	송월리 92-13	일반 도로	-	예고 2007-591 (2007.11.26.)	선형변경 기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96	송월리 92-12	송월리 92-12	일반 도로	-	예고 2007-591 (2007.11.26.)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71	송월리 669-7	송월리 103-10	일반 도로	-	예고 2007-591 (2007.11.26.)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44	송월리 103-1	송월리 103-1	일반 도로	-	예고 2007-591 (2007.11.26.)	
변경	소로	3	4	6	국지 도로	44	송월리 103-11	송월리 103-11	일반 도로	-	예고 2007-591 (2007.11.26.)	기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148	송월리 104-15	송월리 105-14	일반 도로	-	예고 2007-591 (2007.11.26.)	
변경	소로	3	5	6	국지 도로	148	송월리 104-15	송월리 104-14	일반 도로	-	예고 2007-591 (2007.11.26.)	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91	송월리 75-5	송월리 91-6	일반 도로	-	예고 2007-591 (2007.11.26.)	
변경	소로	3	6	6	국지 도로	191	송월리 91-6	송월리 91-6	일반 도로	-	예고 2007-591 (2007.11.26.)	기점 변경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116	송월리 75-2	송월리 91-5	일반 도로	-	예고 2007-591 (2007.11.26.)	
변경	소로	3	7	6	국지 도로	116	송월리 91-5	송월리 91-5	일반 도로	-	예고 2007-591 (2007.11.26.)	기점 변경
신설	소로	3	8	6	국지 도로	54	송월리 92-14	송월리 91-4	일반 도로	-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1	소로3-1	- 선형 변경 및 기종점 변경 - B = 6m, L = 140m - 기점 : 송월리 92-25 → 송월리 92-13 - 종점 : 송월리 92-16 → 송월리 92-13	도로 개설현황 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및 현재 지변에 맞게 기종점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4	소로3-4	- 기종점 변경 - 기점 : 송월리 103-1 → 송월리 103-11 - 종점 : 송월리 103-1 → 송월리 103-11	현재 지번에 맞게 기종점 변경
소로3-5	소로3-5	- 종점 변경 - 종점 : 송월리 105-14 → 송월리 104-14	현재 지번에 맞게 종점 변경
소로3-6	소로3-6	- 기점 변경 - 기점 : 송월리 75-5 → 송월리 91-6	현재 지번에 맞게 기점 변경
소로3-7	소로3-7	- 기점 변경 - 기점 : 송월리 75-2 → 송월리 91-5	현재 지번에 맞게 기점 변경
-	소로3-8	- 노선 신설 - B = 6m, L = 54m	단절된 마을의 연결 및 이동 편의를 위한 노선 신설

2) 공간시설 (변경)

가) 녹지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개소	13,631	감) 192	13,439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송월리 104 일원	8,395	-	8,395	예고 2007-591 (2007.11.26.)	
변경	2	녹지	경관녹지	송월리 669-3 일원	3,030	감) 1,330	1,700	예고 2007-591 (2007.11.26.)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송월리 91-7 일원	2,021	증) 180	2,201	예고 2007-591 (2007.11.26.)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송월리 104-20 일원	22	-	22	예고 2007-591 (2007.11.26.)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송월리 92-19 일원	83	-	83	예고 2007-591 (2007.11.26.)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송월리 92-20 일원	80	-	80	예고 2007-591 (2007.11.26.)	
신설	7	녹지	경관녹지	송월리 669-3 일원	-	증) 958	958	예고 2007-591 (2007.11.26.)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녹지	- 경관녹지 면적 축소 - A = 3,030 → 1,700㎡ (감 1,330㎡)	소로3-8호선 신설로 녹지가 분리됨에 따른 면적 축소
3	녹지	- 경관녹지 면적 오기 정정 및 위치 지번 변경 - A = 2,021 → 2,201㎡ (증 180㎡) - 위치 : 송월리 75-3 → 송월리 91-7	녹지용지 C-6과 동일한 지역으로, 예천군 고시 제2009-640호(2009.11.30.)의 면적 오기 정정 및 위치 지번을 현재 지번으로 변경
7	녹지	- 경관녹지 신설 - A = 958㎡	소로3-8호선 신설에 따라 기 결정된 녹지의 분리된 구간에 대해 도면번호 부여

나) 공원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개소	1,327	-	1,327		
기정	1	새달감 공원1	어린이 공원	송월리 103-6 일원	770	-	770	예고 2007-591 (2007.11.26.)	
기정	2	새달감 공원2	어린이 공원	송월리 91-14 일원	557	-	557	예고 2007-591 (2007.11.26.)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도면표시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	43,400	-	43,400	
A	주거용지	11. 은풍면 송월리 12. 91 일원	18,933	-	18,933	
B	공공시설용지		10,656	증) 372	11,028	
C	녹지용지		13,811	감) 372	13,439	

2)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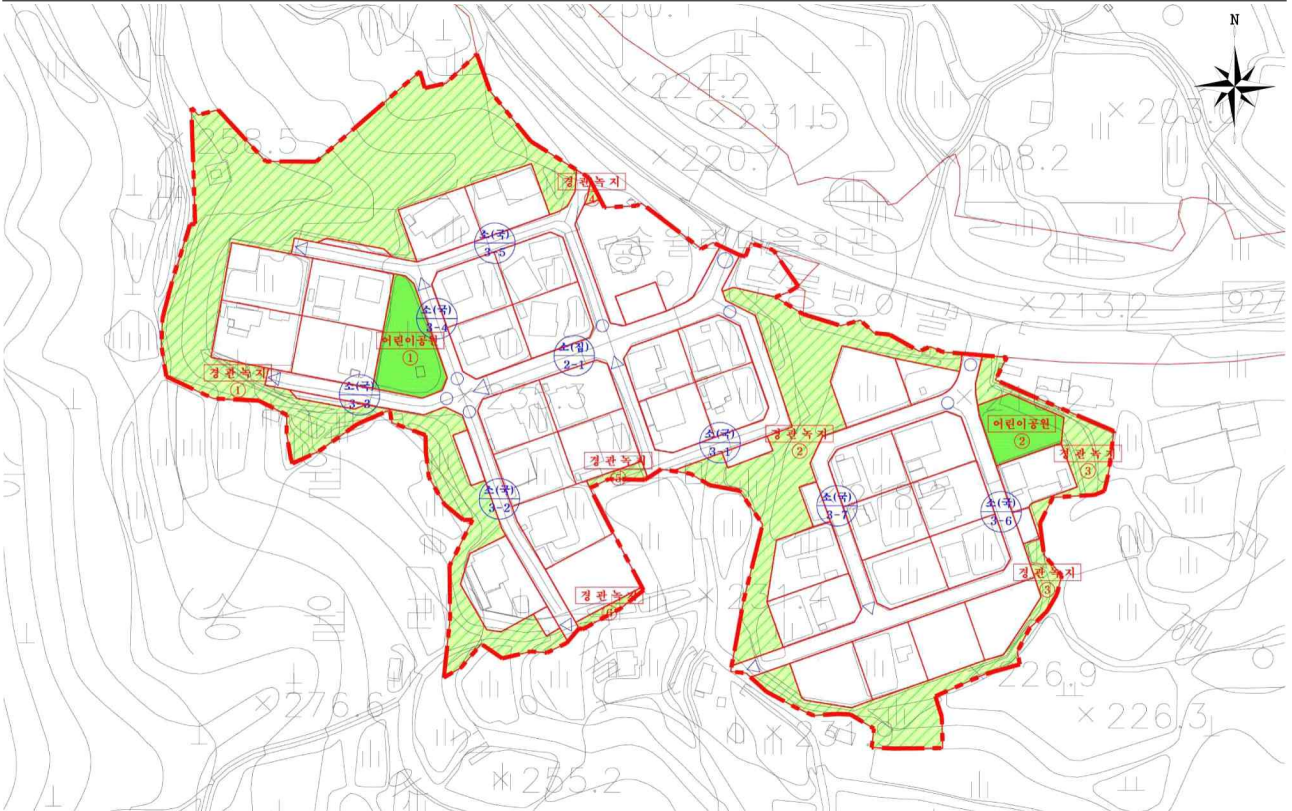
도면표시			구 분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분	기정	변경	합계	-	43,400	-	43,400	
주거 용지	A-1	A-1	주거시설	송월리 103-5 일원	2,591	-	2,591	
	A-2	A-2		송월리 104-8 일원	1,042	-	1,042	
	A-3	A-3		송월리 92-1 일원	673	-	673	
	A-4	A-4		송월리 104-9 일원	2,093	-	2,093	
	A-5	A-5		송월리 92-4 일원	3,356	-	3,356	
	A-6	A-6		송월리 92-11 일원	1,817	-	1,817	
	A-7	A-7		송월리 91-18 일원	1,103	-	1,103	
	A-8	A-8		송월리 91-8 일원	3,222	-	3,222	
	A-9	A-9		송월리 91-15 일원	451	-	451	
	A-10	A-10		송월리 91-22 일원	1,979	-	1,979	
	A-11	A-11		송월리 91-2 일원	606	-	606	
공공 시설 용지	B-1	B-1	마을회관	송월리 104-13 일원	1,828	-	1,828	
	B-2	B-2	도로	송월리 669-7 일원	4,172	증) 2,393	6,565	합병
	B-3	-		송월리 91-6 일원	2,021	감) 2,021	-	
	B-4	B-4	어린이공원	송월리 103-6 일원	770	-	770	
	B-5	B-5		송월리 91-14 일원	557	-	557	
	B-6	B-6	오수처리장	송월리 110-1 일원	320	-	320	
	B-7	B-7		송월리 91-3 일원	237	-	237	
	B-8	B-8	주차장	송월리 104 일원	57	-	57	
	B-9	B-9		송월리 102 일원	64	-	64	
	B-10	B-10		송월리 92 일원	111	-	111	
	B-11	B-11		송월리 92-1 일원	54	-	54	
	B-12	B-12		송월리 104-13 일원	178	-	178	
	B-13	B-13		송월리 92-14 일원	105	-	105	
	B-14	B-14		송월리 91-17 일원	105	-	105	
	B-15	B-15		송월리 91-16 일원	77	-	77	
녹지 용지	C-1	C-1	녹지시설	송월리 104 일원	8,395	-	8,395	
	C-2	C-2		송월리 104-20 일원	22	-	22	
	C-3	C-3		송월리 92-19 일원	83	-	83	
	C-4	C-4		송월리 92-20 일원	80	-	80	
	C-5	C-5		송월리 669-3 일원	3,030	감) 1,330	1,700	
	C-6	C-6		송월리 91-7 일원	2,201	-	2,201	
	-	C-7		송월리 669-3 일원	-	증) 958	958	신설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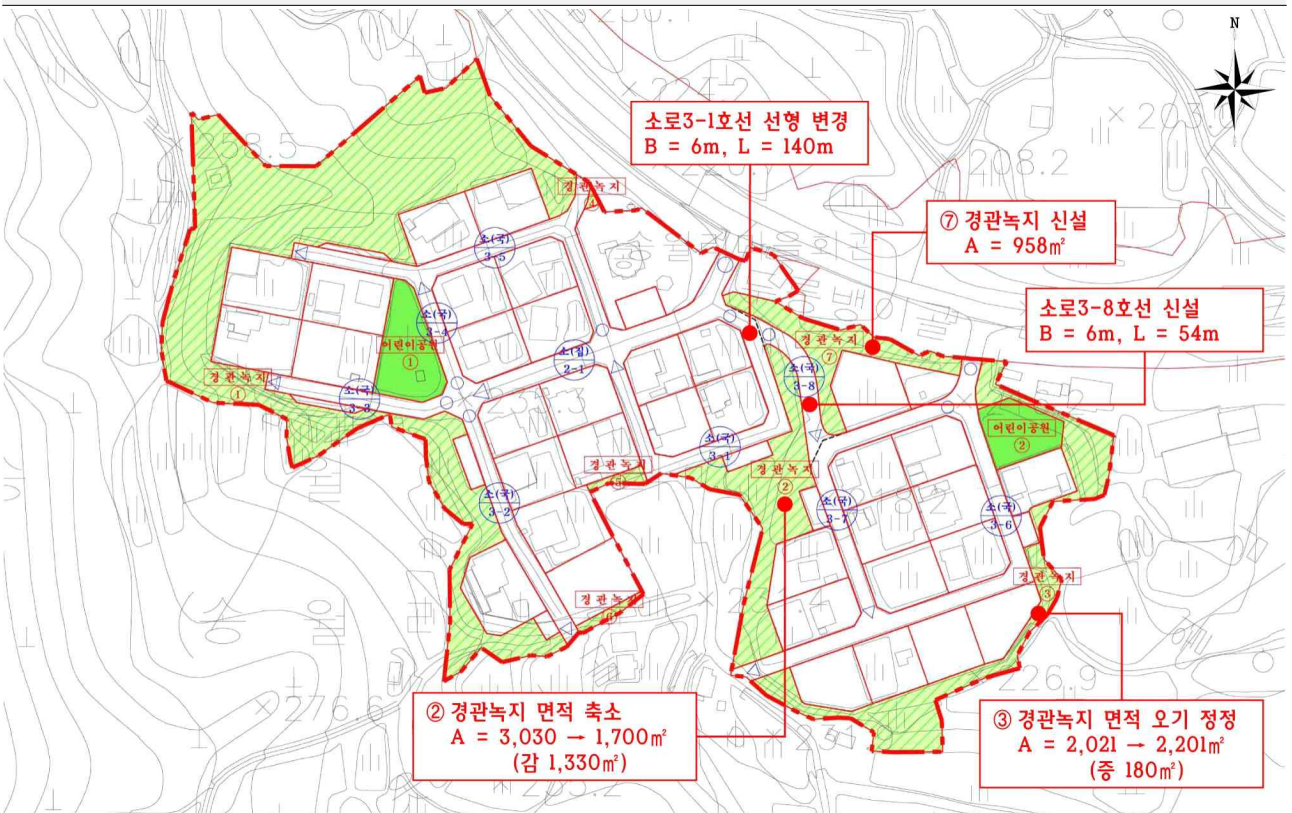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 A11	A1 ~ A11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라목의 공관 제외)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층 수	• 3층 이하
B1	B1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1종 근린생활시설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층 수	• 3층 이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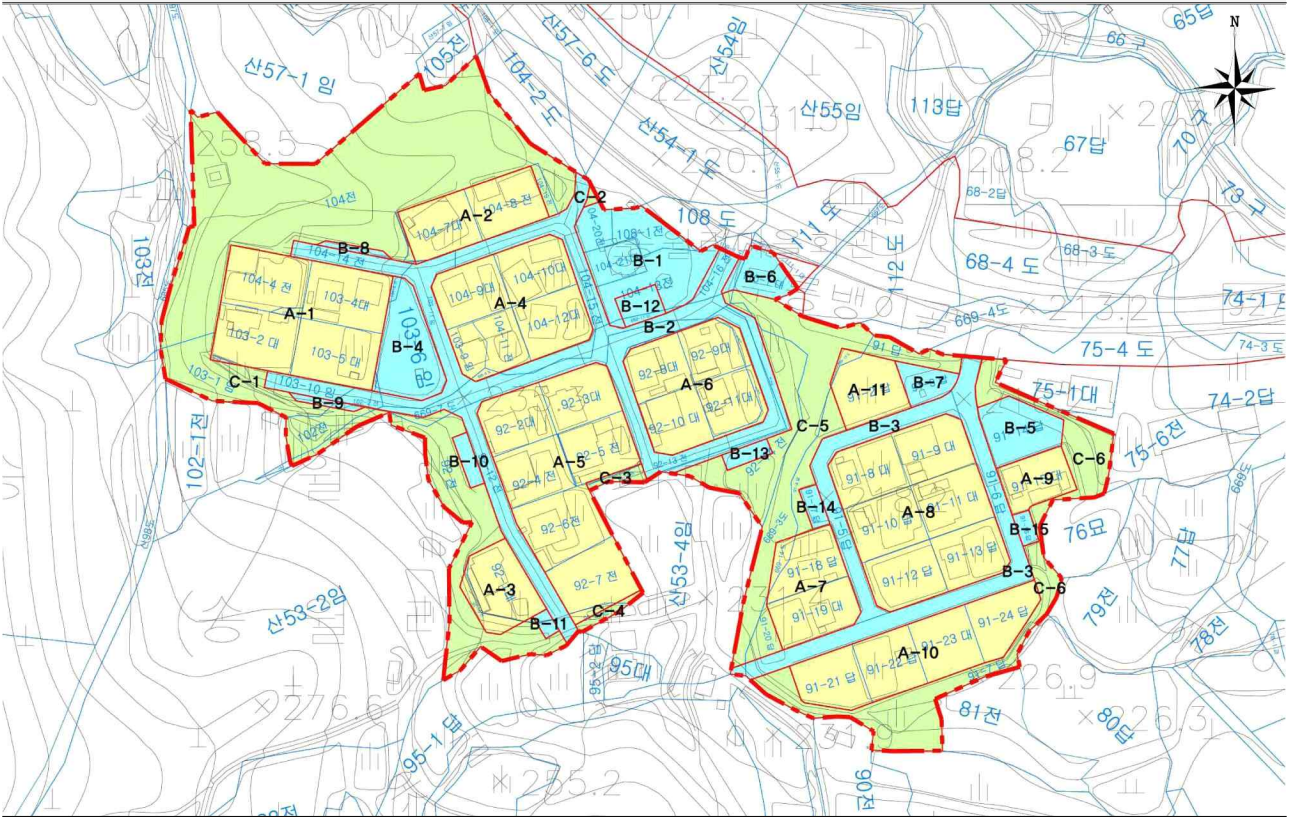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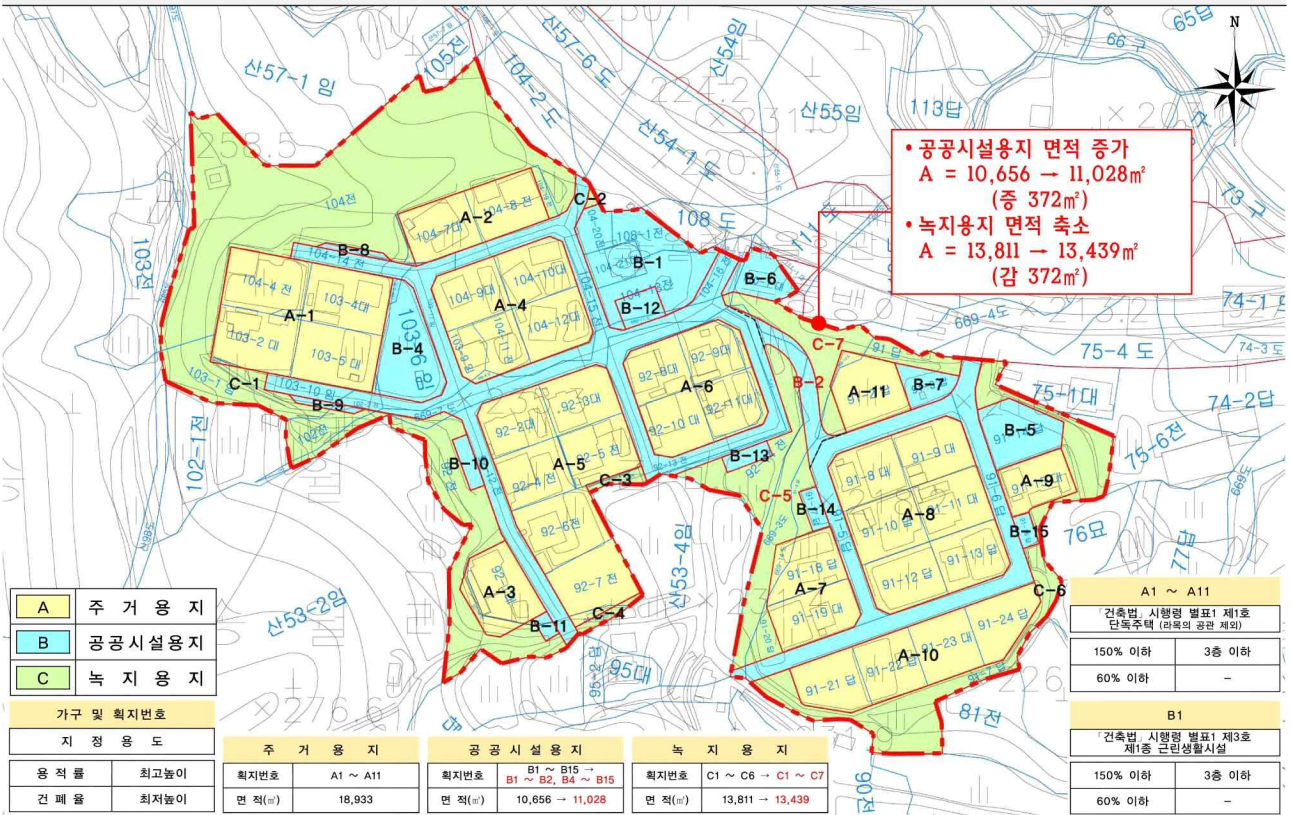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기 정



변 경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예 천 군 수 (인)



구 분	하천점용허가
하 천 명	복계천(지방하천)
점 용 자 주 소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위 치	예천군 용궁면 가야리 618-1번지 외 5필지
점용면적	5.47㎡ (일시 : 124.48㎡)
점용목적	공작물의 신축
사업개요	오수관로 설치 (가야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점용기간	2025년 11월 27일 ~ 2030년 12월 31일 (일시 : 2025년 11월 27일 ~ 2026년 12월 31일)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카드수수료 지원,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군민의 합리적 소비를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내용 추가(안 제3조)

- 카드수수료, 공공배달 플랫폼 홍보 및 활성화 지원사업

4. 개정조례안

○ 불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7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고 : 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 전화 : 054-650-6853
- 팩스 : 054-650-6099
- 전자우편 : eunsol0104@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지역경제과(전화: 054-650-68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임대료”를 “임대료,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요금, 카드수수료”를 “전기요금”으로 한다.

7. 공공배달 플랫폼 홍보 및 활성화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사업장 <u>임대료</u> <u><신 설></u> 7. (생 략) ② 군수는 재해·재난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u>전기요금</u> , <u>카드수수료</u> 및 긴급생계비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내용)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임대료, 카드수수료 지원</u> 7. <u>공공배달 플랫폼 홍보 및 활성화 지원</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 ----- <u>전기요금</u> ---- ----- -----.

예천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예 천



1. 규칙명 : 예천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부서별 사무 전결처리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 전결처리 사항 조정(안 별표1)
- 팀 신설 : 건설도시국 안전재난과 재난상황팀

○ 업무 이관

- 재난상황팀 신설에 따른 안전정책팀, 자연재난팀 업무 일부 이관

○ 업무 조정

- 청사 수리수선 사업비 명시

(사업비 5억원 이상 공공건축팀 시행, 미만은 재산관리팀 시행)

3.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EMPSHIN3266@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전화: 054-650-6084)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 12. 31.>

사무전결처리사항

단위업무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실·과·소장	국장 (직속기관장 포함)	부군수	
복 부	1. 출장명령 및 출장복명						
	• 본청						
	－ 국장·실장(관내외)			기안	기안	○	
	－ 과장(관내외)			기안	○		
	－ 팀장 이하(관내외)	기안	기안	○			
	• 직속기관						
	－ 직속기관장(관내)				기안 : 소장 ○ : 소장		
	－ 직속기관장(관외)			기안		○	
	－ 과장(관내외)			기안	○		
	－ 팀장 이하(관내외)	기안	기안	○			
	• 사업소						
	－ 사업소장(관내)			기안 : 소장 ○ : 소장			
	－ 사업소장(관외)			기안		○	
	－ 팀장 이하(관내외)	기안	기안	○			
	2. 휴가(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조퇴, 외출 등)						
	• 본청						
	－ 국장·실장			기안	기안	○	
	－ 과장			기안	○		
	－ 팀장 이하	기안	기안	○			
	• 직속기관						
	－ 직속기관장				기안	○	
	－ 과장			기안	○		
	－ 팀장 이하	기안	기안	○			
	• 사업소						
	－ 사업소장			기안		○	
	－ 팀장 이하	기안	기안	○			
회의소집	1. 유관기관장, 실·과·소장, 읍면장 회의	기안				○	
	2. 기타 직원회의(본청)	기안			○		
	3. 기타 직원회의(직속기관)	기안			○		
	4. 기타 직원회의(사업소)	기안		○			
민원서류 처리	1. 진정서 및 건의서	기안				○	
	2. 경미한 진정서 및 건의서	기안		○			
	3.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따른 중간처리 상황통보, 기각, 처리완결통지, 관계서류의 이송	기안		○			
	4. 신고로 종결되는 사항	기안		○			
상 훈	1. 정부포상(퇴직자 포함) 추천	기안					○
	2. 장관 이하 표창 추천	기안			○		
	3. 기타 타 기관 표창 추천	기안			○		
기 획	1. 각종평가 자료 제출	기안		○			
	2. 주요업무 및 시책자료 제출	기안		○			
	3. 소관업무 의회질문에 대한 답변	기안		○			
법 제	1. 자치법규·행정규칙의 제정·개정, 폐지 방침결정	기안					○
	2.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제출	기안		○			
예 산 회 계	1.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기안		○			
	2.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요구	기안		○			
	3. 예산유용요구	기안		○			
	4. 보조사업 결정 및 보조금 교부	기안					○
	5. 보조금 정산	기안		○			
	6. 물품의 청구, 수리, 출납	기안		○			
	7.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작성	기안		○			
단위업무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실·과	국장 (직속기관장 포함)	부군수	

				· 소장	포함)		
공 사	1. 공사용 자재관리	기안		○			
	2. 공사 착공명령 및 지도감독	기안		○			
	3. 공사 하자보수 명령	기안		○			
	4. 도급공사 중지·해제결정 및 공사 착공연기 결정		기안		○		
	5. 공사 설계측량 및 보고	기안		○			
	6. 공사편입용지 분할 측량 의뢰	기안		○			
	7. 읍면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설계심사·승인 및 준공검사	기안		○			
	8. 지장건물 및 용지보상금 결정		기안		○		
	9. 지장건물 및 용지보상금 감정 의뢰	기안		○			
	10. 청산금 교부 및 정수액 산출기준 결정	기안		○			
	11. 관급자재 수불	기안		○			
	12. 설계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증액기준)						
	•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	기안		○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기안			○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기안				○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기안					○
	13. 준공검사 조서(공사금액(도급액) 기준)						
	• 2억원 미만	기안		○			
	• 2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기안			○		
	•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기안				○	
	• 20억원 이상	기안					○
기 타	1. 소속공무원(과內)의 배치 및 사무분장	기안		○	○ (직속기관)		
	2. 공무원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						
	• 복무관리	기안		○			
	• 징계의결요구	기안				○	
	3.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채용, 복무감독)	기안		○			
	4. 충무계획 수립	기안					○
	5. 위원회 소집	기안				○	
	6. 고시문 결정 및 고시	기안				○	
	7. 공고문·광고문의 결정 및 공고	기안		○			
	8. 소송업무						
	• 소송 제소 및 항고 응소, 포기		기안				○
	•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기안				○	
	• 소송진행상황 보고	기안				○	
	• 소송결과 보고		기안				○
	9. 행정심판						
	• 청구서 및 답변서 작성	기안				○	
	• 재결결과 보고		기안			○	
	10. 사무 인수인계						
	• 국장, 실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기안				○	
	• 과장	기안			○		
	• 6급 이하	기안		○			
	11. 법령의 해석과 소관업무의 질의 응답	기안		○			
	12. 문서 이송 또는 반송	기안	○				
	13. 공익근무요원 복무일지 및 근무상황	기안		○			
	14. 보안점검표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실장	부군수	
기 획 예산실	기 획	1. 각종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 각종지시사항 관리	기안			○	
		○ 공약사항 관리	기안				○
		2. 군정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군정주요시책개발 및 군정종합기획		기안			○
		○ 주요현안사업 관리	기안			○	
		3. 군정주요업무 평가					
		○ 부서평가, 읍면평가	기안			○	
		○ 업무추진 우수사례 평가	기안			○	
		4. 지역발전사업 관리	기안		○		
		5. 민관공동출자사업계획 수립		기안			○
		6. 의회운영 지원					
		○ 임시회 소집요구 및 의안 발의	기안				○
		○ 의회부의안건 공고	기안		○		
		○ 취합된 의회 요구 자료의 제출	기안			○	
		○ 취합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제출	기안			○	
		○ 의회에서 이송된 청원 중 다수인 관련사항(처리상황 보고)	기안			○	
		7. 군정주요정책사항의 질의에 대한 답변	기안		○		
		8. 선결처분					
		○ 선결처분		기안			○
		○ 상급기관의 보고	기안		○		
		○ 공고	기안		○		
		9. 자체평가					
		○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자체평가 결과	기안				○
		10. 각종 위원회 현황 관리	기안		○		
		11.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12.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 업무	기안		○		
	예 산	1. 예산안 편성, 예비비 사용승인, 지방채 발행, 특별교부세 신청		기안			○
		2.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안				○
		3.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 제출	기안		○		
		4. 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		기안			○
		5. 예산 불성립 시 예산집행	기안				○
		6. 국·도비 보조금 신청	기안				○
		7. 예산의 전용·이용·이체·이월					
		○ 예산의 전용·이월	기안		○		
		○ 예산의 이용·이체	기안			○	
		8. 지방재정 분석					
		○ 지방재정수요분석	기안		○		
		○ 예산편성 결과 보고	기안		○		
		○ 재정보고서	기안		○		
		9.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안				○
		10. 예산편성지침 시달	기안		○		
		11. 예산확정 고시	기안		○		
		12. 예산배정	기안		○		
		13. 투자심사 분석	기안			○	
		14. 예산집행상황 파악보고	기안		○		
	법 무 신	1.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기안				○
		○ 사전보고	기안		○		
		○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정·폐지 공포	기안				○
		2. 소송업무					
		○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지정	기안			○	
		○ 소송지휘 통제		기안		○	
		3. 기타 법무업무					
		○ 법령 등의 질의 해석	기안		○		
		○ 기타 법무행정에 관한 사항	기안		○		
		4. 규제개혁업무					
		○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기안			○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기안			○	
		○ 규제등록에 관한 사항	기안		○		
		○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기안		○		
		○ 규제과제 발굴·개선 추진	기안		○		
		○ 그 밖의 규제일반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실장	부군수	
기 획 예산실	법 무 신	5. 통계조사의 종합 기획					
		○ 인구주택총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 농림어업총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 사업체·광제조업·사회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 기타 각종 통계조사 실시	기안		○		
		6. 통계문서 심사분석	기안		○		
		7. 통계자료의 수집 및 간행물 발간					
		○ 통계조사 자료수집	기안	○			
		○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기안		○		
		○ 통계간행물 발간	기안			○	
		○ 통계간행물 배부	기안		○		
		8. 업무용 수첩 제작 및 배부	기안		○		
		9. 행정자료실 운영	기안		○		
		10. 적극행정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11. 혁신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감 사	1. 감사계획					
		○ 감사기본 계획		기안		○	
		○ 정기 감사 계획 수립		기안		○	
		○ 부분·회계·기술 감사 계획	기안		○		
		○ 인계인수 확인 감사	기안		○		
		○ 감사자료	기안		○		
		2. 감사·조사결과 및 비위사항·직무 관련 범죄 보고·고발	기안		○		
		3. 감사결과 처리					
		○ 감사결과 처리 요구	기안		○		
		○ 집행전말 보고	기안		○		
		○ 미집행 독촉	기안		○		
		4. 상급기관 감사 수감					
		○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기안			○	
		○ 집행전말 보고	기안		○		
		○ 수감자료 작성	기안		○		
		5. 특별감찰 및 직무감찰					
		○ 직무감찰계획 수립		기안		○	
		○ 사업소 및 읍면공무원에 대한 복무단속	기안		○		
		○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안		○		
		6. 사정업무 처리					
		○ 청원·진정 등 민원처리	기안			○	
		○ 신문보도, 상급기관, 기타 통보사항	기안		○		
		7. 징계업무					
		○ 징계의결요구 및 기관장 경고처분		기안			○
		○ 훈계처분	기안			○	
		8. 다수인 관련 민원통제 및 관리	기안			○	
		9. 심사청구 및 재산의 청구					
		○ 청구	기안		○		
		○ 청구의 각하·취하	기안			○	
		○ 심사결정		기안		○	
		10. 공직자 재산 등록					
		○ 재산등록 신고	기안			○	
		○ 신고사항 심사결과 보고	기안			○	
		11. 주민불편신고사항 처리					
		○ 접수 및 통보	기안		○		
		○ 처리결과 회신	기안		○		
		12. 감사통계 작성 및 상급기관 보고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실장	부군수	
기 획 예산실	감 사	13.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기안		○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기안		○		
		○ 납세자관리현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기안		○		
		○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기안		○		
		○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기안			○	
		○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기안		○		
		○ 과세전적부심사	기안		○		
		○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에 대한 접수 및 처리	기안			○	
		○ 기타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항	기안		○		
		14.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 일상감사	기안		○		
		○ 원가심사	기안		○		
	인 구 청 년 정 책	1.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기안				○
		2. 저출산 인식 개선교육 및 홍보	기안		○		
		3. 지역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개발	기안			○	
		4. 외국인 정책 총괄 기획 조정					
		○ 외국인 정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 외국인 지원사업 발굴 및 시행	기안			○	
		5.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6. 청년창업 지원					
		○ 청년창업 계획수립	기안			○	
		○ 청년창업 지원	기안		○		
		7. 청년일자리사업(도 청년정책과 소관)					
		○ 청년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기안		○		
		8. 청년센터 설치					
		○ 청년센터 설치 계획수립	기안				○
		○ 청년센터 운영 및 지원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총무과	총 무	1. 복무						
		○ 복무계획 수립	기안				○	
		○ 일반적인 복무사항	기안		○			
		○ 당직명령 및 감독	기안		○			
		2. 보안관리						
		○ 자체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기안				○	
		○ 보안교육	기안		○			
		○ 비밀소유 현황조사	기안		○			
		○ 보안진단	기안		○			
		3. 공문서의 수발 및 심사	기안		○			
		4. 기록물관리·보관 및 폐기						
		○ 기록물 정리계획 수립	기안		○			
		○ 기록물 정리결과 보고	기안		○			
		○ 기록물의 보관(처리과→기록관)	기안		○			
		○ 기록물의 이관(기록관→국가기록원)	기안		○			
		○ 기록물의 폐기	기안			○		
		5. 정보 공개						
		○ 정보공개청구 결정(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통보	기안		○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기안					○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6. 공인관리						
		○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기안				○	
		○ 일반적인 공문서의 처리	기안		○			
		7. 청사방호	기안		○			
		8. 국제회의 유치,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 체결						
		○ 국내외 자매결연 체결	기안					○
		○ 국내외 자매도시 상호 방문	기안					○
		9. 군수·부군수 사무인계인수서	기안					○
		10. 향우회 관리						
		○ 향우회 행사지원	기안					○
		11.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12. 고향사랑기부제						
		○ 답례품 및 업체선정	기안				○	
		○ 답례품 관리(배송, 정산 등)	기안		○			
		○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안					○
		○ 기금 결산	기안					○
		○ 고향사랑e음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안		○			
	행 정	1. 인사운영						
		○ 인사운영 계획수립	기안					○
		○ 일반직 및 별정직 신규 채용	기안					○
		○ 시보 해제	기안			○		
		2. 지방공무원 평정						
		○ 근무성적 평정	기안				○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조정	기안					○
		3.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						
		○ 대우공무원의 선발·지정	기안			○		
		○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	기안					○
		4. 근속 및 우대승진	기안					○
		5. 전출입 동의 통보	기안					○
		6. 정원관리	기안					○
		7. 공무원 신분보장 및 권익보장						
		○ 휴직	기안					○
		○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기안				○
		○ 정년퇴직	기안					○
		○ 당연퇴직 및 의원면직		기안				○
		○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기안					○
		○ 고충처리 심사	기안				○	
		○ 해외연수 파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총무과	행 정	8. 공무원 징계						
		○ 공무원 징계의결·처분	기안					○
		○ 공무원 징계의결·처분 결과 통보	기안				○	
		9. 인사위원회 운영						
		○ 인사위원회 개최요구	기안					○
		○ 인사위원회 개최	기안				○	
		○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기안					○
		○ 인사위원 임명	기안					○
		10. 공무원 호봉 조정						
		○ 특별승급	기안					○
		11. 회계직공무원의 임용	기안				○	
		12. 인사통계자료의 작성 보고	기안		○			
		13. 기타 공무원의 이력에 관한 조사 및 신원조사·조회·회신	기안	○				
		14. 인사기록변경신고	기안	○				
		15. 청원경찰 관리	기안		○			
		16. 대장확인 등 경미한 사항	기안	○				
		17. 읍면 행정지도	기안				○	
		18. 행정구역						
		○ 기본 방침 결정 및 대상지 결정		기안				○
		○ 사무소 위치 변경	기안					○
		○ 타 단체 행정구역 조정사항 접수처리	기안	○				
		○ 기타 행정구역에 관한 경미한 사항	기안		○			
		19. 표창						
		○ 군수 표창 및 예천 군민상 시상	기안					○
		○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기안				○	
		20. 공무원 교양 및 의식 함양						
		○ 상시학습제도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 직장교육계획 수립	기안		○			
		○ 직장교육 실시 결과 보고	기안		○			
		21. 선거						
		○ 투표구 확정 및 군수·군의원 보궐 선거일 공고	기안					○
		○ 선거사무 기본 계획	기안				○	
		○ 선거관련 업무지도 및 지원	기안				○	
		○ 선거사무 세부실천 및 추진	기안		○			
		○ 선거사무 지도	기안		○			
		○ 선거관련 홍보 및 주민계도	기안		○			
		○ 인구수 등 통보	기안		○			
		○ 선거인 명부 작성 및 공무원의 임면 통보	기안		○			
		○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 인명부) 등본송부 지도	기안		○			
		○ 선거인명부 열람·공람 추진 지도	기안		○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통지 업무 추진 지도	기안		○			
		○ 부재자신고 오기 등 업무 추진 지도	기안		○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보고	기안				○	
		○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보고	기안				○	
		○ 선거인명부작성 입회인 신고·교체 접수 추진 지도	기안		○			
		○ 선거인명부(부재자) 날인 인자의 인영 신고업무 추진 지도	기안				○	
		○ 선거인명부 열람(공람) 장소·기간공고 업무 추진 지도	기안		○			
		○ 선거인명부 수정사항 통보 추진 지도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총무과	행 정	○ 선거인명부 오기 등 발견사실 통보 추진 지도	기안		○			
		○ 선거인명부 작성비용 공시 추진 지도	기안		○			
		○ 선거인명부(부재자) 사본 신고 접수 교부 추진 지도	기안		○			
		○ 기타 선거관련 업무지도 및 협조 지원	기안		○			
		○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기안		○			
		○ 후보자 연설회 개최 지원	기안		○			
		○ 투·개표장 설치 지원	기안		○			
		○ 선거인명부 송부 추진 지도	기안		○			
		22. 지역동향업무 추진						
		○ 중요한 동향 (도 보고 동향 등)	기안					○
		○ 업무추진과 연관이 있는 동향	기안				○	
		○ 기타 경미한 동향	기안		○			
		23. 이장자녀 장학금						
		○ 이장자녀 장학생 대상자 선발	기안		○			
		○ 타 장학금 지급여부 조회	기안		○			
		○ 이장자녀 장학금 신청	기안		○			
		○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기안		○			
		24. 비밀취급 인가증						
		○ 인가 및 해제	기안		○			
		○ 대장관리 및 회수	기안	○				
		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기안		○			
		26.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기안		○			
		27. 재직·경력 증명서 발급	기안	○				
		28. 제안제도 운영						
		○ 제안제도 시행계획 수립	기안				○	
		○ 제안채택 및 시행	기안				○	
		○ 제안서 접수	기안	○				
		29. 공무원 교육						
		○ 5급이상 공무원 교육	기안				○	
		○ 6급 공무원 교육	기안		○			
		○ 7급이하 공무원 교육	기안		○			
		○ 교육훈련 성적 처리	기안	○				
		30.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추진상황 보고 및 경미한 업무추진	기안		○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	기안		○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기안		○			
		○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기안		○			
		○ 주민참여 홍보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총무과	후 생 지	1.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기안					○
		○ 단체교섭·협약매뉴얼 작성	기안					○
		○ 공무원단체 운영지원 협의 및 협조	기안			○		
		2.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 직원 복지포인트 부여 및 관리	기안		○			
		○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기안					○
		○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	기안					○
		○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	기안				○	
		○ 직원건강검진비 지원	기안		○			
		3. 기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취미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 직원휴양시설 운영	기안		○			
		○ 직장금고 운영	기안		○			
		○ 직장 체육행사계획 수립 시행		기안				○
		○ 신규사업 발굴	기안					○
		4. 직장어린이집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장어린이집 위탁 선정	기안					○
		○ 직장어린이집 운영	기안				○	
		5.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구성	기안					○
		○ 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영	기안		○			
		6. 공무원외출장에 관한 사항						
		○ 공무원외출장 계획 수립		기안				○
		○ 공무원외출장 심의·허가	기안				○	
		○ 공무원외출장 귀국 보고	기안		○			
		7. 공무원 급여, 연금, 건강보험 등에 관한 사항						
		○ 공무원 급여 지급	기안		○			
		○ 공무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기안				○	
		○ 공무원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기안		○			
		○ 공무원 각종 대부 업무	기안		○			
		○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및 사무처리	기안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업무처리	기안		○			
		8. 공무직 근로자 단체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기안					○
		○ 단체교섭·협약매뉴얼 작성	기안					○
		○ 공무직근로자 단체 운영지원 협의 및 협조	기안			○		
		9.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사항						
		○ 공무직근로자 정수 및 현원관리 <신설>	기안				○	
		○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업무	기안		○			
		○ 공무직근로자 국민연금부담금 납부	기안		○			
		○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부담금 납부	기안		○			
		10. 공무원증						
		○ 발급 신청	기안		○			
		○ 대장관리 및 회수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총무과	평 생 교육	1. 평생교육 기반 및 체제 구축						
		○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안			○		
		○ 평생학습도시 기획 및 운영	기안			○		
		2. 평생학습관 운영						
		○ 총괄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 예천군 평생학습관 운영	기안			○		
		○ 강사 선정 및 초빙에 관한 사항	기안		○			
		○ 예천군 평생학습관 시설 및 집기 관리	기안		○			
		○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면제·반환	기안		○			
		3. 예천군민아카데미 계획 및 운영	기안			○		
		4.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계획 수립	기안			○		
		○ 평생학습동아리 지원대상 결정	기안		○			
		○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연계 업무 추진	기안		○			
		5. 권역별 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권역별 학습센터 활성화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 권역별 학습센터 지원 관련 일반사항	기안		○			
		6. 마을평생교육강좌 지원에 관한 사항						
		○ 마을평생교육강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7. 평생교육 관련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8.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위·해촉	기안					○
		○ 평생교육협의회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9. 대학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총괄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 대학 연계 사업 추진	기안			○		
		10. 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 초·중고 학교 교육 업무 지원	기안			○		
		○ 교육(지원)청 연계 사업 추진	기안			○		
		○ 학교 교육경비 지원	기안					○
		11. 학습지도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12. 예천군민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총괄계획 수립		기안				○
		○ 장학회 운영 및 지원	기안			○		
		○ 기타 장학사업 추진	기안			○		
		13. 대학생 기숙사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14. 그 밖의 평생교육 및 학교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안			○		
		15. 그 밖의 평생교육 및 학교 지원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총무과	중 대 재 해 예 방	1.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기안					○
		2. 중대재해예방 업무매뉴얼 및 세부계획 작성 및 배포	기안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기안				○	
		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점검 및 조치	기안				○	
		5. 중대재해 사고 대응	기안					○
		6. 중대재해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기안			○		
		7.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재무과	부 과	1. 도세 과세자료 관리	기안		○			
		2. 도세 과오납금 환부	기안		○			
		3. 지방세 종합계획 수립 및 목표액 책정	기안					○
		4. 취득세						
		○ 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기안	○				
		○ 취득세 과세대장 정리	기안	○				
		○ 취득세 부과	기안		○			
		○ 취득세 징수·감액 결정						
		- 건당 500만원 이상	기안			○		
		- 건당 500만원 미만	기안		○			
		5.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자진신고 처리	기안	○				
		○ 등록면허세 과세대장 정리	기안	○				
		○ 등록면허세 부과	기안				○	
		○ 등록면허세 징수·감액 결정						
		- 건당 500만원 이상	기안			○		
		- 건당 500만원 미만	기안		○			
		6. 지역자원시설세(도세부분)						
		○ 지역자원시설세 자진신고 처리	기안	○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장 정리	기안	○				
		○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기안		○			
		○ 지역자원시설세 징수·감액 결정						
		- 건당 500만원 이상	기안			○		
		- 건당 500만원 미만	기안		○			
		7. 세무조사						
		○ 세무조사 계획수립	기안				○	
		○ 세무조사 후 과세예고	기안		○			
		○ 지방세 세무조사	기안		○			
		8.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기안		○			
		9. 주민세						
		○ 주민세 신고납부 처리	기안	○				
		○ 주민세 과세대장정리	기안		○			
		○ 주민세 부과	기안				○	
		○ 주민세 징수·감액 결정						
		- 건당 500만원 이상	기안			○		
		- 건당 500만원 미만	기안		○			
		10.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계획수립	기안		○			
		○ 지방소득세 자진신고처리	기안	○				
		○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정리	기안		○			
		○ 지방소득세 부과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재무과	부 과	○ 지방소득세 징수·감액 결정						
		- 건당 500만원 이상	기안			○		
		- 건당 500만원 미만	기안		○			
		11.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 자진신고 처리	기안	○				
		○ 담배소비세 징수·감액결정						
		- 건당 500만원 이상	기안			○		
		- 건당 500만원 미만	기안		○			
		12. 지방세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재산세, 자동차세 제외)	기안		○			
		13. 지방세비과세·감면(재산세, 자동차세 제외)						
		○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재산세, 자동차세 제외)	기안	○				
		○ 군세 비과세·감면 결정(재산세, 자동차세 제외)						
		- 건당 500만원 이상	기안			○		
		- 건당 500만원 미만	기안		○			
		14. 지방세 구제제도(재산세, 자동차세 제외)						
		○ 군세 구제제도 운영(재산세, 자동차세 제외)		기안			○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15.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	기안				○	
		16.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기안		○			
		17.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개발		기안			○	
	재 산 세	18. 지방세 통계 작성	기안		○			
		19. 지방세 제증명 발급	○					
		1. 개별 주택 가격						
		○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기안				○	
		○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기안		○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안		○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기안				○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기안				○	
		○ 이의신청 및 정정가격	기안		○			
		○ 주택가격 관련 대장정비	기안		○			
		2. 공동주택 가격						
		○ 신축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조사	기안		○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안		○			
		○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산정	기안		○			
		3.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기안				○	
		4. 지역자원시설세(군세부분)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장 정리	기안	○				
		○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기안		○			
		○ 지역자원시설세 징수·감액 결정						
		- 건당 500만원 이상	기안			○		
		- 건당 500만원 미만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재무과	재산세	5. 재산세						
		○ 재산세 과세대상정리	기안		○			
		○ 건축물 일제조사 계획	기안		○			
		○ 재산세 부과	기안				○	
		○ 재산세 징수·감액결정						
		- 건당 500만원 이상	기안			○		
		- 건당 500만원 미만	기안		○			
		○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기안	○				
		○ 재산조회 회신	기안		○			
		6. 자동차세						
		○ 자동차세 과세대상정리	기안		○			
		○ 자동차세 부과	기안				○	
		○ 자동차세 징수·감액결정						
		- 건당 500만원 이상	기안			○		
		- 건당 500만원 미만	기안		○			
		○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 및 통보	기안		○			
		○ 자동차세 비과세·감면대상 통보	기안		○			
		7. 지방세 비과세·감면(재산세, 자동차세)						
		○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재산세, 자동차세)	기안	○				
		○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재산세, 자동차세)						
		- 건당 500만원 이상	기안			○		
		- 건당 500만원 미만	기안		○			
		8. 지방세 구제제도(재산세, 자동차세)						
		○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재산세, 자동차세)	기안				○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건축물 시가표준액, 재산세·자동차세 이의신청)	기안			○		
	징 수	1. 체납자정리						
		○ 체납세 일제정리 계획수립	기안				○	
		○ 체납세 징수실적 제출	기안		○			
		○ 체납세 징수 촉구	기안		○			
		○ 체납 사유별 분석	기안		○			
		○ 체납세 징수가능여부 분석	기안		○			
		○ 체납자관리	기안		○			
		○ 체납세 징수실적평가	기안			○		
		○ 채권압류	기안		○			
		2.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 기한 연장	기안		○			
		3. 지방세 정리보류						
		○ 전국재산조회 의뢰	기안		○			
		○ 전국재산조회 결과조치	기안		○			
		○ 정리보류 결정결의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재무과	징 수	4. 압류·압류 해제의 등기 촉탁(말소)	기안		○			
		5.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또는 교부청구						
		○ 공매의뢰	기안			○		
		○ 지방세 교부청구	기안		○			
		○ 배당금수령	기안		○			
		○ 배분계산서통보	기안		○			
		○ 공매대금(보증금) 세입세출외 현금보관	기안		○			
		○ 공매에 의한 등기촉탁	기안		○			
		6. 지방세 징수보고	기안		○			
		7. 징수촉탁과 수탁의 인수 및 거절						
		○ 징수촉탁의뢰	기안		○			
		○ 징수수탁의 인수 및 거절	기안		○			
		8.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	기안		○			
		9. 세입과목 및 연도 정정	기안		○			
		10. 도 세입금 납부	기안		○			
		11. 월계대사표의 증명	기안		○			
		12. 납액통지	기안		○			
		13. 세외수입징수·감액 결정	기안		○			
		14. 세외수입의 정리보류						
		○ 전국재산조회 의뢰 및 통보	기안		○			
		○ 정리보류 결정	기안			○		
		15. 세외수입 징수유예 및 납기 기한연장	기안		○			
		16. 세입일계표 및 일일결산	기안		○			
		17. 세외수입 징수실적 제출	기안		○			
		18. 자금의 배정						
		○ 자금배정계획수립	기안		○			
		○ 자금배정실시	기안		○			
		○ 보조금 징수결정결의	기안		○			
		○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기안		○			
		19. 예천군금고 감독 및 감사명령						
		○ 군금고 계약체결	기안					○
		○ 군금고 및 수납·지출 대행정 검사	기안				○	
		○ 군금고 및 수납·지출 대행정 검사결과 보고	기안				○	
		20. 자금의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 예금가입신청 및 해지	기안		○			
		○ 이자수입 납부	기안		○			
		21. 자금수급 계획수립		기안				○
		22. 회계간 자금전용		기안			○	
		23. 수입증지 보관 및 수불						
		○ 군 수입증지 수급관리	기안		○			
		○ 도 수입증지 수급관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재무과	징 수	24. 과오납 환부 총괄(이중수납)						
		○ 건당 500만원 이상	기안			○		
		○ 건당 500만원 미만	기안		○			
	경 리	1. 국고, 국·도비 재배정, 일상경비 자금교부 및 정산	기안		○			
		2. 공사감독관 및 감사공무원 임명사항						
		○ 계약금액 1억원 미만	기안		○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기안		○		
		3. 물품 수급관리 계획 및 현재액 보고	기안		○			
		4. 물품 망실, 훼손, 사고 조사 처리	기안		○			
		5. 비품관리	기안		○			
		6. 세출일계표(일보)	기안	○				
		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기안		○			
		8. 일상경비의 교부 및 정산	기안		○			
		9. 임시 일상경비의 정산	기안		○			
		10. 원천징수금의 납부	기안		○			
		11. 유가증권의 보관관리	기안	○				
		12. 입찰의 집행	기안		○			
		13. 입찰공고	기안			○		
		14. 지출액계산증명보고	기안			○		
		15. 지출확정액에 대한 지출	기안	○				
		16. 지출금 반납명령	기안		○			
		17. 회계관계 질의 답변	기안		○			
		18. 착공계 및 공정표 확인	기안		○			
		19.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 복식부기 회계처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복식부기 운영 교육	기안		○			
		○ 복식부기 시스템 운영 관리	기안		○			
		○ 전산시스템 용역 감독 및 검수	기안		○			
		○ 일일세출회계처리 검증 및 수정	기안		○			
		○ 세입회계 처리 및 관리	기안		○			
		20. 복기부기 회계에 관한 자산·부채 관리						
		○ 자산·부채 일제조사	기안		○			
		○ 자산·부채실사 결과 보고	기안			○		
		○ 건설중인 자산관리	기안		○			
		○ 자산·부채 자료 입력 및 정비	기안		○			
		○ 세입세출외 현금 및 기금조사	기안		○			
		21. 복식부기회계 결산	기안					○
		22.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23. 공용차량관리(관리계획, 매각)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재 산 관 리	1.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승인 신청						
		○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제출 및 취득처분결과 보고		기안				○
		○ 공유재산 감정 측량 의뢰	기안		○			
		2. 공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 및 취소						
		○ 공유재산 신규대부사용 허가	기안			○		
		○ 공유재산 계속대부사용 허가	기안		○			
		○ 공유재산 대부사용 허가 취소	기안			○		
		3. 공유재산의 관리전환		기안			○	
		4. 공유재산의 분임관리 지정		기안			○	
		5.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기안			○	
		6. 재산의 증감 및 이동신고	기안		○			
		7. 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기안		○			
		8.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기안		○			
		9. 공유재산 결산보고		기안				○
		10.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안		○			
		11. 청사기본계획 수립		기안				○
		12. 청사 관리						
		○ 청사배치 및 배정계획		기안				○
		○ 청사위탁관리 업무(시설방제분야)						
		- 청사위탁관리 용역확인서	기안		○			
		- 시설별점검기록표	기안	○				
		- 기타 청사위탁관리 업무	기안		○			
		○ 청사안전진단 및 점검	기안		○			
		○ 청사조경지 및 시설유지관리 업무	기안		○			
		○ 건물 및 영조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관리 업무	기안		○			
		○ 부군수관사 유지관리 업무	기안		○			
		○ 청사 소규모 수리수선 업무 : 사업비 5억원 미만	기안		○			
		○ 그 외 청사 관리 업무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홍 보 소통과	홍보	1. 군정 홍보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군정홍보자료 수집 및 제공						
		○ 홍보자료 수집	기안	○				
		○ 홍보자료 편집	기안		○			
		○ 홍보자료 제공	기안	○				
		3. 보도 사진 및 영상 촬영·배부	기안	○				
		4. 군정에 관한 여론조사						
		○ 계획 수립		기안			○	
		○ 결과 보고		기안			○	
		5. 정례브리핑 운영 및 출입기자 관리	기안		○			
		6. 홍보기록물 DB구축 및 관리						
		○ 사진촬영 및 보존	기안		○			
		○ 비디오 촬영 및 편집	기안		○			
		○ 영상물 제작	기안			○		
		7. 언론 홍보(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케이블 방송 등)	기안		○			
		8. 홍보광고 시행	기안			○		
		9. 언론사 특집 대담, 인터뷰, 기획보도, 인사말 등 작성	기안		○			
		10. 군보 발행	기안		○			
		11. 정기간행물 등록 및 관리(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등)	기안		○			
		12. 예천소식지 제작 및 배부	기안		○			
		13. SNS 등을 활용한 홍보(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기안		○			
		14. 문자알리미 서비스 운영	기안		○			
		15. SNS 홍보단 운영	기안		○			
		16. 뉴미디어 콘텐츠 발굴 시행	기안		○			
		17. 랩핑을 활용한 군정 홍보(택시, 관광버스)	기안		○			
		18. 군정 챗봇 민원서비스 운영	기안		○			
		19.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전 산 정 보	1. 행정정보화 추진계획						
		○ 계획 수립	기안				○	
		○ 추진상황보고 등 업무추진	기안		○			
		2. 전산보안 업무 및 보안성 검토						
		○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 보안시스템 도입 및 관리	기안		○			
		○ 전산보안 교육	기안		○			
		○ 보안성 검토 심의	기안		○			
		3. 정보화교육						
		○ 정보화교육 종합계획 수립	기안			○		
		○ 정보화 교육생 모집 및 교육실시	기안		○			
		○ 정보화 교육장 관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홍 보 소통과	전 산 정 보	4. 지능정보화 추진						
		○ 계획 수립		기안			○	
		○ 추진상황보고 등 업무추진	기안		○			
		5. 주민정보이용실 관리						
		○ 계획 수립	기안		○			
		○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6. 정보화마을 운영 관리						
		○ 계획 수립	기안			○		
		○ 추진상황보고 등 업무추진	기안		○			
		○ 사후관리	기안		○			
		7. 온-나라 시스템 운영 관리						
		○ 시스템 점검 및 운영자 교육	기안		○			
		○ 시스템 유지보수 등 운영 관리	기안		○			
		○ 추진상황보고 등 업무추진	기안	○				
		8. 시군구공통기반 및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관리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기안		○			
		○ 지도점검 및 운영 교육	기안		○			
		○ 추진상황보고 등 업무추진	기안	○				
		9.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관리						
		○ 계획수립	기안				○	
		○ 추진상황보고 등 업무추진	기안		○			
		10. 각종 정보화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 계획 수립	기안		○			
		○ 프로그램의 관리 사항 등	기안	○				
		○ 추진상황보고 등 업무추진	기안	○				
		11.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 계획 수립	기안		○			
		○ 대상자 선정 및 보급	기안		○			
		12. 정보기술아키텍처(EA)에 관한 사항						
		○ 계획 수립	기안			○		
		○ 행정정보자원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기안	○				
		13. S/W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계획 수립	기안		○			
		○ S/W 협의조정 및 자료관리	기안	○				
		1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계획 수립	기안			○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및 진단	기안		○			
		○ 개인정보보호 지도 및 점검	기안		○			
		15. 공공데이터 운영 관리 및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 계획 수립	기안			○		
		○ 공공데이터 자료 관리 및 제공	기안		○			
		○ 공동활용데이터 등록 및 제공	기안		○			
		16.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 계획 수립	기안			○		
		○ 빅데이터 자료 관리 및 활용	기안		○			
		17. 메타버스 업무 추진						
		○ 계획 수립	기안			○		
		○ 메타버스 사업추진 및 운영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통신영	1. 행정통신 현대화 사업						
		○ 계획 수립		기안				○
		○ 집행	기안		○			
		○ 경미한 업무추진	기안	○				
		2. 농어촌 주민 통신접근성 보장사업(광인터넷)		기안	○			
		3. 무선인터넷(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기안	○			
		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착공전 설계도 검토 업무						
		○ 계획수립	기안					○
		○ 현장검사 및 필증교부	기안		○			
		○ 재검사 등 행정조치	기안				○	
		○ 분기 및 연말 보고	기안		○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업무	기안		○			
		5. 통신보안 관리	기안				○	
		6. 종합정보통신망(WAN 및 LAN) 운영 및 유지관리	기안		○			
		7.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기안		○			
		8. 일반전화 및 행정전화(전용회선) 유지관리	기안		○			
		9. 행정방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기안		○			
		10. 행정통신장비 유지 관리(FAX, SMS, 전수녹취 등)	기안		○			
		11. 공공건축물 정보통신분야 공사감독 및 검수	기안		○			
		12. 전화교환 및 FAX 송·수신 업무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문 화 관 광 과	문 화 예 술	1. 문화정책에 관한 사항						
		○ 문화정책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기안				○
		○ 문화정책 지원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2.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기안				○
		○ 문화산업 일반	기안		○			
		○ 문화단체 보조금 지원 결정	기안					○
		3.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 관리						
		○ 문화예술 행사 계획 수립	기안					○
		○ 문화예술단체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기안		○			
		4. 문화원 운영 및 지도관리						
		○ 운영지도		기안	○			
		○ 문예행사 및 사업활동 지원	기안		○			
		5. 종교 업무						
		○ 종교행사 지원	기안		○			
		○ 종교단체 현황조사	기안		○			
		6. 공연 및 공연장에 관한 사항						
		○ 공연장 신규(변경, 폐업) 등록 및 관리	기안		○			
		○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기안			○		
		○ 공연 및 공연장 신고 일반	기안		○			
		7. 유통관련업소 업무						
		○ 지도단속 계획 수립	기안		○			
		○ 등록 및 신고처리	기안		○			
		○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기안			○		
		○ 유통관련업소 일반	기안		○			
		8. 출판사, 인쇄소 업무						
		○ 신고 및 관리	기안		○			
		○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기안			○		
		9. 도서관 업무						
		○ 도서관 지원 일반	기안		○			
		○ 작은도서관 등록, 변경, 취소	기안		○			
		10.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 문화예술 기반시설 건립	기안					○
		○ 문화예술 기반시설 위탁관리	기안					○
		○ 문화예술 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기안			○		
		11.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육성						
		○ 문화 콘텐츠 발굴 계획 수립	기안					○
		○ 문화 콘텐츠 개발사업 추진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문 화 관 광 과	국 가 유 산	1. 국가유산 지정 및 해제						
		○ 국가유산 지정·등록 및 해제	기안					○
		○ 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기안			○		
		2. 향교, 유림단체, 전통사찰						
		○ 전통사찰 허용기준안 처리 및 관리	기안		○			
		○ 전통사찰 보전관리	기안		○			
		○ 향교 보전관리	기안		○			
		○ 자료수집	기안	○				
		○ 사찰관리	기안		○			
		○ 향교관리	기안		○			
		3. 무형유산 전승관리						
		○ 무형유산 전수관 관리	기안		○			
		○ 무형유산 보유자 등 전승자 육성 및 관리	기안		○			
		4. 군지편찬 및 발간						
		○ 군지편찬위원회 관리	기안				○	
		○ 군지 발간 계획 수립		기안				○
		5. 천연기념물 및 유적지 관리						
		○ 국가유산 발견 신고 수리	기안					○
		○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및 관리	기안		○			
		○ 매장유산 보전관리	기안		○			
		6. 국가유산 현상변경						
		○ 국가유산 현상변경	기안		○			
		○ 매장유산 발굴허가	기안		○			
		○ 국가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	기안		○			
		7. 국가유산 보수 및 관리						
		○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점검	기안	○				
		○ 국가유산 보수 계획	기안				○	
		○ 국가유산 보수(설계, 승인, 착공, 준공) 보고	기안		○			
		○ 국가유산 국·도비 신청	기안					○
		○ 국가유산 관람료 인가	기안				○	
		○ 국가유산 일반	기안		○			
		○ 국가유산 매매업소 및 국가유산사범 단속	기안		○			
		8. 비지정유산 보수	기안				○	
		9. 향토 문화 연구 조사	기안		○			
	관 광 진 흥	1. 관광행정 종합 기획						
		○ 계획수립		기안		○		
		○ 집행 및 업무추진	기안		○			
		○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운영	기안			○		
		2. 관광사업 관리						
		○ 관광사업 등록	기안			○		
		○ 관광사업 변경등록	기안		○			
		○ 관광사업 휴(폐)업 신고	기안		○			
		○ 관광사업체 지도·감독	기안		○			
		○ 관광사업 행정처분	기안				○	
		3. 관광마케팅 및 정책 일반						
		○ 관광객 통계	기안		○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관리	기안		○			
		○ 국내·외 관광전 참가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문 화 관광과	관 광 진 흥	4. 관광안내체계 구축						
		◦ 관광안내표지 정비·관리	기안		○			
		◦ 관광 홍보물 발행	기안		○			
		5. 경북북부권관광진흥협의회 지원	기안		○			
		6.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업무	기안		○			
		7. 곤충엑스포 및 예천세계활축제 지원	기안				○	
		8. (재)예천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기안					○
	관 광 개 발	1. 관광지지정 및 조성						
		◦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수립	기안					○
		◦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신청	기안					○
		◦ 관련업무협의 및 인허가신청	기안		○			
		◦ 조성계획 변경승인신청	기안					○
		◦ 관광지지정 및 조성관련 기타업무	기안		○			
		◦ 민자유치 기본계획수립		기안				○
		◦ 민자유치 기본계획공고 및 기타업무	기안			○		
		◦ 민자유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기안				○	
		◦ 민자유치 사업협약체결		기안				○
		◦ 민자유치 기타업무	기안		○			
		2. 관광개발사업 토지보상						
		◦ 토지보상 위수탁 협약체결	기안					○
		◦ 토지보상 수용재결신청	기안					○
		◦ 토지보상 계획공고 및 공시송달	기안				○	
		◦ 토지보상 기타업무	기안		○			
		3.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사업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기안				○	
		◦ 관련업무협의 및 인허가신청	기안		○			
		◦ 사업정산보고 및 기타업무	기안		○			
		4. 기타 관광개발 운영						
		◦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 관광지 확인 점검	기안		○			
	삼 강 문 화 단 지	1. 연간 관리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안		○			
		3. 입장료 징수 및 정산 관리	기안		○			
		4. 예약 및 고객센터 관리						
		◦ 추진상황보고 및 민원회신	기안		○			
		◦ 각종 일지작성	기안	○				
		5. 관광시설물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관리						
		◦ 부대시설물 유지관리(파고라, 벤치 등)	기안		○			
		◦ 점검일지 및 관리대장	기안	○				
		6. 전기,소방,기계(지열설비, 비점오염 등), 승강기 시설물 유지관리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필수)	기안		○			
		◦ 시설물 유지보수	기안		○			
		◦ 점검일지 및 관리대장	기안	○				
		7. 수경시설(음악분수+벽천폭포+실개천)유지관리						
		◦ 시설물 수리 및 운영상황보고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문 화 관 광 과	삼 강 문 화 단 지	8. 주요시설물 안전 정기시설검사(전기, 소방, 승강기, 실내외 어린이놀이시설)	기안		○			
		9. 지하수 관정(4공) 오염방지 및 유지관리	기안		○			
		10. CCTV 관제센터 영상정보 보안관리	기안		○			
		11. 영상기기(CCTV)통신망 관리	기안		○			
		12. 삼강문화단지 홍보에 관한 사항						
		○ 세부계획수립	기안		○			
		○ 추진상황보고 및 민원회신	기안		○			
		13. 삼강문화단지 홈페이지 관리	기안		○			
		14.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일자리 관리						
		○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항	기안		○			
		○ 근로자 사역 세부계획 수립	기안		○			
		○ 근무일지	기안	○				
		15. 삼강나루캠핑장 및 카페 위탁관리						
		○ 계획 및 계약, 운영실적 보고	기안		○			
		16. 조경수목 식재 및 꽃길 조성	기안		○			
		17. 생태공원 및 테마숲길 유지관리	기안		○			
		18. 수족관 및 내수면 연못 관리	기안		○			
		19. 재해배상책임보험 관리	기안		○			
		20. 삼강주막 나루터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 지원	기안	○				
		21. 그 밖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	기안		○			
	예 천 박 물 관	1. 박물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운영계획 수립		기안				○
		○ 박물관 운영보고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2. 박물관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사항						
		○ 박물관 내의 환경 관리	기안	○				
		○ 소방시설 및 방화관리	기안		○			
		○ 각종전기관련 장치 및 시설물 유지	기안	○				
		○ 각종 업무일지 및 대장	기안	○				
		3. 박물관 방호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기안		○			
		4.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5.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기안		○			
		○ 홍보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기안		○			
		6. 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7. 박물관 질서유지 및 관람객 안내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문 화 관 광 과	예 천 박 물 관	8. 입장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 입장료 및 사용료 조정	기안					○
		◦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및 납부	기안		○			
		◦ 입장권 제작	기안		○			
		9. 박물관 재산 및 비품 관리	기안		○			
		10. 수장고 관리	기안	○				
		11. 예천사 관련 유물 및 자료수집						
		◦ 자료수집 및 구입	기안			○		
		◦ 자료의 기증 기탁	기안		○			
		12. 예천박물관 전시시설 관리	기안		○			
		13. 특별전시회 및 전시자료 관리						
		◦ 특별전시 계획		기안		○		
		◦ 전시자료 관리	기안	○				
		◦ 전시자료의 교체	기안	○				
		14. 박물관 도록 및 도서발간	기안		○			
		15. 박물관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						
		◦ 소장유물의 자료 분류	기안		○			
		◦ 자료의 복제 및 보존	기안		○			
		◦ 유물 교환, 복제에 관한 사항	기안		○			
		16. 박물관 자료 연구	기안		○			
		17. 박물관 사회교육 및 문화교실 운영						
		◦ 자료에 대한 강연회, 강습회, 답사 등 각종 행사 개최	기안		○			
		18. 박물관 학술 업무와 학술보고서 관련 사항						
		◦ 학술단체 및 민간인과의 협력 사항	기안		○			
		◦ 학술융역 실시 및 보고서 간행	기안		○			
		◦ 조사연구 총서 간행	기안		○			
		19. 유물의 수집, 대여, 구입, 기증, 기탁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20. 충효테마공원 유지보수	기안		○			
		21. 예천박물관 소장 유물 국가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사 회 복지과	북 지 기 획	1. 지역사회보장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기안			○		
		○ 지역사회보장계획 확정	기안					○
		○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조정	기안			○		
		○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확정	기안					○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및 평가	기안			○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기안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의결	기안				○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	기안		○			
		4. 재해구호						
		○ 재해구호계획 수립	기안			○		
		○ 재해구호물자 관리	기안		○			
		○ 재해의연금품 배분 및 관리	기안		○			
		5. 보훈						
		○ 보훈단체 운영 지도	기안		○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	기안		○			
		○ 보훈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등)	기안		○			
		○ 현충일 등 보훈행사 계획	기안					○
		○ 현충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기안		○			
		6. 의사상자						
		○ 의사상자 일반	기안		○			
	희 망 복 지 지 원	1. 민·관협력 체계 구축						
		○ 민·관 협력기구 구성	기안				○	
		○ 민·관 협력기구 운영	기안		○			
		○ 공공 및 민간협력, 서비스 조정	기안		○			
		2. 읍면 맞춤형 복지						
		○ 찾아가는 복지계획 수립	기안		○			
		○ 읍면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 및 관리	기안		○			
		3.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 자원개발 계획 수립	기안			○		
		○ 자원개발 실행 및 관리	기안		○			
		○ 지역자원현황 관리	기안		○			
		○ 지역자원 안내서 제작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사 회 복지과	희 망 복 지 지 원	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계획수립	기안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관지정 및 관리	기안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기안		○			
		5. 이웃돕기 추진						
		◦ 성금모금 계획수립	기안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지원 신청	기안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추진	기안		○			
		◦ 시설위문	기안		○			
		6. 긴급지원사업						
		◦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선정, 통보	기안		○			
		◦ 긴급지원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기안		○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기안				○	
		7.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 자원봉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안				○	
		◦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 자원봉사단체 지원	기안		○			
		◦ 봉사활동 지원	기안		○			
		◦ 자원봉사자 발굴, 교육, 배치	기안		○			
		◦ 자원봉사센터 관리	기안		○			
		8. 자활사업 추진						
		◦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 자활근로사업비 집행·정산	기안		○			
		◦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보고	기안		○			
		◦ 지역자활센터 관리	기안		○			
		9. 자립지원기금관리						
		◦ 생업자금 지원	기안		○			
		◦ 융자금 회수 관리	기안		○			
	통 합 조 사 관 리	1. 조사기획 총괄 조정		기안		○		
		2.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보장결정						
		◦ 기초생활보장 신규조사 및 보장결정(급여통지)	기안		○			
		◦ 장애인복지 신규조사	기안		○			
		◦ 노인복지 신규조사	기안		○			
		◦ 한부모가정 신규조사	기안		○			
		◦ 차상위 장애인 신규조사	기안		○			
		◦ 차상위 의료급여 신규조사 및 보장결정(급여통지)	기안		○			
		◦ 차상위 자활 신규조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사 회 복지과	통 합 조 사 관 리	3. 신규신청자 현장 조사	기안		○			
		4.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기안		○			
		5. 복지대상자 제외 시 서비스 연계의뢰	기안		○			
		6. 국민기초생활보호						
		○ 수급권자 조사 관리	기안		○			
		○ 수급자 관리 및 조사 실적보고	기안		○			
		○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기안				○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기안			○	
		7. 주거급여 관리						
		○ 주거급여 지급	기안				○	
		○ 주거급여 보장결정	기안		○			
		○ 기타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기안		○			
		8. 부랑인 관리						
		○ 부랑인 사망자 처리(통보)	기안		○			
		○ 부랑인 조사 처리	기안		○			
		○ 부랑인 구호	기안		○			
		9. 의료보호 특별회계						
		○ 대상자 책정관리	기안		○			
		○ 자격관리	기안		○			
		○ 진료 여부 확인	기안	○				
		○ 기금운영 현황보고	기안		○			
		○ 진료기관 지도 확인	기안		○			
		○ 대불금 회수 및 대불금 융자	기안		○			
		○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선정 지원	기안		○			
		○ 보호기간 연장승인	기안		○			
		○ 진료비 지급	기안				○	
		○ 지출계산서	기안		○			
		○ 세입징수액 결산서	기안		○			
		○ 의료급여심의회 운영	기안				○	
		○ 대불금 정리보류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사 회 복지과	장애인 복 지	1. 장애인 복지업무 지원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기안		○			
		◦ 장애정도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기안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기안		○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	기안		○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기안		○			
		◦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기안		○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기안		○			
		◦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지원	기안		○			
		2. 장애인일자리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배치	기안		○			
		3. 장애인바우처서비스						
		◦ 장애인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안		○			
		◦ 장애인바우처서비스 지원	기안		○			
		4.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기안				○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중단·재개·폐지	기안				○	
		◦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	기안		○			
		◦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입·퇴소 보고	기안	○				
		◦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기안		○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입·퇴사 보고	기안		○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정보변경 보고	기안	○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기안		○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기안			○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기안		○			
		5. 장애인 단체 지원						
		◦ 장애인단체 운영 지도	기안		○			
		◦ 장애인관련 행사 지원	기안		○			
		◦ 장애인단체 복지사업 지원	기안		○			
		6.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	기안			○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도·감독	기안		○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기안		○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	기안		○			
		◦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기안		○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정명령	기안				○	
		◦ 장애인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운용 계획 수립	기안				○	
		◦ 장애인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안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주 민 행복과	어르신 복 지	1. 노인복지증장기계획 수립		기안				○
		2.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설치·폐지·휴지신고	기안				○	
		○ 노인복지시설 변경 신고	기안		○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기안		○			
		○ 노인복지시설 행정처분	기안				○	
		○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입·퇴소 관리	기안	○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기안	○				
		○ 기타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업무	기안		○			
		3. 경로당 지원						
		○ 경로당 신·증축 대상지 선정	기안					○
		○ 경로당 보수 대상지 선정	기안		○			
		○ 경로당 지도 관리	기안		○			
		○ 경로당 활성화 지원	기안		○			
		4. 노인복지관 운영						
		○ 위탁자 선정 및 위탁금 결정	기안					○
		○ 노인복지관 지도 점검	기안		○			
		○ 기타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5.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 위탁자 선정 및 위탁금 결정	기안					○
		○ 운영 지원 및 지도 점검	기안		○			
		6. 노인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폐업·휴업신고	기안				○	
		○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기안		○			
		○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보고	기안	○				
		○ 장기요양기관 과태료 부과	기안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행정처분	기안				○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감독	기안		○			
		○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안		○			
		8. 노인의집 운영 관리	기안		○			
		9. 기초연금 보장결정	기안		○			
		10. 독거노인보호 사업	기안		○			
		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 추진계획 수립	기안				○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지도·감독	기안		○			
		○ 사업 참여자 선발	기안		○			
		12. 노인 관련 행사						
		○ 행사 계획 수립	기안					○
		○ 행사 지원	기안		○			
		13. 대한노인회 및 노인단체 지원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주 민 행복과	어르신 복 지	14. 노인복지기금 관리	기안		○			
		15. 장사업무						
		○ 묘지 및 장사시설 수급 계획 수립	기안					○
		○ 공설 묘지 및 장사시설 설치	기안					○
		○ 묘지 및 장사시설 설치(변경) 신고 · 허가	기안				○	
		○ 묘지 및 장사시설 지도·감독	기안		○			
		○ 장사업무 관련 행정처분	기안				○	
		○ 묘지 일제 조사 · 보고	기안				○	
		○ 장사업무 관련 보고	기안		○			
		16. 기타 노인복지 관련 일반적인 업무	기안		○			
	여 성 보 육	1. 보육정책						
		○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기안					○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 운영결과 보고	기안		○			
		○ 어린이집 종사자 경력증명서 발급	기안		○			
		○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기안		○			
		2. 어린이집 관리						
		○ 설치 및 폐지 신고	기안				○	
		○ 변경 신고	기안				○	
		○ 인가에 따른 현지조사	기안		○			
		○ 인가증 교부 및 회수	기안		○			
		○ 지도 점검	기안				○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기안				○	
		○ 영유아 보육료 지급	기안				○	
		3. 국공립 어린이집						
		○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기안					○
		○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지원	기안					○
		4. 여성복지시설 지도·감독	기안		○			
		5. 성희롱, 성폭력 상담 및 관리						
		○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	기안				○	
		○ 성희롱 교육실시	기안				○	
		○ 성폭력 상담일지 및 상담결과 조치	기안		○			
		○ 성폭력 상담소 설치, 휴지, 폐지 신고	기안				○	
		○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기안		○			
		○ 성폭력 상담소 지도·감독	기안		○			
		6.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 한부모가정 보장결정	기안		○			
		○ 한부모가정 자립학교 실시	기안		○			
		○ 아동양육비 지급	기안		○			
		○ 복지자금 대여	기안		○			
		○ 월동연료비 지급	기안		○			
		○ 자녀학비 및 학용품비 지급	기안		○			
		○ 한부모가정 아동 기능교육 실시	기안		○			
		○ 한부모가정 보호 계획 수립	기안				○	
		7.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						
		○ 일본군 위안부 실태조사	기안		○			
		○ 보호비 및 간병비 지원	기안		○			
		○ 대상자 현황관리	기안	○				
		○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안		○			
		8. 여성단체 관리						
		○ 여성단체관리 및 운영계획	기안				○	
		○ 여성단체 운영 지도	기안		○			
		○ 여성단체 활동 지원	기안		○			
		○ 지원 사업 지도·감독	기안	○				
		9. 성별영향 평가						
		○ 계획수립	기안				○	
		○ 계획추진	기안	○				
		○ 평가 보고서 작성	기안		○			
		10. 건강가정육성						
		○ 계획수립	기안				○	
		○ 계획추진	기안		○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주 민 행복과	여 성 보 육	11. 다문화가족 지원						
		○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 지원사업 지도·감독	기안	○				
		○ 이주여성 및 자녀상담 보호	기안	○				
		○ 다문화가족 현황관리	기안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기안				○	
		12. 결혼중개업						
		○ 결혼중개업 신고	기안				○	
		○ 국제·국내 결혼중개업 지도·감독	기안		○			
	아 동 청 소 년	1. 청소년 건전육성						
		○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기안				○	
		○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 운영	기안		○			
		○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실적 보고	기안	○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기안		○			
		○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기안			○		
		○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기안		○			
		○ 청소년시설 신고처리 및 시설위탁자 운영관리	기안			○		
		○ 청소년 관련 행사	기안				○	
		2. 청소년 보호						
		○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	
		○ 어려운 청소년 지원	기안				○	
		○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정비 추진 시행계획	기안		○			
		○ 청소년 선도 실적보고	기안		○			
		○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징수	기안				○	
		3. 청소년수련관 운영						
		○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계획 수립	기안			○		
		○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안		○			
		4.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안		○			
		5.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기안			○		
		○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안		○			
		6. 아동복지시설						
		○ 설치, 휴지, 폐지 신고	기안				○	
		○ 현지조사	기안		○			
		○ 신고증 교부 및 회수	기안		○			
		○ 이용아동 급식지원	기안		○			
		○ 지도 및 감독	기안		○			
		7. 지역아동센터 운영						
		○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	기안		○			
		○ 지역아동센터 시설운영 지도·감독	기안		○			
		○ 이용아동 급식지원	기안		○			
		○ 시설설립, 휴·폐업, 변경 인가신고	기안				○	
		○ 돌봄서비스 이용아동 결정 및 중지	기안		○			
		8.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관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주 민 행복과	아 동 청 소 년	9.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 관리						
		○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기안				○	
		○ 다함께 돌봄센터 폐지 · 휴지	기안				○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 관리	기안		○			
		10.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기안		○			
		○ 각종 업무일지	기안	○				
		○ 시설방호	기안		○			
		11. 아이돌봄자원사업	기안		○			
	드 림 스 타 트	1. 드림스타트 운영 및 관리						
		○ 드림스타트 종합계획 수립	기안				○	
		○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안		○			
		○ 슈퍼비전 구성 및 운영	기안		○			
		○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	기안		○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관리	기안		○			
		○ 인지·언어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기안		○			
		○ 신체·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기안		○			
		○ 정서·행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기안		○			
		○ 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기안		○			
		○ 드림스타트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기안		○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기안		○			
		2. 아동급식 지원						
		○ 결식우려아동 급식 계획 수립	기안				○	
		○ 급식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안		○			
		○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3. 취약계층 아동 지원 및 관리						
		○ 취약계층 아동관리 계획 수립	기안				○	
		○ 세부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안		○			
		○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기안		○			
		4.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	기안		○			
		5. 기타 아동복지						
		○ 어린이날 기념식 계획	기안					○
		○ 입양아동 양육수당지급	기안		○			
		○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기안				○	
		○ 실종, 가출 아동 찾기 홍보	기안		○			
		○ 아동위원 관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총 합 민원과	민 원	1.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	기안		○			
		○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기안		○			
		○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기안				○	
		○ 민원후견인지정운영	기안				○	
		2. 행정사 신고접수 및 지도·관리	기안		○			
		3.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기안		○			
		4. 주민등록 업무						
		○ 주민등록증(일괄) 발급 요청	기안		○			
		○ 주민등록 지역번호 수정 요청	기안					○
		○ 주민등록증 수령 및 교부	기안		○			
		5.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및 민원24 운영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기안		○			
		○ 민원24 총괄운영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안		○			
		6. 여권 접수·심사·교부 대행 업무	기안		○			
		7.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기안		○			
		8. 민원서류 접수 및 민원상담	기안		○			
		9. 외국인시스템(FINE) 운영 및 관리	기안		○			
		10. 민원제도 개선 및 평가	기안					○
		11. 행정정보·본인정보 공동이용	기안		○			
	지 적	1. 지적민원 업무처리						
		○ 신규등록 신청		기안			○	
		○ 등록전환 신청	기안		○			
		○ 토지(임야)분할 신청	기안		○			
		○ 토지(임야)합병 신청	기안		○			
		○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기안		○			
		○ 구획/경지/토지개발사업등의 신청	기안		○			
		○ 축척/지번/행정구역 변경 신청	기안		○			
		○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 신청	기안		○			
		○ 토지소유권정리 신청	기안	○				
		2. 지적공부의 보관 및 관리						
		○ 지적공부의 반출 및 반입		기안				○
		○ 지적공부 복구	기안		○			
		○ 지적공부 보존·관리	기안		○			
		○ 지적공부의 작성 및 재작성		기안			○	
		○ 지적기록물 전산화 및 서버운영	기안		○			
		○ 지적서고 관리	기안		○			
		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기안		○			
		○ 지적전산자료 오류정비	기안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일마감 관리	기안		○			
		○ 소유권 변동사항 정리	기안	○				
		○ 지적공부 오기정정	기안		○			
		4. 지적측량						
		○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감독		기안	○			
		○ 지적측량 수행(변경)계획서 및 측량 성과결과통지	기안		○			
		○ 지적측량검사 및 면적측정검사	기안		○			
		○ 지적측량기준점관리 및 이전신청	기안		○			
		○ 지적측량장비 운영 및 관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총 합 민원과	지 적	5. 지적공부정리						
		○ 토지이동지(지목 변경, 합병 등)조사 및 정리	기안		○			
		○ 소유권 정리	기안	○				
		○ 지적(임야)도면 전산화일 정리	기안		○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기안	○				
		○ 토지소유자 복구 등록 정리		기안				○
		○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기안		○			
		6. 지적업무일반						
		○ 지적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 운영	기안		○			
		○ 지적통계관리 및 사무정리 상황보고	기안		○			
		○ 제증명관련 수입증지 요금관리	기안		○			
		○ 지적전산자료의제공 및 정보공개결정	기안		○			
		○ G.P.S 상시관측소 관리	기안		○			
		○ 지적행정 일반업무 추진	기안		○			
		7.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 공유토지 위원회 운영	기안				○	
		○ 공유토지 특례법 일반사항	기안		○			
		○ 공유토지 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기안		○			
	토 지 관 리	1. 개별공시지가 조사						
		○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수립	기안				○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협조	기안		○			
		○ 조사 대상필지 조사	기안	○				
		○ 지가산정 및 지가현황도면 작성	기안		○			
		○ 지가검증 요청	기안		○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안				○
		○ 지가정보 제공 및 주민의견 수렴	기안		○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기안				○	
		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대상 조사 및 통보	기안		○			
		○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 접수 및 처리	기안		○			
		○ 개발부담금 산정	기안		○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기안				○	
		○ 납부연기, 분할납부 및 물납 등 처리	기안				○	
		3. 부동산중개업 업무						
		○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기안		○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기안		○			
		○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재개업신고 등	기안		○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기안		○			
		○ 행정처분(등록취소, 고발, 영업정지 등)		기안			○	
		○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처리		기안			○	
		○ 부동산중개업 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4.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업무						
		○ 부동산 실거래 민원 접수 및 처리	기안		○			
		○ 부동산 실거래가격 검증 및 조사	기안		○			
		○ 신고제도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처분	기안				○	
		○ 부동산 실거래 자료제공 및 통계업무	기안		○			
		○ 부동산 실거래 신고업무 일반	기안		○			
		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운영						
		○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기안	○				
		○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철 송부	기안		○			
		○ 과태료 처분 대상 조사	기안		○			
		○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6.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추진계획	기안					○
		○ 자료정비 (연속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기안		○			
		○ 자료제공 및 통계업무	기안		○			
		○ 서버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관리	기안		○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총 합 민원과	토 지 관 리	7. 토지거래 계약 허가 업무						
		◦ 토지거래동향 및 투기예고지표 작성	기안		○			
		◦ 허가(신고)지역 지정 및 해제		기안			○	
		◦ 토지거래 계약 처리	기안				○	
		◦ 사후 이용 실태 조사	기안		○			
		◦ 토지거래 협의	기안		○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안				○	
		8. 부동산실명제 운영						
		◦ 실명등기의무 위반 조사	기안		○			
		◦ 장기 미등기 부동산 조사	기안		○			
		◦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안				○	
		9. 외국인 토지관리						
		◦ 외국인 토지관리 일반	기안		○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	기안				○	
		◦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대상	기안		○			
		◦ 외국인 토지법 위반자 처리	기안				○	
		10.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 지리정보시스템 종합계획 수립		기안			○	
		◦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운영	기안		○			
		11.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 지하시설물 종합계획 수립	기안				○	
		◦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을 통한 지하시설물 관리	기안		○			
		◦ 지하시설물 기준점 설치 및 관리	기안		○			
		◦ 지하시설물 측량성과 의뢰	기안		○			
		◦ 지하시설물 측량성과 검사요청	기안		○			
		◦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유지보수	기안		○			
	지 적 재 조사	1.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기안					○
		◦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기안				○	
		◦ 지적경계결정위원회 운영	기안				○	
		◦ 지적재조사측량·면적 검사 및 홍보	기안		○			
		◦ 지적재조사 주민동의서	기안		○			
		◦ 지적재조사 조정금 운영관리	기안		○			
		◦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 지적재조사 지적공부 작성	기안		○			
		◦ 지적재조사 등기 촉탁	기안		○			
		2.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						
		◦ 세계측지계 변환 실시계획 수립	기안				○	
		◦ 세계측지계 변환 일반사항	기안		○			
		◦ 세계측지계 변환 기준점 측량·검사	기안		○			
		3.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 국토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기안		○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변경	기안		○			
		◦ 조상 땅 찾아주기	기안		○			
		◦ 재산조회(세무, 공직자재산등록, 체납관리 등)	기안		○			
		4. 도로명주소업무추진 계획 및 수립						
		◦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기안	○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변경		기안				○
		◦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총 합 민원과	지 적 재 조사	5. 도로명주소운영 및 관리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기안		○			
		○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기안		○			
		○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기안		○			
		○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기안		○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기안		○			
		○ 도로명주소 정보관리 및 자료제공	기안		○			
		○ 국가지점번호 및 기초구역 관리	기안		○			
		○ 기타 도로명주소 관련 일반사항	기안		○			
		6. 도로명주소 관련 주민 홍보						
		○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기안		○			
		○ 도로명주소의 법적전환에 대한 홍보	기안		○			
	위 생	1. 위생업소 일제단속계획 및 각종기획		기안	○			
		2. 위생업소 행정처분						
		○ 경고, 개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기안		○			
		○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기안			○		
		○ 영업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	기안				○	
		○ 무허가 무신고 업소 고발	기안			○		
		3. 우수업소·모범업소 지정		기안			○	
		4. 위생업소 출입점검 계획	기안		○			
		5.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기안		○			
		6. 위생교육	기안		○			
		7. 식중독 예방	기안		○			
		8. 부정불량식품 단속처리	기안		○			
		9. 각종 식품, 검체수거 감사의뢰	기안		○			
		10. 각종대장 및 수불부 정리	기안	○				
		11. 위생업소 허가·등록·신고 수리	기안		○			
		12. 위생업소 신고에 따른 시설조사	기안	○				
		13. 위생업소 관련 폐업 신고	기안	○				
		14. 식품진흥기금 관리						
		○ 용자대상자선정 위원회 개최	기안				○	
		○ 용자업소 사후관리 지도	기안		○			
		15.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운영	기안		○			
		16.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기안		○			
		17. 조리사·영양사,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 및 재교부	기안		○			
		18.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기안		○			
		19.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계약	기안				○	
		20.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지 역 경제과	새마을 경 제	1. 새마을지도자 육성 및 관리						
		○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기안		○			
		○ 새마을지도자 관리	기안			○		
		2. 새마을운동 홍보	기안		○			
		3. 국민운동단체 육성 및 지원	기안			○		
		4. 새마을교육						
		○ 새마을교육(중앙, 도) 계획 수립	기안		○			
		○ 새마을교육대상자 차출 및 보고	기안		○			
		5. 새마을문고 육성	기안			○		
		6. 새마을금고 운영지도	기안		○			
		7. 과학 기술 진흥						
		○ 과학기술관련시설 지원	기안					○
		○ 과학기술단체 행사지원	기안				○	
		○ 과학기술진흥 업무	기안		○			
		8. 전통시장 관리						
		○ 전통시장 일반	기안		○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계획	기안					○
		○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기안					○
		○ 전통시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기안		○			
		9. 부정경쟁 방지						
		○ 위조상품 합동단속 계획 수립	기안				○	
		○ 위조상품 피해예방 교육	기안		○			
		10. 지역경제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기안				○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기안		○			
		11. 소상공인 육성						
		○ 예천사랑 상품권 운영	기안					○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기안				○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기안		○			
		12. 대규모점포 관리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기안					○
		○ 대규모점포 폐업신고	기안		○			
		○ 대규모점포 변경신청	기안		○			
		13. 지역물가관리						
		○ 물가관리종합계획	기안				○	
		○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	기안			○		
		○ 물가합동 지도단속	기안		○			
		○ 시장물가 조사	기안		○			
		○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기안				○	
		○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운영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지 역 경 제 과	새마을 경 제	14. 소비자 보호						
		○ 소비자 상담 고발 접수 처리	기안		○			
		○ 소비자 상담 고발 처리 실적 보고	기안		○			
		○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기안			○		
		○ 공산품 품질 관리 및 단속	기안		○			
		○ 시장관리 및 지도	기안		○			
		○ 원산지 표시 여부 지도 단속	기안		○			
		15. 계량 행정						
		○ 계량증명업 등 등록	기안				○	
		○ 계량증명업 등 변경등록	기안		○			
		○ 계량기 정기검사	기안		○			
		○ 기타 계량행정 업무	기안		○			
		16. 담배판매업						
		○ 담배판매업 신고	기안		○			
		○ 담배판매업 변경신고	기안		○			
		○ 담배판매업 폐업신고	기안		○			
		○ 담배사업법 행정처분	기안				○	
		17. 특수판매업						
		○ 방문판매업 신고	기안		○			
		○ 방문판매업 폐업신고	기안		○			
		○ 통신판매업 신고	기안		○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기안		○			
		18. 대부업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폐업, 변경	기안		○			
		○ 대부업 대부중개업 지도·감독	기안		○			
		○ 대부업 대부중개업 행정처분	기안				○	
		19. 복권법 위법행위 지도단속	기안		○			
	일자리	1. 일자리창출(공시제)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2. 공공근로사업						
		○ 공공근로사업계획수립	기안			○		
		○ 공공근로사업추진	기안		○			
		3.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업무						
		○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종합계획 수립	기안			○		
		○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기안		○			
		4. 취업지원 및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 취업지원 및 실업대책 종합계획 수립	기안			○		
		○ 취업지원 및 실업대책 사업 추진	기안		○			
		5.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기안		○			
		6.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기안			○		
		○ 사회적기업 지원 및 지도·감독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지 역 경 제 과	일 자리	7. 마을기업 육성 지원						
		○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 마을기업 지원 및 지도감독	기안		○			
		8. 협동조합 육성 지원						
		○ 협동조합 설립 및 변경 신고수리	기안			○		
		○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해산신고수리	기안		○			
		○ 협동조합 지도·점검	기안		○			
		9. 직업소개소관리업무						
		○ 직업소개소 신규 및 변경 등록 승인	기안			○		
		○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기안		○			
		○ 직업안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안				○	
		10. 청년일자리 사업(도 청년정책과 소관 제외)	기안		○			
		11. 기타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업무	기안		○			
	투 자 유 치	1. 투자유치종합계획수립		기안				○
		2. 지방기업 증설 투자 지원 업무	기안					○
		3.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홍보, 유치, 협약, 협의회)		기안				○
		4. 투자유치 기업 사후관리(애로상담, 고충처리)	기안		○			
		5. 중소기업 지원						
		○ 운전자금 융자 추천 및 이차보전 지급	기안		○			
		○ 중소기업지원시책 보고	기안		○			
		6. 공장설립 및 등록관리						
		○ 창업 및 공장설립 승인	기안			○		
		○ 창업 및 공장설립 승인 변경 승인	기안		○			
		○ 공장등록 증명	기안	○				
		○ 제조업체 실태조사	기안		○			
		7.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기안				○	
		○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신청 및 지원	기안		○			
		○ 고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기안		○			
		8.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 신고	기안			○		
		○ 노동조합 변경, 해산 신고	기안		○			
		○ 노동 쟁의신고	기안					○
		○ 노동 쟁의 조정 협의	기안				○	
		○ 노임체불 업체 조사 지도	기안		○			
		○ 단체협약 관리	기안		○			
		9. 농공단지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성		기안				○
		10. 농공단지 지원 관리						
		○ 농공단지 실태조사 및 육성지도	기안		○			
		○ 농공단지 입주계약 승인	기안			○		
		○ 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승인	기안		○			
		11. 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성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지 역 경 제 과	에 너 지 관 리	1. 전기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 제2종 전기사업면허 실태조사	기안		○			
		○ 제2종 전기공사업 지도·감독	기안		○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촉구	기안		○			
		○ 전기부적합시설 개선촉구	기안		○			
		○ 전기사업 허가	기안			○		
		○ 전기사업 변경허가	기안		○			
		○ 전기사업 양수인가	기안			○		
		○ 전기사업 공사계획 신고	기안		○			
		○ 전기사업 사업개시 신고	기안		○			
		○ 행정처분	기안				○	
		2. 가스사업 허가 및 관리						
		○ 가스사업 허가	기안			○		
		○ 가스사업 변경허가	기안			○		
		○ 행정처분	기안				○	
		○ 기타 가스안전관리 업무	기안		○			
		3. 석유판매업 등록 및 관리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기안			○		
		○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등록	기안			○		
		○ 석유판매업 신고	기안		○			
		○ 석유판매업 변경신고	기안		○			
		○ 행정처분	기안				○	
		○ 기타 석유판매업 관리 업무	기안		○			
		4. 석탄가공업 등록 및 관리						
		○ 석탄가공업 등록	기안			○		
		○ 석탄가공업 변경등록	기안			○		
		○ 기타 석탄가공업 관리 업무	기안		○			
		5. 광산 지도관리						
		○ 광업권 등록 협의	기안		○			
		○ 기타 광산 관리 업무	기안		○			
		6. 에너지 업무추진						
		○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기안			○		
		○ 에너지 절약 계획 추진	기안		○			
		7. 취약계층 에너지 관련 사업	기안		○			
		8. 농촌가로등 설치 및 보수 업무	기안		○			
		9. 가로등 시설물 등록 및 해지	기안		○			
		10. 가로등 수리반 운영	기안		○			
		11. 가로등 작업일지	기안	○				
		1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안		○			
		13.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기안		○			
		14.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농정과	농정관리	1. 농업관련 계획 수립 및 심의회, 공청회 대상자 선정 추천		기안				○
		2. 농업·농촌 발전 계획						
		○ 계획수립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기안		○			
		○ 계획 수립	기안					○
		○ 계획 심의 확정	기안					○
		○ 연차 보고서 작성	기안			○		
		3.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 사업계획 홍보 및 공모접수	기안		○			
		○ 사업대상자 선정심의	기안		○			
		○ 사업대상자 선정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 사업사후관리	기안		○			
		4. 진흥지역 관리						
		○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기안				○	
		○ 농업진흥지역 관리	기안		○			
		5. 농지이용계획 수립						
		○ 농지이용계획 입안	기안		○			
		○ 수립상황 보고	기안		○			
		6. 농지이용 실태조사						
		○ 실태조사 계획 수립	기안		○			
		○ 이용 실태 조사 지도	기안		○			
		○ 처분대상 농지 선정	기안		○			
		○ 이행강제금 부과	기안		○			
		7.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육성						
		○ 육성사업 계획 수립	기안		○			
		○ 육성대상자 신청접수 및 조사	기안		○			
		○ 육성대상자 선정심의	기안		○			
		○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관리	기안		○			
		8.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도	기안		○			
		○ 지원자금 배정	기안		○			
		9. 농림사업 시행						
		○ 농림사업 예산신청 자료 수집	기안	○				
		○ 농림사업 예산신청 심의	기안			○		
		○ 농림사업 예산신청 상황보고	기안			○		
		○ 농림사업 이행실태 파악	기안		○			
		○ 농림사업 평가	기안		○			
		1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운영						
		○ 심의회 구성	기안				○	
		○ 심의회 운영	기안				○	
		11. 농촌특산단지육성						
		○ 육성사업 계획 수립	기안					○
		○ 육성대상자 선정	기안					○
		○ 농촌특산단지 사후관리	기안		○			
		○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기안		○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기안		○			
		12. 농어촌 진흥기금						
		○ 자금지원 계획수립		기안		○		
		○ 지원대상자 조사 지도	기안		○			
		○ 지원대상자 지도, 사후관리	기안		○			
		13. 농업인 정보화 사업						
		○ 계획 수립	기안			○		
		○ 정보화 교육 및 지원	기안		○			
		14. 농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 지원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 대상자 선정	기안			○		
		○ 지원에 대한 지도·관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농정과	농업	15. 농정일반						
		○ 농정시책 홍보	기안		○			
		○ 농정시책 자료 수집	기안	○				
		○ 농업관련 단체 운영지원	기안			○		
		1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 계획 수립	기안			○		
		17. 농지전용						
		○ 농지전용 허가	기안		○			
		○ 농지전용 협의	기안		○			
		○ 농지전용 변경허가(협의)	기안		○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안		○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기안		○			
		18.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종합계획						
		○ 기본 계획수립		기안				○
		○ 일반 사항	기안		○			
		19. 농업6차산업 육성지원						
		○ 사업계획 홍보 및 공모접수	기안		○			
		○ 사업대상자 선정심의	기안		○			
		○ 사업대상자 선정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 사업사후관리	기안		○			
		20. 농업식품산업육성						
		○ 사업계획 수립	기안			○		
		○ 사업대상자 선정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 사업사후관리	기안		○			
		21.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 사업계획 홍보 및 신청접수	기안		○			
		○ 사업대상자 선정심의 및 대상자 추천 및 선정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22.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 사업계획 홍보 및 신청접수	기안		○			
		○ 사업대상자 선정심의 및 대상자 추천 및 선정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 사업사후관리	기안		○			
		23.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관리						
		○ 사업계획 홍보 및 신청접수	기안		○			
		○ 사업대상자 선정심의 및 대상자 추천 및 선정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 사업사후관리	기안		○			
		24. 청년농부 육성지원(2030리더창업농자금)사업						
		○ 사업계획 홍보 및 신청접수	기안		○			
		○ 사업대상자 선정심의 및 대상자 추천 및 선정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 사업사후관리	기안		○			
		25. WTO, FTA관련 농업 대책	기안			○		
		26. 농업보조사업 시스템 관리	기안		○			
		27. 농업인 정보지 보급	기안		○			
		28. 귀농인 상담 및 귀농지원 사업 홍보	기안		○			
		29. 귀농창업농업 및 주택구입지원(국비융자)관리						
		○ 사업대상자 선정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30. 귀농정착지원(도비)사업 관리						
		○ 사업대상자 선정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 사업사후관리	기안		○			
		31. 귀농지원센터(귀농인의집) 조성 및 관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농정과	농정관리	32. 귀농박람회 참가 및 귀농홍보						
		○ 사업계획 수립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33. 귀농 맞춤형 코디네이션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 사업사후관리	기안		○			
		34.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 사업사후관리	기안		○			
		35.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관리						
		○ 사업대상자 선정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 사업사후관리	기안		○			
		36. 귀농인 이웃주민 화합행사 관리						
		○ 사업대상자 선정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 사업사후관리	기안		○			
		37. 귀농인 연합회 관리 및 육성지원						
		○ 사업계획 수립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 사업사후관리	기안		○			
		38. 귀농인 한마당 화합행사관리						
		○ 사업대상자 선정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 사업사후관리	기안		○			
		39. 도시민 초청 귀농활성화 팜투어						
		○ 사업계획 수립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 사업사후관리	기안		○			
		40. 농어촌 빈집수리비 지원 관리						
		○ 사업대상자 선정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 사업사후관리	기안		○			
		41. 귀농인 여론수렴 및 시책개발	기안		○			
		42. 귀농인 홈페이지 관리	기안		○			
		43.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도비용자사업) 관리						
		○ 사업대상자 선정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식량정책	1. 각종 보조사업						
		○ 대상자 선정	기안			○		
		2. 식량작물 생산						
		○ 식량작물 보조사업 계획 수립	기안			○		
		○ 식량작물 종자공급	기안		○			
		○ 식량작물 파종(이앙)	기안		○			
		○ 식량작물 실 수확량	기안		○			
		○ 영농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 유희농지 파종지도	기안		○			
		○ 벼 육묘공장	기안		○			
		○ 휴경기 생산화사업	기안		○			
		○ 토종곡물 발굴육성	기안		○			
		○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	기안		○			
		3. 농작물재해						
		○ 농작물 재해대책 추진	기안				○	
		○ 피해지원 계획수립	기안			○		
		○ 농작물재해 피해조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농정과	식량정책	4. 공공비축 미곡 매입 및 정산						
		○ 약정체결	기안		○			
		○ 매입일보, 월보	기안		○			
		○ 매입정산	기안		○			
		○ 매입관계 일반	기안		○			
		5. 양곡가공						
		○ 양곡가공 도정수율 관계	기안		○			
		○ 가공지시	기안		○			
		○ 가공수불 청산관계	기안		○			
		6. 양곡포장재 및 부산물						
		○ 포장재 수불	기안		○			
		○ 포장재 수송	기안		○			
		○ 포장재 및 부산물 판매	기안		○			
		7. 미곡종합처리장						
		○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기안					○
		○ 시설 변동사항	기안		○			
		○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기안		○			
		8. 양곡관리 특별회계						
		○ 양곡관리 특별회계 보관 상황보고	기안		○			
		○ 양곡관리 특별회계 조작비 지급	기안		○			
		○ 양곡관리 특별회계 조작비 요구	기안		○			
		○ 양곡 회계직 임면사항	기안				○	
		9. 양곡가공업						
		○ 양곡가공업 등록, 신고	기안		○			
		○ 양곡가공업 지도 및 단속	기안		○			
		○ 양곡가공업 신고증 재교부	기안		○			
		○ 양곡가공업 및 매매업자 행정처분	기안				○	
		10. 각종 지시서 발급	기안		○			
		11. 정부양곡 매출						
		○ 학교급식용 쌀 매출	기안		○			
		○ 군량곡 매출	기안		○			
		○ 가공용 쌀 매출	기안		○			
		12. 정부양곡 보관창고						
		○ 창고계약 및 해지	기안		○			
		○ 양곡보관 관리지도 및 감독	기안		○			
		○ 정부양곡 재고조사	기안		○			
		○ 정부양곡 입·출고 및 수송지시	기안		○			
		13. 정부양곡 공매						
		○ 공매수량 배정	기안		○			
		○ 농협 인수도	기안		○			
		14. 양곡일반						
		○ 양곡관리 특별회계 세입징수 보고	기안				○	
		○ 양곡조작 실적보고	기안		○			
		○ 정부양곡 훈증소득 실시	기안		○			
		○ 가공식품업체 정부미 공급업체 지정취소	기안				○	
		15. 농약 비료						
		○ 비료 생산업 생산 및 관리	기안		○			
		○ 농약판매업 신고 및 관리	기안		○			
		○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기안		○			
		16. 농촌일손돕기 지원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농정과	친환경	1. 각종 보조사업						
		○ 대상자선정	기안			○		
		○ 지원사업 자금배정	기안		○			
		2. 친환경농산물 생산						
		○ 친환경농산물생산 보조지원 계획수립	기안			○		
		○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기안		○			
		○ 유기농업지속직불제	기안		○			
		○ 친환경인증관리	기안		○			
		3. 직접직불제						
		○ 공익증진직접직불제	기안		○			
		○ 경관보전직불사업	기안		○			
		4.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기안			○		
		○ 친환경농자재 공급	기안		○			
		○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기안		○			
		○ 우수농산물 판로확대 지도	기안		○			
		○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	기안		○			
		○ 녹비작물종자재 지원 사업	기안		○			
		○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사후 관리	기안		○			
		5. 농기계						
		○ 지원대상자 선정	기안			○		
		○ 공급업무	기안		○			
		○ 농기계 보유량 조사	기안		○			
		○ 농기계 면세유	기안		○			
		○ 산업기능요원 선정관리	기안		○			
		○ 농기계사후봉사업소 지정관리	기안		○			
	유통 마케팅	1. 농산물유통사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기안				○
		2.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 사업계획 수립	기안			○		
		○ 사업대상자 선정	기안			○		
		○ 융자금 지원	기안			○		
		○ 운영실태 조사 및 홍보	기안		○			
		○ 현지 지도·점검	기안		○			
		3. 농산물 유통시설 사업						
		○ 사업계획 수립	기안			○		
		○ 사업대상자 선정	기안			○		
		○ 융자금지원	기안			○		
		○ 현지 지도·점검	기안		○			
		○ 운영실태 조사 및 홍보	기안		○			
		4. 농산물 유통 정보						
		○ 자료수집 및 제공	기안	○				
		○ 유통자료 분석	기안		○			
		5. 공선출하조직 지도·육성	기안		○			
		6. 농산물 직판사업						
		○ 농산물직판장 현지 지도·점검	기안		○			
		○ 농산물직판장 운영관리	기안		○			
		○ 농산물직판장 운영개선 계획	기안			○		
		○ 직판행사 및 지도	기안		○			
		7. 농산물 원산지 표시						
		○ 지도단속 계획수립	기안			○		
		○ 현지 지도·단속	기안		○			
		8. 농산물 안전성 조사	기안		○			
		9. GAP인증농가 확대 및 주산지 GAP 사업 추진	기안		○			
		10. 농산물 수출촉진사업						
		○ 사업계획 수립	기안			○		
		○ 수출촉진사업 지원	기안		○			
		○ 국외 박람회	기안			○		
		○ 수출홍보	기안		○			
		○ 수출동향 조사 및 정보제공	기안		○			
		11.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	기안				○	
		○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도·점검	기안		○			
		12. 농특산물 유통망 확충 및 직거래 행사	기안			○		
		13. 인터넷 쇼핑몰 “예전장터” 관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농정과	과 수 원 예	1. 고소득 전략작목 개발						
		○ 사업계획 수립		기안				○
		○ 견학 및 사업추진 지도	기안			○		
		○ 사업비 지원	기안			○		
		2. 과수경쟁력 제고						
		○ 키 낮은 사과원 조성사업	기안				○	
		○ 대묘생산사업 지도	기안		○			
		○ 사과 수출단지 조성 및 지정신청	기안			○		
		○ 지역특화사업비 지원	기안			○		
		○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기안		○			
		3. 과수일반						
		○ 과수생산 관리지도	기안	○				
		○ 면적, 생산량, 통계	기안		○			
		○ 생산예고 및 수급조절	기안		○			
		4. 채소일반						
		○ 채소작물 생산, 재배관리 지도	기안	○				
		○ 품목별 면적, 생산량 통계	기안		○			
		○ 수급조절 및 출하지도	기안		○			
		○ 품목별 주산단지 조성 및 지정신청	기안			○		
		○ 주요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기안			○		
		5. 특용작물						
		○ 특용작물 생산 및 재배관리 지도	기안	○				
		○ 약용, 유지, 전매작물 면적, 생산량통계	기안		○			
		○ 수급조절 및 출하지도	기안		○			
		○ 품목별 주산단지 조성 및 지정신청	기안			○		
		6. 잠 업						
		○ 상전조성 및 관리지도	기안	○				
		○ 양잠시설 확충 및 누에씨 공급	기안		○			
		○ 동충하초, 누에가루 등 양잠소득개발	기안			○		
		○ 상전면적, 잠업실태 통계	기안		○			
		7. 화훼일반						
		○ 화훼생산 및 재배관리 지도	기안	○				
		○ 생산량 통계	기안		○			
		○ 수급조절 및 출하지도	기안		○			
		○ 화훼단지 조성 및 수출지도	기안		○			
		8. 원예특용작물 재해						
		○ 사전점검 예방 관리지도	기안		○			
		○ 작물별, 재배시설 피해 현황조사	기안		○			
		○ 복구지원 및 재해 복구비 지원	기안			○		
		9.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기술교육						
		○ 대상자 선정	기안		○			
		○ 교육비 지원	기안		○			
		10.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 추진						
		○ 원예 특작물 지원사업 사후관리 지도	기안		○			
		○ 원예 특작물 관련 농업단체 운영지도	기안		○			
		○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사업 관련협의	기안		○			
		11.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시설 관리	기안		○			
	스마트 농 업	1. 디지털혁신농업타운 사업 추진						
		○ 사업계획 수립	기안					○
		○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 관련업무협의 및 인허가 신청	기안		○			
		○ 추진실적보고	기안		○			
		○ 사업 사후관리	기안		○			
		○ 농업타운 자료 수집	기안	○				
		2. 디지털혁신농업타운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 디지털혁신농업타운 위탁업체 선정	기안					○
		○ 디지털혁신농업타운 위탁 운영	기안			○		
		3. 신성장 농업정책 사업 발굴 육성						
		○ 사업계획 수립	기안			○		
		○ 사업대상자 선정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 사업사후관리	기안		○			
		4.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계획 수립	기안				○	
		○ 급식 지원 및 기타 운영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산 림 녹지과	산 림 경 영	1. 조림 및 숲 가꾸기						
		○ 예정지 조사 및 확정	기안		○			
		○ 사업대행 통지 및 동의 요청	기안		○			
		○ 사업실행 계획	기안		○			
		○ 묘목수급 계획	기안		○			
		○ 묘목검사(검수)원 지정	기안	○				
		○ 추진실적 보고	기안		○			
		2. 산림경영 계획						
		○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기안		○			
		○ 산림사업 신고	기안		○			
		3. 입목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 제한지역 고시	기안					○
		○ 허가	기안		○			
		○ 신고서 처리	기안		○			
		○ 입목벌채 및 목재이용실적 보고	기안		○			
		4. 산림사업용 양묘						
		○ 양묘 사업상황조사 보고	기안		○			
		○ 양묘 실태조사 보고	기안		○			
		5. 임업후계자 및 독립가 육성						
		○ 임업후계자 선발	기안		○			
		○ 독립가 선발 및 추천	기안			○		
		○ 지도 및 관리	기안		○			
		6. 목재펠릿보일러, 목재산업, 양묘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선정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 사후관리	기안		○			
		7. 산림통계						
		○ 산림기본통계 조사 및 보고	기안		○			
		○ 임산물생산통계 조사 및 보고	기안		○			
		8. 군유림 관리						
		○ 군유림 매각 계획 수립		기안				○
		○ 신규 대부 및 사용 허가	기안				○	
		○ 대부 및 사용 기간 연장	기안		○			
		○ 대부지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기안		○			
		○ 대부료(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기안		○			
		9. 임업진흥권역 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 추진실적 보고	기안		○			
		10.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관리	기안		○			
		11. 산림소득사업 및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선정	기안		○			
		○ 사업시행 및 정산	기안		○			
		○ 사후관리	기안		○			
		○ 임산물 피해	기안		○			
		12. 백두대간 보호·관리						
		○ 백두대간 보호활동 추진	기안		○			
		○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해제 일반	기안		○			
		○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	기안			○		
		13. 산림재해(산사태, 사방)						
		○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기안				○	
		○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및 점검	기안		○			
		○ 시설 피해상황 조사 및 보고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산 림 녹지과	산 림 보 호	1. 산지전용 및 채석허가 제한지역 고시	기안					○
		2. 산불예방 및 진화						
		○ 산불방지대책 수립	기안					○
		○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	기안		○			
		3. 산지전용 및 토석(토사) 채취 인·허가						
		○ 허가	기안			○		
		○ 신고 및 협의	기안		○			
		○ 협의(타 기관)	기안			○		
		○ 허가(신고)사항 변경 및 기간연장	기안		○			
		○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복구명령	기안		○			
		○ 복구대행	기안		○			
		○ 복구준공검사 및 사후관리	기안		○			
		○ 허가 및 복구상황 보고(연보)	기안		○			
		○ 산지이용구분	기안		○			
		4.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	기안		○			
		○ 산림병해충 예찰	기안		○			
		○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시행	기안		○			
		○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기안		○			
		5. 산림보호 단속 및 사법사무						
		○ 사법사무에 관한 사항	기안		○			
		○ 단속계획 수립 및 단속	기안		○			
		○ 불법 전용지 복구명령	기안		○			
		○ 산림피해 단속 상황 보고	기안		○			
		6.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 지정 및 해제	기안			○		
		○ 보호사업 시행	기안		○			
		7. 산림보호구역						
		○ 지정·해제 및 시업허가	기안			○		
		○ 시업신고 및 일반 업무	기안		○			
	국 가 공 원 지	1. 공원·녹지 종합계획 수립 시행		기안				○
		2. 도시숲 및 공원 조성·관리						
		○ 추진계획 수립	기안				○	
		○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기안		○			
		3. 가로수(도청신도시) 및 무궁화 식재·관리						
		○ 식재계획	기안		○			
		○ 사업실행 계획	기안		○			
		○ 변상금 징구 및 사후관리	기안		○			
		4. 국토공원화 사업						
		○ 소공원 조성	기안		○			
		○ 가로화단 및 꽃길 조성·관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산 림 녹지과	공 원 녹 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 점용허가	기안			○		
		○ 사후관리	기안		○			
		6. 녹지 및 공원 유지관리	기안		○			
		7. 직영양묘장 관리	기안		○			
	산 림 휴 양	1. 숲길(등산로)조성·관리						
		○ 추진계획 수립	기안			○		
		○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기안		○			
		2.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 운영계획 수립	기안			○		
		○ 시설 관리 및 운영	기안		○			
		3. 가로수 식재 및 관리(도청신도시 제외)						
		○ 식재계획	기안			○		
		○ 사업실행 계획	기안			○		
		○ 변상금 징구 및 사후관리	기안		○			
		4.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기안				○
		○ 휴양림 조성 및 관리	기안		○			
		○ 사유 휴양림 지원사업(산림서비스도우미 등)	기안		○			
		5.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기안				○
		○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기안		○			
		6.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동의	기안		○			
		○ 임도 보수·관리	기안		○			
		○ 임도시설 일반	기안		○			
		7. 산촌생태마을 관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축산과	축 산 정 책	1. 축산발전 계획 수립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기안					○
		○ 연도별 세부사항 수정보완	기안		○			
		2. 예천한우 개량 및 육성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시행·정산, 사후관리 등	기안		○			
		○ 각종 사업추진 등	기안		○			
		3.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						
		○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시행·정산, 사후관리 등	기안		○			
		○ 각종 사업추진 등	기안		○			
		4.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 사업계획시달 및 홍보	기안		○			
		○ 기타사업 추진 지도점검	기안		○			
		5. 한우, 젓소, 양돈, 양계, 양봉, 한봉 지원사업	기안		○			
		6. 축산 재해·재난 관련업무						
		○ 피해상황 조사	기안		○			
		○ 피해복구 등	기안		○			
		7. 한우경진대회	기안		○			
		8. 초지조성 인·허가 관련						
		○ 신규 초지조성	기안					○
		○ 초지전용 허가	기안			○		
		○ 기성초지 사후관리 지도점검	기안		○			
		9.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종합지원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	기안		○			
		○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기안		○			
		10. 가축인공수정 관련						
		○ 가축인공수정소 관리 및 신고업무 등	기안		○			
		○ 가축인공수정사 관리 및 면허발급 등	기안		○			
		11. 축산업 관련 업무						
		○ 축산업 등록, 허가, 변경허가 등	기안		○			
		○ 무허가축사적법화	기안		○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기안		○			
		○ 사육밀도 관리	기안		○			
		○ 경고,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정지	기안		○			
		○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기안				○	
		12. 양봉농가 등록 업무						
		○ 신규농가 등록, 등록 변경 등	기안		○			
		○ 사후관리 지도·점검	기안		○			
		13. 가축통계	기안		○			
		14. 축산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관련 업무	기안		○			
		15. 가축계열화 및 축산단지조성	기안				○	
		16. 내수면어업 관련						
		○ 내수면어업 개발	기안		○			
		○ 불법 내수면어업 지도단속	기안		○			
		○ 내수면어업 신고·허가 면허	기안		○			
		○ 어업신고 허가증 재교부	기안		○			
		17. 수산물원산지 단속	기안		○			
		18. 말산업 육성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축산과	친환경 축 산	1. 축산물유통 장기발전계획 수립	기안					○
		2. 축산물 판매업소 인허가						
		○ 영업의 신고	기안		○			
		○ 영업의 등록	기안		○			
		○ 영업의 허가	기안		○			
		○ 영업장 지도·감독	기안		○			
		3. 부정 축산물 단속						
		○ 축산물 가격조사	기안		○			
		○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기안		○			
		4. 예천한우 브랜드화 사업						
		○ 예천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선정, 사업시행 정산, 사후관리 등	기안			○		
		○ 예천한우 취급전문점 지정	기안			○		
		○ 예천한우 취급전문점 사후관리	기안		○			
		5. 축산물 유통일반						
		○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기안				○	
		○ 원유수급 관리	기안		○			
		6. 식육업소 행정처분						
		○ 경고, 과대료, 시정명령, 영업정지	기안		○			
		○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	기안				○	
		7. 축산물이력제 관련 업무						
		○ 사업계획 수립시달	기안		○			
		○ 사업비 배정 집행	기안		○			
		8. 학교우유 급식사업						
		○ 사업계획 수립 시달	기안		○			
		○ 사업추진 지도·점검	기안		○			
		○ 사업비 배정 집행	기안		○			
		9. 동물복지대책 추진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 신고 및 접수(공고)	기안		○			
		○ 위탁관리 및 분양	기안		○			
		○ 지도점검	기안		○			
		○ 반려동물 관련 영업 등록 허가	기안		○			
		10. 축산분뇨 종합대책 추진						
		○ 퇴비부숙도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기안		○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기안		○			
		○ 축분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추진	기안		○			
		11. 축산물 소비행사	기안				○	
		12. 친환경축산사업						
		○ 사업계획 수립	기안				○	
		○ 사업비 집행	기안		○			
		○ 사업추진 지도·점검	기안		○			
	축 산 방 역	1. 가축방역사업						
		○ 사업계획 수립 시달	기안			○		
		○ 사업추진 지도점검	기안		○			
		○ 사업비 배정집행	기안		○			
		2. 가축전염병예방사업						
		○ 계획 수립 시달	기안				○	
		○ 추진 지도·점검	기안		○			
		○ 가축전염병 보조지원	기안		○			
		○ 가축매몰지 관리	기안		○			
		○ 거점소독시설 운영 관리	기안		○			
		○ 공동방제단 운영 관리	기안		○			
		3. 동물병원 및 동물용 의약품 관련 업무						
		○ 개설신고 및 허가	기안		○			
		○ 신고(허가)사항 변경	기안		○			
		○ 지도점검	기안		○			
		4. 공수의 관련 업무						
		○ 위촉 및 해촉	기안					○
		○ 지도점검	기안		○			
		5. 축산차량등록제 업무	기안		○			
		6. 축산농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기안		○			
		7.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농 촌 활 력 과	농 촌 활 력	1. 농촌협약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계획		기안				○
		2. 농촌공간정비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안				○
		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관한 사항(농어촌형)		기안				○
		4. 신활력플러스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안		○		
		5. 역량강화교육 및 행정에 관한 사항	기안		○			
		6.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간지원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7.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농촌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8. 농촌협약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9.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기안			○		
		10.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농 촌 개 발	1.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사업성검토 및 총괄 조정관리(예산편성)	기안					○
		○ 예비계획 수립	기안				○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기안			○		
		○ 사업시행보고	기안			○		
		○ 성과보고	기안		○			
		○ 기초계획지원단 운영 및 구성	기안		○			
		2.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3.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4. 생활환경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농 업 기 반	5.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6. 복지회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 예산편성 및 관리	기안		○			
		○ 개발대상지구 선정	기안			○		
		○ 사업 시행 및 준공검사	기안			○		
		○ 환지·사업비 관리	기안			○		
		2. 개간						
		○ 개간대상지 선정	기안			○		
		○ 시행계획 수립	기안			○		
		○ 사업 시행계획 승인	기안		○			
		○ 준공검사	기안		○			
		3. 국유재산관리(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용도폐지	기안			○		
		○ 사용허가	기안		○			
		4. 농업생산 기반시설 수해대책 및 복구	기안			○		
		5. 기계화 경작로 및 밭기반정비 사업 시행	기안			○		
		6.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	기안		○			
		7. 수리계 승인 및 운영경비 보조금 지원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건 설 교통과	건 설 관 리	1. 국도·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 감정의뢰	기안		○			
		○ 보상금 사정 및 지급	기안			○		
		○ 현장조사	기안	○				
		2. 국도 건설공사 수탁보상						
		○ 보상금 사정 및 지급	기안			○		
		○ 편입용지 감정의뢰	기안		○			
		3.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 이전등록 및 신규등록	기안		○			
		○ 시정명령 및 지시	기안		○			
		○ 행정처분	기안				○	
		○ 기재사항 변경 신고	기안		○			
		○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기안	○				
		○ 실태점검 조사	기안		○			
		4. 건설기계 등록관리						
		○ 등록이전 및 신규 등록	기안		○			
		○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안		○			
		○ 점검 및 검사관리	기안		○			
		○ 등록말소	기안		○			
		○ 저당권·압류	기안		○			
		○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관리·점검	기안		○			
		○ 건설기계 행정처분	기안				○	
		○ 실태점검 조사	기안		○			
		5.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관리						
		○ 면허증 (재)발급	기안		○			
		○ 정기 적성검사	기안		○			
		○ 안전교육 안내	기안		○			
		6. 접도구역 관리	기안		○			
		7. 국유재산(국토교통부 소관 도로) 관리						
		○ 사용허가	기안		○			
		○ 용도폐지	기안			○		
		○ 행정처분	기안				○	
		8. 도로굴착심의회 운영	기안			○		
		9. 도로점용허가(위임국도 59호선)	기안		○			
		10. 공유재산(도로철도과 소관 도로) 관리						
		○ 사용허가	기안		○			
		○ 용도폐지	기안		○			
		○ 행정처분	기안				○	
		○ 실태조사	기안		○			
		11. 국가기준점 조사	기안		○			
		12. 지명위원회 운영	기안				○	
	지 역 개 발	1. 도계정비 사업						
		○ 도계정비사업 시행	기안		○			
		○ 추진실적 보고 등	기안		○			
		2. 주민숙원사업 추진						
		○ 주요사업계획 수립	기안					○
		○ 도비보조사업 시행	기안		○			
		3.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건 설 교통과	도 로	1. 도로공사 지도·감독	기안		○			
		2. 도로사업 설계	기안		○			
		3. 도로공사 편입토지 보상	기안			○		
		4.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						
		○ 중장기 및 연도별 정비계획수립		기안				○
		○ 노선변경 및 인가	기안				○	
		○ 도로공사 예정지 공고	기안			○		
		5. 도로 유지보수						
		○ 유지보수 계획 수립	기안			○		
		○ 유지관리 및 보수	기안		○			
		○ 과적차량 단속	기안		○			
		○ 도로교통량 조사	기안		○			
		○ 과속방지턱 시설조사	기안		○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기안		○			
		6. 교량관리						
		○ 유지보수 계획 수립	기안			○		
		○ 위험교량 안전진단	기안		○			
		○ 교량 안전점검	기안		○			
		○ 차량통행 제한	기안				○	
		7. 도로 표지판 관리						
		○ 중장기 계획 수립	기안			○		
		○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기안		○			
		8. 사도개설허가	기안				○	
		9. 도로 진·출입 연결허가	기안			○		
		10.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기안			○		
		11. 수로원 및 중기관리						
		○ 중기 관리계획	기안	○				
		○ 수로원 작업일지	기안	○				
		○ 중기 작업일지	기안	○				
		○ 중기 고장수리대장	기안	○				
		○ 중기 유류수불부	기안	○				
		○ 긴급복구용 자재 수불부	기안	○				
		12.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안			○		
		13. 노인보호구역 지정	기안			○		
	교 통 행 정	1. 교통행정 종합계획						
		○ 대중교통 종합계획	기안				○	
		○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기안			○		
		○ 차량동원 계획	기안			○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기안				○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 면허 인가·취소	기안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변경 신고수리	기안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휴지·폐지 신고수리	기안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기안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 수리	기안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령연장 신고수리	기안		○			
		○ 지도 및 단속	기안		○			
		○ 행정처분	기안				○	
		○ 농촌버스 비수익·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기안		○			
		○ 자동차10부제 운영 실적보고	기안		○			
		○ 공영버스 위탁운영	기안				○	
		○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건 설 교통과	교 통 행 정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기안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기안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시·휴지·폐지 신고수리	기안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수리	기안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기안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 수리	기안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감차조치	기안				○	
		○ 지도 및 단속	기안		○			
		○ 행정처분	기안				○	
		○ 수송실적 보고	기안		○			
		4. 여객터미널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인가·취소	기안					○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 및 일반사항	기안				○	
		○ 여객자동차터미널 휴업·폐업 신고수리	기안		○			
		○ 여객자동차터미널 양도·양수 신고수리	기안				○	
		○ 여객자동차터미널 상속신고 수리	기안				○	
		5. 자동차 관리사업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안		○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 신고수리	기안		○			
		○ 자동차관리사업 개시·휴지·폐지 신고수리	기안		○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기안		○			
		○ 자동차관리사업 상속신고 수리	기안		○			
		○ 업체 지도 및 단속	기안		○			
		○ 행정처분	기안				○	
		6. 이륜자동차에 관한 업무						
		○ 이륜자동차 정비명령(예천읍)	기안	○				
		○ 이륜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예천읍)	기안	○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및 증명(예천읍)	기안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예천읍)	기안	○				
		○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예천읍)	기안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예천읍)	기안	○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예천읍)	기안	○				
		○ 이륜자동차 대장 비치관리(예천읍)	기안	○				
		○ 이륜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예천읍)	기안	○				
		○ 이륜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건 설 교통과	교 통 행 정	7.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업무						
		◦ 자동차 정기검사일자 안내	기안		○			
		◦ 검사 유효기간 경과 통지	기안		○			
		◦ 행정처분	기안			○		
		◦ 체납차량 압류등록	기안		○			
		◦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소 위탁업무 처리상황 보고	기안		○			
		◦ 자동차 저당설정 및 말소등록	기안		○			
		8. 자동차(관리법,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부과 징수						
		◦ 미가입차 가입 청문 및 촉구(재촉구)	기안	○				
		◦ 체납차량 압류등록 및 행정처분	기안			○		
		◦ 과태료처분현황 보고	기안		○			
		◦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단속(사건송치)	기안		○			
	교 통 관 리	1. 교통안전						
		◦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안			○		
		◦ 교통안전실적 보고	기안		○			
		◦ 교통안전 지도·점검	기안		○			
		2.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 교통안전표시판 신설 및 보수	기안		○			
		◦ 신호기 신설 및 보수	기안		○			
		◦ 노면표지 도색	기안		○			
		3. 교통사고						
		◦ 중대교통사고 보고		기안			○	
		◦ 행정처분	기안				○	
		◦ 교통사고관리대장	기안	○				
		4. 버스승강장 정비	기안		○			
		5. 불법주정차 단속						
		◦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계획 수립	기안			○		
		◦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실시	기안		○			
		◦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6. 주차장						
		◦ 노상유료주차장 위탁 운영	기안					○
		◦ 노상유료주차장 관리	기안		○			
		◦ 주차장 관리	기안		○			
		7. 무단방치차량 단속 처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안 전 재난과	안 전 정 책	1.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기안			○	
		2. 사회재난관리						
		○ 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사회재난) 구성운영		기안				○
		○ 재난단계·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	기안				○	
		3.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집행계획	기안					○
		○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안		○			
		○ 기금운용 심의회 운영	기안				○	
		4.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기관간 협조 지원체계 구축	기안			○		
		○ 재난단계·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	기안				○	
		5.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보급	기안			○		
		6.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시책법 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7.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및 해제 고시	기안				○	
		○ 재난위험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8. 재해위험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안		○			
		9.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 다중이용시설 등)	기안		○			
		10. 물놀이 안전관리	기안		○			
		11. 수상레저업 관리	기안		○			
		12. 재해배상책임보험 관리	기안		○			
		13. 안전한국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	기안					○
		14. 안전보안관 관리	기안		○			
		15.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수립	기안		○			
		16. 재난관리자원 관리	기안		○			
		17. 전시 민방위계획 수립	기안					○
		18. 평시 민방위계획 수립	기안				○	
		19.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 을지연습 세부실시계획 수립		기안			○	
		○ 을지연습 근무조 편성	기안			○		
		○ 기타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기안			○		
		20.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계획 수립		기안		○		
		21.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일제 정비	기안			○		
		○ 민방위대개편, 해제 명령에 관한 통합	기안		○			
		○ 통합·연합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2. 시범민방위대 운영						
		○ 시범민방위대 지정	기안		○			
		○ 시범민방위대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23. 민방위대 준비명령 · 집행						
		○ 민방위대 준비명령	기안				○	
		○ 민방위대 준비명령 이행 기간 연장	기안		○			
		○ 민방위대준비명령 이행 독촉 및 고발	기안				○	
		24. 민방위대 검열 및 결과보고	기안		○			
		25. 민방위대 홍보	기안		○			
		26.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 인력동원실시계획 수립		기안				○
		○ 인력동원자원 조사계획 수립	기안			○		
		○ 중점관리대상자 지정	기안			○		
		○ 인력훈련 출석 불능 신고서 수리	기안			○		
		○ 인력동원 면제 · 보류	기안			○		
		27. 민방위대 동원						
		○ 민방위대 동원명령	기안				○	
		○ 민방위대 동원결과 보고	기안			○		
		28.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 경보시설 유지·관리	기안	○				
안 전 재 난 과	안 전 정 책	◦ 경보시설 정비 보수	기안		○			
		29. 민방위교육·훈련						
		◦ 민방위훈련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민방위소양강사 추천		기안		○		
		◦ 민방위 실기 강사 위촉·해촉		기안		○		
		◦ 민방위강사 관리(교육 등)	기안		○			
		◦ 민방위 보충교육계획 수립	기안		○			
		◦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	기안		○			
		◦ 생활민방위 교육	기안		○			
		◦ 전문요원(화생방, 기술지원대)	기안	○				
		30. 동원민방위대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재해·휴업보상금 지급신청 및 결정	기안				○	
		◦ 국·도비 보조금 신청	기안		○			
		◦ 사망, 상이 대원 국가 유공자등록 신청	기안				○	
		◦ 가료보상금 지급	기안		○			
		31. 화생방 장비관리						
		◦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 및 보급계획	기안		○			
		◦ 화생방 장비 유지관리	기안	○				
		32. 비상급수시설 설치·관리						
		◦ 비상급수시설 설치계획	기안				○	
		◦ 비상급수시설 정비·보수	기안		○			
		◦ 기타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33. 주민신고망 관리						
		◦ 주민신고망 편성·정비	기안		○			
		◦ 주민신고 홍보·훈련	기안		○			
		34.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	기안			○		
		35. 사회복무요원 자원 관리						
		◦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		기안		○		
		◦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	기안		○			
		◦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기안				○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교육	기안		○			
		36. 의용소방대 지원 및 관리	기안		○			
		37. 예비군지원사업	기안		○			
	자 연 재 난	1. 재난안전대책본부(자연재난) 구성 운영		기안				○
		2. 자연재난 사전 대비						
		◦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기안		○			
		◦ 방재시설물 및 장비 점검관리	기안		○			
		◦ 수방자재 유지 관리	기안	○				
		◦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기안		○			
		◦ 재해응급복구장비 지정 및 동원관리	기안		○			
		◦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관리	기안		○			
		3. 자연재해 대책 및 복구						
		◦ 복구계획 수립		기안				○
		◦ 응급복구 지원	기안		○			
		◦ 피해조사 및 원인분석	기안		○			
		◦ 재해대장 및 기록보존		기안	○			
		4. 재해위험지구 관리						
		◦ 재해위험지구 조사 및 관리	기안		○			
		◦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해제	기안					○
		◦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수립	기안					○
		5. 국가재난정보시스템운영 관리	기안		○			
		6. 재난 민간 모니터링원 운용	기안		○			
		7. 사유재산피해 복구지원						
		◦ 사유재산 피해 접수 및 보고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 재난지원금 집행	기안		○			
		8. 풍수해 보험사업	기안		○			
		9. 소하천 관리						
		○ 소하천 관리	기안		○			
		○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소하천공사 사업 시행	기안			○		
		○ 소하천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제방, 배수장, 수문 등)	기안		○			
		○ 소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	기안			○		
		○ 소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 대장	기안	○				
		○ 소하천공사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사항	기안			○		
		10. 기타 자연재난 관련사항	기안		○			
	하 천	1. 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하천공사 사업시행	기안			○		
		3. 하천공사 편입토지 보상	기안			○		
		4. 하천관리						
		○ 국가하천관리	기안		○			
		○ 지방하천관리	기안		○			
		5. 하천시설물관리						
		○ 배수문 관리	기안		○			
		○ 하천 기성제 정비 및 관리	기안		○			
		○ 수문대장관리	기안	○				
		○ 배수펌프장 관리	기안		○			
		6. 하천공작물관리						
		○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기안			○		
		○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대장	기안	○				
		7. 하천골재 채취허가	기안			○		
		8. 골재 채취업 등록	기안			○		
		9. 군 직영 골재채취장 운영	기안					○
		10. 청원경찰 근무일지	기안	○				
		11. 골재반출증 회수기록부	기안	○				
		12. 국가 및 지방하천내 하천 부속물 점용 허가	기안			○		
		13. 하천산출물 채취허가	기안			○		
		14. 도선장 스케이트장 유선장 설치허가	기안			○		
		15. 족목의 운반(선박의 운항) 허가	기안			○		
		16. 지하수관리						
		○ 지하수 신고처리	기안		○			
		○ 지하수 개발허가	기안		○			
		○ 지하수 폐공처리	기안		○			
		○ 기타 지하수 관련사항	기안		○			
		○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 등록	기안			○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	기안			○		
		○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	기안	○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대장	기안	○				
	재 난 상 황	1.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 체계구축	기안		○			
		○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	기안		○			
		○ 재해발생 보고	기안					○
		○ 재난종합 상황실 근무일지	기안	○				
		○ 주요재난상황 관리부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2.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기안		○			
		3. 기상특보 및 강우(설)량 점검 및 관리	기안	○				
	통 합 관 제	1. 통합관제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통합관제센터 상황실 운영	기안		○			
		3. 영상정보 자료 및 보안관리	기안		○			
		4. 관제요원 선발 및 관리	기안		○			
		5. 영상기기(CCTV) 관련업무 협의 조정	기안		○			
		6.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7. 업무별 민원처리 및 상황전파	기안		○			
		8. 영상기기(CCTV) 설치 및 유지관리	기안		○			
		9. 영상기기(CCTV) 통신망 관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건축과	건 축 행 정	1. 건축행정 건설화						
		○ 무허가·불법건축물 단속	기안				○	
		○ 시설물 안전 점검	기안		○			
		○ 건축행정 건설화 대책 추진	기안		○			
		○ 건축물 유지관리	기안		○			
		○ 행정정보 공개	기안		○			
		○ 재해주택	기안		○			
		2. 무허가·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안				○	
		3. 건축물대장 관리업무						
		○ 건축물대장등본 열람발급 신청	기안	○				
		○ 건축물대장생성신청 및 정정신고 처리	기안		○			
		○ 건축물대장 보존관리	기안		○			
		○ 건축물대장 전산화	기안		○			
		4. 광고물 관리						
		○ 광고물관리 추진계획 수립	기안			○		
		○ 광고물 허가	기안		○			
		○ 광고물 신고	기안		○			
		○ 광고물 관련 행정처분	기안				○	
		○ 광고물 관련 추진실적 보고	기안		○			
		5. 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안					○
		6.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행정처분 포함)	기안		○			
		7. 간판개선사업	기안				○	
		8. 한옥건립지원사업	기안		○			
		9. 화재성능안전보강사업	기안		○			
		10. 현수막 관리시스템 운영 및 게시대유지관리	기안		○			
	건 축	1. 건축허가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기안				○	
		○ 10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이상 1만㎡미만	기안			○		
		○ 10층 미만이고, 연면적 5천㎡미만	기안		○			
		2. 착공신고 및 착공연기 신청	기안		○			
		3. 건축물 사용승인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기안				○	
		○ 10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이상 1만㎡미만	기안			○		
		○ 10층 미만이고, 연면적 5천㎡미만	기안		○			
		4. 건축신고	기안		○			
		5.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및 신고	기안		○			
		6. 공작물 축조신고	기안		○			
		7.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기안		○			
		8.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고	기안		○			
		9. 지방건축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	기안				○	
		10. 각종 건축허가 통계보고	기안	○				
		11. 건축사 지도단속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건축과	공 동 주 택	1. 주택행정 일반						
		○ 행정정보 공개	기안		○			
		○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기안			○		
		2. 행정처분	기안				○	
		3. 주택 인허가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기안					○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기안				○	
		○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기안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안				○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기안					○
		4. 공동주택 관리	기안			○		
		5.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계획 및 결과 보고	기안				○	
		6.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기안			○		
		7.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기안			○		
		8.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	기안				○	
		9. 주택관련 각종 통계보고	기안		○			
	공 공 건 축	1. 공공건축물 건립(도 투자심사 이상 건축물)	기안					○
		2. 청사건립(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포함) : 사업비 5억원 이상	기안					○
		3. 타부서 건축분야 기술지도 및 공사감독 (건축직 배치 부서 제외)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도시과	도 시 계 획	1. 군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						
		○ 군관리계획 수립 및 입안	기안					○
		○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기안					○
		○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사항)	기안		○			
		○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협의	기안			○		
		○ 군관리계획 실효 고시	기안			○		
		2.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안				○	
		3.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안			○		
		4. 도시계획통계 작성	기안		○			
		5. 군계획위원회 등 운영	기안				○	
		6. 개발행위허가						
		○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허가 및 준공(10,000㎡이상)	기안			○		
		○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허가 및 준공(10,000㎡미만)	기안		○			
		○ 공작물설치 허가 및 준공	기안		○			
		○ 토지분할·물건적치 허가	기안		○			
		○ 물건적치 허가 및 준공	기안		○			
		○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협의	기안		○			
		○ 불법 개발행위 단속	기안		○			
		7. 기반시설 부담금 관리						
		○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예정통지 및 납부 고지	기안		○			
		○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독촉 및 가산금 부과	기안		○			
		○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기안		○			
	도 시 개 발	1. 도시개발사업 시행	기안				○	
		2. 도시계획도로 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기안				○	
		3. 도시계획구역내 토목공사의 측량 설계 시공 감독	기안		○			
		4. 도시계획 시설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5.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6. 미불용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7. 도시계획 시설사업 예산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안				○
		8. 도청신도시 공동구 유지 관리	기안				○	
		9. 신도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0.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도 시 재 생	1. 도시재생사업 및 생태도시 조성 추진		기안				○
		2. 도시재생정책발굴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안				○
		3.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안				○	
		4. 도시재생사업 지도감독 및 재생에 관한 사항	기안				○	
		5. 도시재생에 관한 예산에 관한 사항	기안				○	
		6. 도시재생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7.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안				○
		8. 도시재생전문가양성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9. 도시재생대학 설립 및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10.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교육 및 행정에 관한 사항	기안				○	
		11.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2. 도시재생 신규사업 및 뉴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기안				○	
		1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시형)	기안					○
	스마트 도 시	1. 스마트도시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2. 스마트도시 상황실 운영	기안		○			
		3.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4. 스마트도시 센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기안		○			
		5. 스마트도시 자가망 운영 및 유지관리	기안		○			
		6.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7. 공영자전거 홈페이지 운영관리	기안		○			
		8. 공영자전거 무인대여 스테이션 유지관리	기안		○			
		9. 공영자전거 운영요원 선발 및 관리	기안		○			
		10. 신도시 공공·유관기관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11. 신도시 발전 및 개발계획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12. 신도시 정주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3. 신도시 지원사업 및 홍보	기안		○			
		14.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시설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1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사항	기안		○			
도시과	온 천 관 리	1. 온천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온천운영일반						
		○ 일반문서관리	기안		○			
		○ 종사원 교육		기안	○			
		○ 종사원 근무 관리	기안	○				
		3. 시설물(온천장,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관리						
		○ 시설점검결과 보고	기안		○			
		○ 시설물 및 부대시설 지도 점검	기안		○			
		4. 비품 및 물품관리						
		○ 수급관리	기안	○				
		○ 각종 수불대장 정리	기안	○				
		5. 입욕권 수급관리						
		○ 입욕권 출고 및 잔량확인	기안	○				
		○ 일일결산보고	기안	○				
		○ 이용료 납부 및 관리 보고	기안		○			
		6. 온천수 사용료 부과징수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환경 관리과	환경 관리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환경보전 실태조사	기안		○			
		3.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 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 신고 및 변경신고	기안		○			
		4. 오염도 감사의뢰	기안	○				
		5. 특정공사 사전 신고(변경) 및 관리	기안		○			
		6. 환경공무원 교육대상자 차출	기안		○			
		7.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 계획수립	기안			○		
		○ 행정처분(개선명령, 경고)	기안		○			
		○ 행정처분(조업정지, 폐쇄, 이전명령, 고발)	기안			○		
		○ 배출부과금 부과징수·환급	기안		○			
		8. 과태료 부과	기안		○			
		9.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변경) 및 관리	기안		○			
		10. 환경관리인 교육	기안		○			
		11.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계획 수립	기안		○			
		○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사후관리	기안		○			
		12.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						
		○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기안		○			
		○ 토양오염도 검사	기안		○			
		○ 기준위반 사업장 처분	기안		○			
		13.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안			○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기안		○			
		○ 환경개선부담금 환급관리	기안		○			
		○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기안		○			
		○ 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	기안			○		
		14. 환경보전 관리						
		○ 환경보전관리 일반	기안		○			
		○ 기준위반 사업장 조치	기안		○			
		○ 지원사업계획 수립	기안			○		
		○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	기안		○			
		15. 야생생물 보호						
		○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 해제	기안					○
		○ 명예야생생물보호원 위촉	기안					○
		○ 밀렵단속계획 수립 보고	기안		○			
		○ 야생생물 보호단속	기안		○			
		○ 수렵면허 발급 및 포획승인	기안		○			
		○ 수렵면허 갱신 및 변경	기안		○			
		○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기안		○			
		○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및 관리	기안		○			
		○ 야생동물 보호사업 실적보고	기안		○			
		○ 수렵장 개설	기안					○
		16. 환경단체 관리						
		○ 환경단체 예산지원	기안			○		

		○ 환경단체 각종행사 관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환 경 관 리 과	환 경 관 리	17. 환경신문고 운영	기안		○			
		18. 환경분쟁 조정	기안			○		
		19. 군소음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 군소음 피해보상 추진계획 수립	기안					○
		○ 보상금 신청접수 및 산정	기안		○			
		○ 보상금 지급(환수) 결정	기안				○	
		20. 소음영향도조사에 관한 사항						
		○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의견수렴 및 제출	기안		○			
		○ 소음영향도 조사 측정지점 선정	기안			○		
		○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전문가 및 주민대표 추천	기안		○			
		21.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22.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	기안		○			
		23. 석면피해구제급여	기안		○			
		24. 녹색제품 구매관리	기안		○			
		25. 그 밖의 환경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탄 소 중 립	1.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기안			○		
		3.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기안					○
		4.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기안			○		
		5.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관리	기안		○			
		6. 기후위기 대응사업 수립	기안					○
		7.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기안			○		
		8.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기안				○	
		9. 온실가스 감축계획 추진	기안		○			
		10.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	기안		○			
		11. 온실가스 업무 추진	기안		○			
		12.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안		○			
		13. 저탄소생활실천 추진·운영	기안		○			
		14. 친환경자동차(전기, 천연가스, 수소 등) 보급	기안		○			
		15.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관리	기안		○			
		1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항	기안		○			
		17.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 관련 각종 지원사업	기안		○			
		18. 미세먼지·황사·오존 저감대책 추진	기안		○			
		19. 미세먼지·황사·오존 저감대책 관리	기안		○			
		20. 실내공기질 관리	기안		○			
		21.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기안		○			
수 질 관 리	1. 수질보전종합대책 수립 추진		기안				○	
	2. 낙동강 수계 관리							
	○ 수계기금 관리	기안				○		
	3. 주민지원사업 관리							
	○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기안					○	
	○ 주민지원사업장 관리	기안		○				
	4. 오염총량제 관리 전반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기안			○			
	○ 오염원 실태조사 및 관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환경 관리과	폐기물 관 리	5. 지정 및 의료폐기물 관리						
		◦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자 신고 승인	기안		○			
		◦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기안		○			
		◦ 지정 및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허가	기안					○
		◦ 지정 및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지도·점검	기안		○			
		◦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안		○			
		◦ 사법처분	기안			○		
		◦ 폐기물 배출량 및 통계관리	기안		○			
		6. 건설폐기물 관리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승인	기안		○			
		◦ 건설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기안		○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허가	기안				○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도·점검	기안		○			
		◦ 행정처분(경고, 과태료, 개선명령)	기안		○			
		◦ 행정처분(조업정지, 폐쇄, 이전명령, 고발)	기안			○		
		◦ 폐기물 배출량 및 통계관리	기안		○			
		7.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 관리제외 지역 지정		기안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 활동 추진	기안		○			
		◦ 생활폐기물 위반자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안		○			
		◦ 방치 페타이어 수거 및 처리	기안		○			
		8. 쓰레기 종량제 업무 추진						
		◦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기안		○			
		◦ 읍면 공급계획 수립 및 조정	기안		○			
		9.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 RFID 설치 및 유지관리	기안		○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기안		○			
		10. 1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리						
		◦ 1회용품 사용 제한 관련 홍보 및 지도점검	기안		○			
		◦ 분리배출 및 과대포장 점검	기안		○			
		11. 국토대청결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12.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기안				○	
		◦ 행정처분(경고, 과태료, 개선명령)	기안		○			
		◦ 행정처분(조업정지, 폐쇄, 이전명령, 고발)	기안			○		
		13. 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기안				○	
		◦ 방치슬레이트 처리 및 홍보	기안			○		
		◦ 행정처분(경고, 과태료, 개선명령)	기안		○			
		◦ 행정처분(조업정지, 폐쇄, 이전명령, 고발)	기안			○		
		14. 영농폐기물 관리						
		◦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유지보수	기안		○			
		◦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지급	기안		○			
		◦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추진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환 경 관 리 과	수 질 관 리	5. 하천하구 정화사업 관리						
		◦ 하천하구 정화사업 계획 수립	기안			○		
		◦ 하천하구 정화사업 정산	기안		○			
		6. 도랑품은 청정마을 사업 관리						
		◦ 도랑품은 청정마을 사업계획 수립	기안				○	
		◦ 도랑품은 청정마을 정산 및 관리	기안		○			
		7. 폐수 및 기타 오염원 설치						
		◦ 허가(신고) 및 변경 허가(신고)	기안		○			
		◦ 가동개시	기안		○			
		8.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 설치 및 변경 허가(신고), 준공검사	기안		○			
		9. 폐수 및 가축분뇨 관리						
		◦ 지도·단속 계획 수립	기안		○			
		◦ 행정처분(경고, 과태료, 개선명령)	기안		○			
		◦ 행정처분(조업정지, 폐쇄, 이전명령, 고발)	기안			○		
		1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기안		○			
		11. 하천수 수질관리	기안		○			
		12.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기안				○	
		13.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	기안		○			
		14. 비점오염원 관리	기안		○			
		15. 환경영향평가 검토						
		◦ 설명회 개최 등		기안			○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기안		○			
		16.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	기안		○			
		17. 유해화학물질 관리 전반						
		◦ 지도·단속	기안		○			
		◦ 행정처분(경고, 과태료, 개선명령)	기안		○			
		◦ 행정처분(조업정지, 폐쇄, 이전명령)	기안			○		
		18. 이동식 환경오염행위 감시 시스템 운영관리						
		◦ 운영계획 수립	기안			○		
		◦ 인력 및 장비 관리	기안		○			
		19. 그 밖의 수질보전 관련 사항(상하수도제외)	기안		○			
	폐기물 관 리	1. 폐기물관리종합대책 수립 추진		기안				○
		2.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안				○
		3.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리		기안				○
		4. 사업장 폐기물 관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승인	기안		○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기안		○			
		◦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허가	기안				○	
		◦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지도·점검	기안		○			
		◦ 행정처분(경고, 과태료, 개선명령)	기안		○			
		◦ 행정처분(조업정지, 폐쇄, 이전명령, 고발)	기안			○		
		◦ 폐기물 배출량 및 통계관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환경 관리과	폐기물 관 리	15. 클린예천 만들기 사업 추진						
		◦ 클린예천 만들기 실행계획 수립		기안				○
		◦ 쓰담달리기 활성화 사업 추진	기안		○			
		◦ 쓰담달리기 및 배부항 관리	기안		○			
		16. 영농환경심사제 추진						
		◦ 영농환경심사제 대상 보조사업 선정		기안				○
		◦ 영농환경평가위원회 관리	기안			○		
	청 소 관 리	1.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 처리시설 보수	기안			○		
		◦ 주변 환경영향 조사(수질검사 등)	기안		○			
		◦ 처리시설 운영	기안		○			
		◦ 처리수수료 조정 및 감면		기안			○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관리						
		◦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관리		기안				○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기안		○		
		◦ 주민지원 사업 심의 및 결정		기안		○		
		◦ 주민지원 사업 관리	기안		○			
		4.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포함) 배출장소 설치 및 관리						
		◦ 배출장소 설치사업 계획	기안					○
		◦ 배출장소 설치사업 심의 및 결정	기안			○		
		◦ 배출장소 운영 및 관리	기안		○			
		5.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						
		◦ 선별장 선별인력 배치	기안		○			
		◦ 선별장 보수 및 운영	기안		○			
		6. 비 위생매립지 정비						
		◦ 매립지 방역	기안		○			
		◦ 주변 환경영향 조사(수질검사 등)	기안		○			
		7.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						
		◦ 매립지 방역	기안		○			
		◦ 주변 환경영향 조사(수질검사 등)	기안		○			
		8. 환경에너지 타운 활용						
		◦ 반입수수료 조정 및 협의		기안			○	
		◦ 반입방법 선정 및 운영	기안		○			
		9.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통합운영						
		◦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근무지 배치		기안				○
		◦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기안		○			
		◦ 청소장비 관리	기안		○			
		◦ 환경미화원 교육 및 청소 지도·감독	기안		○			
		10. 생활폐기물 처리						
		◦ 처리방안 선정	기안					○
		◦ 위탁처리 비용 산정 및 협의	기안				○	
		◦ 대행업체 선정 및 관리	기안		○			
		11. 올바른 재활용 실천·확산사업 추진						
		◦ 재활용품 우인 회수기 설치 및 관리	기안		○			
		◦ 클린예천 보물마차 운영	기안		○			
		12. 재활용 활성화 사업추진						
		◦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	기안		○			
		◦ 폐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	기안		○			
		◦ 폐건전지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소장	부군수	
보건소	보건행정	1. 당직의 명령 및 근무사항 감독	기안			○		
		2. 당직 변경	기안	○				
		3. 공공시설과 재산의 관리	기안		○			
		4. 공문서의 보관 및 폐기	기안		○			
		5. 각종 물품관리	기안		○			
		6. 공인관리	기안			○		
		7. 현금,물품의 출납보관 및 검수	기안		○			
		8. 소관사무의 원 대장에 따른 증명	기안		○			
		9. 군수가 지정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관리 (사용허가 및 임대차계약)	기안			○		
		10. 공중보건법에 관한 사항	기안			○		
		11.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지도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1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안					○
		13. 보안에 관한 사항	기안		○			
		14.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기안					○
		15. 보건관계 통계보고	기안		○			
		16. 진료약품 및 기구장비의 약(기)종 선택 및 구매	기안			○		
		17. 각종 통상적인 보고사항 (월보, 분기보, 반기보, 년보)	기안		○			
		18. 공공근로자 근무일지	기안		○			
		19. 차량운행 일지	기안	○				
		20. 유류수불대장	기안	○				
	의약관리	1. 의·약업소 행정처분						
		○ 영업정지 이상 처분	기안				○	
		○ 시정, 경고, 시설개수 처분	기안				○	
		2. 의료기관, 약국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처리	기안			○		
		3. 시술소(안마사, 침사, 접골사)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처리	기안			○		
		4. 안경업소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처리	기안			○		
		5. 치과기공소 인정, 신고사항 변경, 양도, 양수 신고 처리	기안			○		
		6.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휴업, 폐업 신고 처리	기안			○		
		7.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운영	기안			○		
		8.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기안			○		
		9. 의료기관 업무개시 명령	기안				○	
		10. 의약관련 법령 위반자 사법처리(고발)	기안				○	
		11. 의약품 봉합·봉인 및 폐기 조치	기안			○		
		12. 의약무관계 각종보고 및 일반사항	기안			○		
		13. 의료지도원, 약사감시원, 의료기기감시원, 마약류 감시원 임명	기안			○		
		14. 기타 의약무에 관한 사항	기안		○			
		15. 사고마약류의 처리 및 보고	기안			○		
		16. 마약류 취급자 지정 신청서 처리	기안			○		
		17. 마약류 감시 및 기타 일반사항	기안		○			
		18. 응급의료기관 운영 및 지원	기안					○
		19. 기타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기안			○		
		20. 재난대비 보건의료분야 관리대책 수립	기안			○		
		21. 헌혈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기안			○		
		22. 지역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 신고사항 수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소장	부군수	
보건소	감염병 예 방	1. 방역관리						
		○ 방역대책 수립	기안			○		
		○ 소독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기안			○		
		○ 소독업소 지도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기안			○		
		○ 소독의무대상 시설 관리	기안		○			
		○ 방역약품 및 기자재관리	기안	○				
		○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	기안		○			
		○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기안		○			
		2. 결핵관리사업	기안					
		○ 결핵관리사업 계획 수립	기안			○		
		○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관리	기안		○			
		○ 결핵환자 및 접촉자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3. 진폐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4. 한센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5. 기생충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6. 예방접종 관리 사업						
		○ 예방접종 사업계획 수립	기안			○		
		○ 예방접종 및 약품관리	기안		○			
		7. 감염병대응						
		○ 감염병 대응 대책 수립	기안			○		
		○ 비상방역(하절기, 명절연휴)대책 수립	기안			○		
		○ 감염병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기안			○		
		○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	기안			○		
		○ 생물테러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 재난대비 감염병분야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기안			○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기안			○		
		8. 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성병검사 및 환자관리	기안		○			
		○ 에이즈 감염자 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기안		○			
		○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기안		○			
		○ 각종 세균검사 및 기자재 관리	기안		○			
		○ 장내 세균보균검사에 관한 사항	기안		○			
		○ 레지오넬라 감염증 관리	기안		○			
	진 료	1. 일반환자 및 치과진료, 물리치료,한방진료	기안		○			
		2. 각종진료비 및 기타수가 징수 및 청구	기안			○		
		3. 진료수입금 수입일계	기안		○			
		4.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과 납기 연장	기안		○			
		5. 의약품 수급 및 관리	기안		○			
		6. 방사선촬영, 재활치료실 운영	기안		○			
		7.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계획 수립	기안			○		
		8.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기안		○			
		9.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10.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기안		○			
		11.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양치사업	기안		○			
		12. 학교 구강보건실 및 양치시설 운영	기안			○		
	건 강 관 리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기안			○		
		2. 보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기안		○			
		3. 국민건강증진법상 업무지도 및 단속사항	기안			○		
		4. 신체활동사업	기안		○			
		5. 건강사랑방 운영	기안		○			
		6. 금연운동 및 금연 사업 계획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소장	부군수	
보건소	건강관리	7. 비만, 절주사업	기안		○			
		8. 영양플러스사업	기안		○			
		9. 영양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안		○			
		10. 건강체험 한마당	기안		○			
		11. 건강마을 조성사업	기안		○			
		12. 지역사회 건강조사	기안		○			
		13.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기안		○			
		14. 건강증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지원센터 운영 종합 계획	기안			○		
		○ 건강증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기안		○			
	방문보건	1. 방문보건사업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2.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기자재 관리	기안		○			
		3. 경로당 방문보건사업	기안		○			
		4. 정신보건 사업 사항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5.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6.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7.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안		○			
		8.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기안		○			
		9. 재가암환자 관리	기안		○			
		10. 암검진사업	기안		○			
		11.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 안면기형, 심장, 실명, 인공관절 등	기안		○			
		12. 아토피 천식 예방 사업	기안		○			
		13. 찾아가는 행복병원	기안		○			
		14.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운영	기안		○			
	모자보건	1.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 모자보건 약품 및 기자재 관리	기안	○				
		3. 임신부 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	기안		○			
		4.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6종) 및 환아관리	기안		○			
		5.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안		○			
		6. 모자보건 통계 정기 보고	기안		○			
		7. 취학전 아동조기 시력검진	기안		○			
		8. 영유아 건강검진	기안		○			
		9. 임신부 건강교실	기안		○			
		10. 출산장려금지원	기안		○			
		11.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지원	기안		○			
		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안		○			
		13. 난임부부지원	기안		○			
		14. 저출산 관련 각종 대장	기안	○				
		15.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기안		○			
		16. 산전기형아 검사비 지원	기안		○			
		17. 선천성대사이상질환 검사비지원(52종)	기안		○			
		18.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소장	부군수	
보건소	모 자 보 건	1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안		○			
		20.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	기안		○			
		21.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지원	기안		○			
		22. 산모·신생아 식품 꾸러미지원	기안		○			
		23.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기안		○			
		24.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25.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기안		○			
		26.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기안		○			
		27. 출산 육아용품 대여실 운영	기안		○			
		28.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지원	기안			○		
		29. 첫만남 이용권 지원	기안		○			
	치 매 안 심	1. 치매 관리 시행계획 수립	기안			○		
		2. 치매환자 등록 · 상담관리 사업	기안		○			
		3. 치매환자 실종예방 관리	기안		○			
		4.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기안		○			
		5. 조호 물품 제공	기안		○			
		6.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기안		○			
		7. 치매조기 검진	기안		○			
		8. 치매환자 쉼터운영	기안		○			
		9. 치매환자가족 지원	기안		○			
		10.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기안		○			
		11. 치매공공 후견지원사업						
		○ 치매공공 후견인 선정	기안			○		
		○ 치매공공 후견인지원사업 운영	기안		○			
		12. 예쁜치매 쉼터 운영	기안		○			
		13. 치매 보듬마을 조성사업						
		○ 치매 보듬마을 지정	기안			○		
		○ 치매 보듬마을 조성사업 운영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소장	부군수	
농 업 기 술 센 터	지 도 기 획	1. 농촌지도사업 종합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2. 농업인상담소운영 관리	기안			○		
		3. 분야별 업무분장	기안		○			
		4. 예산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	기안			○		
		5. 기록물관리 및 점검	기안		○			
		6. 소속직원의 기강확립 및 상황보고	기안			○		
		7. 소속직원 교육대상자 선정보고	기안			○		
		8. 문서처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기안		○			
		9. 시설 및 물품관리 사항	기안		○			
		10. 차량배차, 운행 관리	기안		○			
		11. 상시학습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2. 당직의 명령 및 교체 근무에 관한 사항	기안		○			
		13. 직원 보수교육	기안			○		
	농 촌 자 원	1. 농촌자원육성사업 계획수립	기안			○		
		2.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계획	기안			○		
		3.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4. 학습조직체 육성계획 수립	기안			○		
		5. 학습조직체 기금관리	기안			○		
		6. 한국농수산대학교 관련실무	기안			○		
		7. 학습조직체 육성실무(실적보고 등)	기안			○		
		8. 농촌자원사업 현지 확인	기안		○			
		9. 품목별농업인 연구회 실무	기안		○			
		10. 농촌지도자회 육성	기안		○			
		11. 4-H 및 4-H 본부 육성	기안		○			
		12. 생활개선회 육성	기안		○			
		13. 농촌여성교육	기안			○		
		14. 지역대표향토음식 및 농가맛집 육성	기안			○		
		15. 농촌교육농장 및 체험관광 육성	기안			○		
		16. 농촌자원시범사업 추진 및 관리						
		○ 계획수립, 대상자선정, 정산, 완료보고	기안			○		
		○ 기타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17. 농산물가공사업 계획 수립	기안			○		
		18. 농산물 가공연구회 육성	기안		○			
		19. 농산물가공교육	기안			○		
		20.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기안		○			
		21. 농산물가공장비 사용대장 및 기록관리	기안		○			
		22. 소모품 수불대장 관리	기안	○				
		23. 일시사역 및 작업일지 정리	기안	○				
		24.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	기안			○		
		25. 가공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 계획 수립, 대상자선정, 정산, 완료보고	기안			○		
		○ 기타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26. 농산물가공기술지원 운영위원회 운영	기안			○		
		27. 농산물가공협동조합 조직 관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소장	부군수	
농기센 업술터	교육 경영	1. 교육경영 연간계획수립	기안			○		
		2. 농업인교육 및 강소농육성	기안			○		
		3.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기안			○		
		4. 농업인대학 운영	기안			○		
		5. 정보화농업인 육성 및 관리	기안			○		
		6. 귀농인교육 및 관리	기안			○		
		7. 교육경영시범사업 추진 및 관리						
		○ 계획수립, 대상자선정, 정산, 완료보고	기안			○		
		○ 기타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8. 농업정보화 교육 운영	기안			○		
		9. 농가경영컨설팅추진	기안			○		
		10. 농촌지도사업 홍보	기안		○			
		11. 농업경영개선	기안		○			
		12. 농산물표준 소득조사	기안			○		
		13. 농축산물 유통정보 수집 및 분석	기안	○				
		14. 농업인 경영상담	기안	○				
		15. 기타 교육경영 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농기계	1.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관리	기안			○		
		2. 농기계 순회수리 및 월별 운영계획	기안			○		
		3. 농기계 장비, 부품 구입	기안			○		
		4. 농기계 임차대장 및 기록관리	기안	○				
		5. 소모품 수불대장 관리	기안	○				
		6. 농기계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7. 기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식량 환경	1. 식량환경 연간 지도계획 수립	기안			○		
		2. 식량환경 종자 공급 및 보급	기안			○		
		3. 식량환경분야 시범사업추진 및 관리						
		○ 계획수립, 대상자 선정, 정산, 완료 보고	기안			○		
		○ 기타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4. 식량환경분야 기술지도 및 홍보	기안		○			
		5. 기상재해 기술지도	기안			○		
		6. 벼 품종별 면적조사	기안		○			
		7. 쌀 품질관리실 운영	기안		○			
		8. 벼 예찰포 운영	기안		○			
		9. 생산물 처리계획 및 결과	기안		○			
		10. 병해충예찰방제 및 종합관리지도	기안		○			
		11. 농약안전사용 교육계획 및 결과	기안		○			
		12.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실무	기안		○			
		13. 식량작물 관찰포 운영 및 생육조사	기안		○			
		14. 농업기상관측	기안		○			
		15. 일시사역 및 작업일지 정리	기안	○				
		16. 종합검정계획수립 및 결과	기안			○		
	원소 예득	1. 원예소득작목분야 시범사업 추진 및 관리						
		○ 계획수립, 대상자 선정, 정산, 완료보고	기안			○		
		○ 기타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2. 시설원예분야 기술지도	기안		○			
		3. 화훼분야 기술지도						
		○ 치유농업 생활원에 체험 교육	기안		○			
		○ 우리꽃 및 국화 작품전시회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과장	소장	부군수	
농기센 업술터	원예 소 득	4. 원예작물 관찰포 운영 및 생육조사	기안		○			
		5. 원예소득작목분야 농업인 관련 민원 사항	기안			○		
		6. 작업일지 기록 및 관리	기안	○				
		7. 특용작물분야 시범사업 추진 및 관리						
		○ 계획수립, 대상자 선정, 정산, 완료보고	기안			○		
		○ 기타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8. 특용작물분야 기술지도	기안		○			
	과수 기 술	1. 과수분야 시범사업 추진 및 관리						
		○ 계획수립, 대상자 선정, 정산, 완료보고	기안			○		
		○ 기타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2. 과수분야 기술지도	기안		○			
		3. 과수 재배 농가 교육 추진	기안			○		
		4. 농산물 수출관련 업무	기안		○			
		5. 과수분야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	기안			○		
		6. 과수분야 민원 관련 사항	기안			○		
	축산 기 술	1. 축산분야 시범사업						
		○ 계획수립, 대상자 선정, 정산, 완료보고	기안			○		
		○ 기타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2. 축산 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기안		○			
		3. 가축사양관리 기술 보급	기안		○			
		4. 조사료 생산 기술지도	기안		○			
		5. 초유은행 운영	기안		○			
		6.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기안		○			
		7. 기능성 양잠, 곤충기술 지도	기안		○			
		8. 기타 축산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기안		○			
		9.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운영 계획	기안			○		
		10. 친환경 농업기술 연구 및 지도	기안		○			
		11. 친환경 미생물 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 계획수립, 대상자 선정, 정산, 완료보고	기안			○		
		○ 기타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12. 미생물 균주 선발 및 보급	기안		○			
		13. 친환경축산관리실 및 친환경농업 바이오 센터 운영 대장관리	기안	○				
	기술 개 발	1. 실증시험장 연간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		기안		○		
		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실증시험	기안			○		
		3. 신품종 지역적응시험 조사 분석	기안			○		
		4. 실증시험장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관리	기안		○			
		5. 실증시험장 농기계 운영 및 관리	기안		○			
		6. 실증시험장 일반시설 운영 및 관리	기안		○			
		7.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 지도	기안			○		
		8. 일사사역 및 작업일지 정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소장	부군수	
체 육 사업소	체 육 진 흥	1. 직원 근무감독 및 당직명령	기안		○		
		2. 물품, 도서, 문서관리					
		○ 물품출납 및 재고량 관리	기안	○			
		○ 도서대장 기록 및 관리	기안	○			
		○ 문서정리결과 제출	기안	○			
		3. 급여 관련 자료 제출	기안		○		
		4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기안		○		
		5. 각종 공인관리	기안		○		
		6. 체육정책 종합계획 수립, 시행	기안				○
		7. 양궁실업팀 운영					
		○ 양궁실업팀 운영계획	기안				○
		○ 양궁실업팀 운영규정	기안			○	
		○ 양궁실업팀 운영비 집행	기안		○		
		○ 양궁실업팀 운영일반	기안		○		
		○ 양궁실업팀 운영 정산보고	기안		○		
		8. 엘리트체육 육성					
		○ 엘리트 체육활성화 계획수립		기안		○	
		○ 엘리트 체육 운영	기안			○	
		9. 체육활동 지원					
		○ 체육활동지원 기본계획 및 체육 관련 단체 지원계획 수립		기안			○
		○ 체육활동지원 세부시행계획	기안			○	
		○ 체육활동 공간 확충	기안			○	
		10. 체육관련 단체 지원					
		○ 체육단체 지도점검	기안		○		
		○ 체육행사 지원	기안		○		
		○ 체육관련 단체 운영 지원	기안		○		
		11. 체육시설업 지도감독					
		○ 체육시설업 허가 신고사항	기안		○		
		○ 체육시설업 지도점검	기안		○		
		12.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 장애인체육 기본계획 수립		기안		○	
		○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기안		○		
		13. 체육시설물 확충(야외 운동기구 포함)	기안		○		
		14. 활체험센터 운영	기안		○		
		15. 군청 육상실업팀 운영 관리					
		○ 육상실업팀 운영계획	기안				○
		○ 육상실업팀 운영규정	기안			○	
		○ 육상실업팀 운영비 집행	기안		○		
		○ 육상실업팀 운영일반	기안		○		
		○ 육상실업팀 운영 정산보고	기안		○		
		16. 진호국제양궁장 시설관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소장	부군수	
체 육 사업소	스포츠 마케팅	1. 스포츠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시행	기안				○
		2. 도단위, 전국단위 대회 유치 및 지원 (체육관련 전종목 양궁제외)	기안				○
		3. 각종 전지훈련 유치 및 홍보	기안		○		
		4. 예천스타디움 시설물 유지 관리	기안		○		
		5.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기안		○		
		6. 생활체육 육성					
		○ 생활체육활성화 계획 수립	기안			○	
		○ 생활체육교실 운영	기안		○		
		○ 각종 생활체육행사 지원	기안		○		
		7.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기안		○		
		8. 기타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사항	기안		○		
	시 설 관 리	1.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유지 보수					
		○ 체육시설 운영 계획수립	기안			○	
		○ 체육시설 유지보수	기안		○		
		○ 건물 및 부대시설 관리	기안		○		
		○ 비품 및 물품관리	기안		○		
		○ 각종 업무일지	기안	○			
		○ 시설방호	기안		○		
		2. 체육시설 사용허가	기안		○		
		3.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조정	기안		○		
		4.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 건물 및 부대시설 관리	기안		○		
		○ 비품 및 물품관리	기안		○		
		○ 각종 업무일지	기안	○			
		○ 시설방호	기안		○		
		5. 청소년수련관 안전관리	기안		○		
		6.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사용허가	기안		○		
		7. 청소년 수련관 시설물 확충·유지보수	기안		○		
		8. 수영장 운영 및 관리	기안		○		
		9. 한천 체육시설물(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 어린이물놀이장, 급수대(어린이물놀이장 옆)	기안		○		
		10. 도효자마당 시설물 관리(무대, 벤치 등)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소장	부군수	
곤충연구소	시 설 운 영	1. 생태원조성 및 계획수립	기안				○
		2. 직원 근무감독 및 당직명령	기안		○		
		3. 물품, 도서, 문서관리	기안		○		
		4. 급여 관련 자료 제출	기안		○		
		5.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기안		○		
		6. 연구소내 시설물관리	기안		○		
		7. 곤충연구소 관람객 교육 및 홍보	기안		○		
		8. 곤충생태체험관 및 생태원운영	기안		○		
		9. 그 밖의 연구소 운영관련 사항	기안		○		
	곤 충 연 구	1. 호박벌·머리빨가위벌 연구 및 생산	기안		○		
		2. 정서 및 약용곤충 사육기술 개발·보급	기안		○		
		3. 산업곤충의 농가 보급 및 기술지도	기안		○		
		4. 곤충산업 관련 국도비사업 추진	기안		○		
		5. 꿀벌 종복육종 사업 추진	기안		○		
		6. 화분매개곤충 농가분양 및 판매	기안		○		
		7. 머리빨가위벌 채집 트랩 설치 및 회수	기안		○		
		8. 곤충연구 각종대장 및 일지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소장	부군수	
맑은물 사업소	관 리	1. 직원 근무감독 및 당직명령	기안		○		
		2. 물품, 도서, 문서관리	기안		○		
		3. 급여 관련 자료 제출	기안		○		
		4.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기안		○		
		5. 각종 공인관리	기안		○		
		6.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기안				○
		7. 공기업특별회계 입찰공고	기안			○	
		8. 공기업특별회계 계약 및 지출					
		○ 계약금액 1억원 미만	기안		○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기안			○	
		9.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안				○
		10. 공기업 자산관리 및 평가	기안				○
		11. 공기업 경영평가(경영혁신 포함), 경영공시	기안				○
		12. 관급자재 및 물품관리	기안		○		
		13. 상하수도요금 요율 개선	기안				○
		14. 유가증권의 출납 및 관리	기안		○		
		15. 읍면 일상경비 교부 및 정산	기안		○		
		16. 국고, 국·도비 재배정 (지출한도액)	기안		○		
		17. 물품 수급관리 계획 및 현재액 보고	기안		○		
		18. 세입·세출일계표	기안	○			
	상수도	19. 자금의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 예금가입 신청 및 해지	기안		○		
		○ 이자수입 납부	기안		○		
		1. 수도관련 각종계획 수립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기안			○
		○ 기술진단 및 시설용량 검토	기안			○	
		○ 현대화 계획	기안			○	
		○ 물수요 종합관리 계획	기안			○	
		2.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 지정 및 해제		기안			○
		○ 지도·단속	기안		○		
		○ 행위허가 및 신고처리	기안		○		
		3. 전용상수도 설치에 따른 인가 및 정비		기안		○	
		4. 상수도 관리					
		○ 신설확장공사 조사·설계 및 시공감독	기안			○	
		○ 상수도요금 체납관리	기안		○		
		○ 상수도지방채 상환 및 관리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소장	부군수	
맑은물 사업소	상수도	5.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보수 및 신설공사	기안		○		
		○ 시설 및 수질관리	기안		○		
		6. 먹는 물 관리					
		○ 먹는 샘물업 허가에 따른 의견제출	기안			○	
		○ 먹는 샘물 관리	기안		○		
		7. 저수조 및 옥내배수관 관리					
		○ 청소업체 지정	기안			○	
		○ 업체 지도·점검 및 관리	기안		○		
		○ 실태 점검 지도	기안		○		
		8. 상수도 위탁관련					
		○ 물이용 부담금 관리	기안			○	
		○ 운영대가 검토 및 지급	기안			○	
		○ 각종사업계획 검토 및 감독		기안		○	
		9. 상수도수질 관리					
		○ 민간합동 수질검사	기안		○		
		○ 지하수측정망 관리	기안		○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 및 폐물관리	기안		○		
		10. 상수도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상수도통계 작성 및 관리	기안		○		
		11. 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및 정수기 관리	기안		○		
		12. 농촌생활용수 유지·관리	기안			○	
	하수도	1. 하수도정비 기본 및 변경계획 수립					
		○ 변경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		기안			○
		○ 하수처리구역 지정 및 관리	기안			○	
		2.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 계획수립 및 인가신청.고시		기안			○
		○ 도 설계자문 및 기술검토	기안		○		
		○ 환경청 자원 협의	기안		○		
		3. 하수도사업 시행					
		○ 하수처리장 계획수립 및 공사추진	기안			○	
		○ 하수관거 BTL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기안			○
		○ 자체사업 계획수립 및 공사추진	기안			○	

소관별	분야별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				군수
			실무자	팀장	소장	부군수	
맑은물 사업소	하수도	4.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기안		○		
		○ 마을하수도 보수 및 수질검사	기안		○		
		○ 하수도 준설에 관한 사항	기안		○		
		○ 맨홀펌프장 유지 관리	기안		○		
		○ 하수도시설 재해예방 대책	기안		○		
		○ 하수도대장 전산관리 및 정비	기안		○		
		○ 하수도 통계업무	기안		○		
		5. 하수도 사용 관리					
		○ 요금 사용요율 개선 및 산정	기안			○	
		○ 사용료 부과·징수	기안		○		
		○ 지하수사용업체 조사 및 검침	기안		○		
		○ 사용료 체납액징수 및 정리보류	기안			○	
		6. 공공하수도					
		○ 점·사용 및 일시사용 허가	기안		○		
		○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기안		○		
		○ 하수도 부정사용 및 배출자 단속	기안		○		
		7. 배수설비					
		○ 배수설비 시공대행업 신규 및 갱신	기안			○	
		○ 배수설비 신고수리 및 준공검사	기안		○		
		○ 처리구역내 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	기안		○		
		8. 하수도 민간위탁업체 운영관리 감독		기안	○		
		9. 분뇨관리					
		○ 분뇨관련 영업 (변경)허가	기안			○	
		○ 분뇨의 재활용 신고	기안		○		
		○ 지도 단속					
		- 행정처분(경고, 과태료, 개선명령)	기안		○		
		- 행정처분(조업정지, 폐쇄, 이전명령, 고발)		기안		○	
		10. 개인하수처리시설 관한 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 시공업 등록	기안		○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관리	기안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	기안		○		